

언론조정 · 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교수

I. 언론중재위원회가 치른 두 번의 면접시험



1980년 한해가 저물기 몇 시간 전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악법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폭력행위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의 찬양고무가 금지되고 공표될 내용의 진실성과 출처 등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언론에 부과되었다. 또 몰수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언론 표현물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언론인의 결격사유등의 규정에 대해 언론인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가 번졌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새겨 넣었다.¹⁾

악법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언론기본법은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품고 있었다. 하나는 제8조에 규정된 ‘취재원 보호’ 규정으로 언론인은 취재원에 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거부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었다. 다른 하나는 언론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을 각각 제49조와 제50조에 규정하면서 반론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또 제48조와 제51조에 언론소송은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거나 정정보도청구

의 심판은 가처분절차에 의해 진행되도록 규정하였다. 언론계는 언론중재위원회 도입을 두고 언론인을 통제하고 언론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제도라고 반발하였다. ‘언론윤리위원회법안’ 파동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쉽게 가리앉지 않았다.

‘언론기본법’은 1987년 11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으로 대체 입법되었다. 상징성이 매우 강했던 ‘취재원 보호’ 규정은 한번도 제대로 쓰여 보지 못하고 ‘언론기본법’과 함께 역사의 장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도입 초기 언론통제 장치라고 의심을 받았던 ‘언론중재’ 제도는 ‘정간법’과 ‘방송법’에 동시에 계수되면서 오히려 ‘추후보도청구권’을 신설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언론기본법이 유효하던 6년 8개월간 언론계의 냉대와 사회적 무관심을 거뜬히 극복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한국적 언론피해구제 제도로 착근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1981년 3월 31일 출범한 언론중재위원회는 한국의 소비자들로부터 두 번의 큰 면접시험을 치렀다. 첫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언론기본법 폐지 즈음이다. 만약 언론기본법 체제하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억박지르거나 언론의 편집 부문을 우회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정간법과 방송법에 존치되지 못하고 숨이 멎었을 것이다.²⁾ 두 번째는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을 때이다. 그 전까지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필요적 전치 절차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만 했다. 싫더라도 강제로 지나가야 하는 관문으로 비취질 수 있었다. ‘언론중재법’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 그리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임의적 전치절차로 바뀐 뒤 언론피해자들의 조정신청이 크게 격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

1)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발표된 양경송(2001) 김청룡(2001)의 논문은 반론권과 언론중재제도의 도입에 대한 언론계의 우려가 잘 나타나 있다.

2) 성낙민(2002)은 이를 두고 반론권제도의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함석천(2005)과 한위수(2006)가 예측한대로 언론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문을 더 자주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석천은 반론·추후·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임의절차라는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가 쌓아온 업무성과와 신뢰를 생각할 때 정확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은 여전히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함석천, 2005: 52). 한위수(2006)도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언론중재법 시행이 활성화 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한위수, 2006). 2004년 조정신청은 759건이었으나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고 1년이 흐른 2006년 그 수치는 1,087건에 달했다.³⁾ 2008년 이후 피해구제율은 70%를 훌쩍 뛰어 넘었다. 2010년의 경우 조정신청은 2,205건, 피해구제율은 79.1%였다. 1981년 출범당시 44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39%의 피해구제율을 기록한 자료에 견줘볼 때 언론중재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변화의 폭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태행산과 왕옥산을 깎아옴긴 우공처럼 언론중재위 역시 언론인들의 냉대와 사회일반의 미혹을 차근차근 떨쳐내며 30년 세월을 걸쳐 언론피해구제의 거상을 구축했다. 성낙인 교수(2002)는 한국의 반론권 행사에 관한 가장 특징적인 사항으로 언론중재위원회제도를 꼽았다. 언론중재위가 반론권의 한국적 정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고 더불어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특수한 제도라는 것이다(성낙인, 2002: 21). 류지태 교수(2004)도 언론중재위를 언론분쟁해결기관으로서, 그리고 언론중재와 반론권 등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 사회에 도입한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언론피해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즉응하여 구체적인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 왔다는 것이다(류지태, 2004: 34).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 이후 언론중재위는 언론

및 포털 등의 메시지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인격권 침해들 간이하면서도 종합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30년간에 걸친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전개과정, 그리고 그 성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언론중재제도의 변화



1981년도 도입된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는 몇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는 내적인 질적 성장과 외적 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수반했다.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간법과 방송법에 존치될 때, 1996년 입법취지를 반영해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로 잡을 때, 2005년 ‘언론중재법’을 제정할 때 그리고 2009년 포털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규율할 때 등을 대표적인 변혁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법익을 조화시켜야 하는 요구에 대응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제도이다.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방적 인격권의 희생은 강요할 수 없다는 헌법이론적 근거에 입각해 언론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박경래, 2008: 123). 원래 반론권제도의 도입은 자유민주주의가 꽃핀 곳에서, 언론의 자유의 남용에 대응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한국은 권위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에 도입되었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 제도를 도입한 언론기본법은 지나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한국 헌법사에서 권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제5공화국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받았다(성낙인, 2002: 8). 그러한 언론계의 저항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언론기본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고의·

3) http://www.pac.or.kr/html/data/dt/status_view.asp?seqid=119&num=79&page=1&cur_pack=0&s_field=s_string=&ibname=dtbl_pdsf11&j=79

“태행산과 왕옥산을 깎아 옮긴 우공처럼 언론중재위 역시 언론인들의 냉대와 사회일반의 미혹을 차근차근 떨쳐내며 30년 세월에 걸쳐 언론피해구제의 거산을 구축했다.”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만큼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었고 그 행사요건이 매우 간단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혁명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양경승, 2004: 5).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347호로 제정된 ‘언론기본법’은 제49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 제50조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제51조에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규정하였다. 주요 요지는 첫째,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둘째,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었다. 셋째, 정정보도청구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며, 넷째, 중재합의가 이뤄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고, 다섯째,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심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했다. 여섯째,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은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규정을 적용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⁴⁾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3979호)과 ‘방송법’ (법률 제3978호)이 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추후보도청구권’을 신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기존에 30인 이상 60인 이내였던 중재위원의 숫자도 40인 이상 70인 이내로 확대되었다. 한편 1991년 12월 31일 제정돼 다음해 7월부터 시행된 ‘종합유선방송법’은 제45조에서 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였다. 정정보도청구분쟁의 중재와 절차,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등은 정간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⁵⁾

1996년 7월 1일 시행된 정간법(법률 제5145호, 1995.12.30.개정)은 시행 15년 만에 ‘언론중재제도’와 관련된 용어를 바로잡고 체제의 상당 부분을 정비하였다. 첫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직권중재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재부는 직권으로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할 경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셋째, 반론보도청구 외에 민법 제764조상의 ‘정정보도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치절차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이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였다. 넷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중재위원의 숫자가 40인 이상 80인 이내로 또 늘어났다. 여섯째, 제19조의2 규정으로 불복절차를 신설하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항소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불복절차 심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2005년 7월 28일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개별 법령에 분산돼 있던 ‘언론피해구제’ 규정들을 종합한 ‘언론중재법’은 1월 1일 제정돼 같은 해 1월 27일 법률 제7370호로 공포되었

4) 「언론기본법」(시행 1980.12.31, 법률 제3347호, 1980.12.31 제정)

5) 「종합유선방송법」(시행 1992.7.1, 법률 제4494호, 1991.12.31 제정)

다.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정간물법 개정으로 한국의 언론중재는 확실한 뿌리를 내리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나아가 한국형 언론중재제도 및 반론권뿐만 아니라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통일적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양경승 변호사가 1998년 4월 전문 45개조의 가칭〈언론피해구제법〉안을 성안하여 제출하였다. 2000년 11월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방안이 논의되었다. 가칭〈언론피해구제법안〉의 내용은 첫째,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의 고양, 둘째, 언론중재와 관련된 제도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 셋째, 언론중재와 관련된 제도의 신설 및 변경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 등으로 요약되었다. ‘조정 외에도 중재’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청구에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양삼승, 2000; 양경승, 2005).

이러한 일련의 학술적 논의와 축조심을 거쳐 언론중재위원회는 2002년 10월 국회와 각 정당에 언론피해구제법안을 배포하였다. 정치사회적으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의 개편요구가 거세졌는데 2002년 2월 제16대 국회의원 27인이 정기간행물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04년 6월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도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국회 개정안이 정간법 개정 형식을 취한 반면 언론중재위원회와 시민단체안은 단일통합법안의 형태를 갖췄다(양경승, 2005). 이 무렵 이재진·유재웅(2004)도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단일법 제정,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원스톱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한편 제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2004년 10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11월 25일 상정됐다(김재홍 의원외 13인 소개).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언론인권센터’는 공동으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서를 2004년 11월 29일 접수했는데 다음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다(임종인 의원 소개). 이

“1981년 도입된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는 몇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는 내적인 질적 성장과 외적 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수반했다.”

들두 청원은 ‘본회의 불부’ 처리되었다.

이 무렵 국회는 3개의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04년 10월 20일 발의하였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피해구제법안〉은 2004년 10월 21일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안〉은 2004년 11월 24일 발의되었다. 각 정당에서 발의한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안들의 조문구성과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마련한 ‘언론피해구제법(가칭)’을 기반으로 하였다. 국회는 김재홍 의원 등 149인이 전날 수정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였다.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 ‘언론중재법’은 같은 해 1월 27일 공포돼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언론분쟁의 중재’, 열린우리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민주노동당은 ‘언론피해구제’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양경승(2005)에 따르면 이안들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되면서 뒤죽박죽 섞이게 되었다. 국회의 회기 말에 정파간에 나눠 먹기식의 막판 절충이 이뤄지는 바람에 법률의 내용이 전체적인 일관성과 체계 정합성을 잃고 여러 곳에서 다소 거칠거나 일견 모순·상반되는 내용이 끼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양경승은 제정 후 언론중재법의 위헌시비가 제기된 연유 중 상당부분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 국회의 고질적인 병이 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양경승, 2005: 50-51).

양삼승(2005)은 ‘언론중재법’을 ‘핵심적 변동사항’, ‘중요한 변동사항’, ‘경미한 변동사항’으로 구분해 설명하였다. ‘핵심적’인 변동사항으로는 단일법으로 제정되

〈표〉 언론중재제도의 전개과정

구분	언론기본법 시기	정간법 · 방송법 · 종합유선방송법 시기		언론중재법 시기	
	1981년	1987년	1996년	2005년	2009년
특징	• 언론중재위 출범 (1981.3.31)	• 정간법 · 방송법 시행 (1987.11.28)	• 정간법 개정시행 (1996.7.1)	• 언론중재법시행 (2005.7.28.)	• 언론중재법 개정시행 (2009.8.7)
주요 내용	• 반론권제도 도입	• 반론권제도 준치 추후보도청구권 신설	• 반론보도청구'로 개정 • 직권중재결정 도입 •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 존재인정 중재위에 임의적 중재인정 • 국가·지자체, 기관단체 반론권 인정 • 불복절차 도입	• 정정보도청구권 도입 • 조정 외 중재 도입 • 손해배상 조정중재 • 인터넷신문 조정중재 • '필요적 전처주의' 폐지	• 포털·언론닷컴·IPTV 조정중재대상 • 정정보도청구소송— 민사소송법 절차적용
중재 위원	• 30인-60인 이내	• 40인-70인 이내	• 40인-80인 이내	• 40인-90인 이내	• 최종
근거 법률	언론기본법제정 (1980.12.31)	정간법제정 (1987.11.28)	정간법개정 (1995.12.30)	언론중재법제정 (2005.1.27)	언론중재법개정 (2009.2.6)
주요 규정	48조 (소송우선처리) 49조 (정정보도청구권) 50조 (언론중재위) 51조 (정정보도심판)	16조 (정정보도청구권) 17조 (언론중재위) 18조 (중재절차등) 19조 (정정보도심판) 20조 (추후보도청구권) 21조 (보조금)	16조 (반론보도청구권) 17조 (언론중재위) 18조 (중재절차등) 19조 (반론보도심판) 19조2 (불복절차) 20조 (추후보도청구권) 21조 (보조금)	5조 (인격권외보장등) 6조 (고충처리인) 14조 (정정보도청구요건) 16조 (반론보도청구권) 17조 (추후보도청구권) 18조 (조정신청) ⁶⁾ 19조 (조정) 22조 (직권조정결정) 24조 (중재) ⁷⁾ 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의소) 27조 (재판) 30조 (손해의 배상) 31조 (명예훼손특칙) 32조 (시장권고) 34조 (과태료)	5조 (언론등 피해구제원칙) 5조의2 (사망자인격) 6조 (고충처리인) 14조 (정정보도청구요건) 16조 (반론보도청구권) 17조 (추후보도청구권) 17조의2 (인터넷뉴스특칙) 19조 (조정) 22조 (직권조정결정) 24조 (중재) 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의소) ⁸⁾ 27조 (재판) 30조 (손해의 배상) 31조 (명예훼손특칙) 32조 (시장권고) 34조 (과태료)
비고	• 대법원 1986.1.28. 85다카1973판결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권 제도로 파악 제시'	• 종합유선방송법중재제도 도입 (1991.12.31.제정 ⁹⁾ • 헌법재판소 1991.9.16. 89헌마165결정 반론권제도 합헌 결정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보도 관련 반론보도청구권 도입 (1997.11.14.개정시행 ¹⁰⁾)	• 일부조항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5헌마165등 결정	• 위헌성 제거

6 제8조 (조정신청)에 의해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24조 (중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8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의소)에 의해 정정보도청구의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정정보도청구 사건을 가처분절차에 의해 재판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5헌마165등 사건에서 위헌결정함에 따른 개정이다.

었다는 점, 기존의 조정과 심의 외에 '중재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 조정의 범위에 '손해배상'도 포함시켰다는 점, 조정의 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신문'도 규율을 받게 한 점,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한 점 등을 꼽았다. 2005년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자.

첫째, 언론피해구제와 관련한 단일법을 제정했다. 비록 국회 입법과정의 '법안섞어흔들기'로 법체계의 일관성과 충실성이 약화된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 피해를 폭넓게 구제하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둘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보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액을 명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8조 제2항)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 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해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혹은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하거나(제6항) 손해배상 분쟁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제1항, 제2항).

셋째, 분쟁 해결 방법의 하나로 '중재'를 정식 도입하였다. 동법 제24조는 당사자 쌍방이 정정보도등과 손해배상의 분쟁에 대해 중재부의 중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제25조에서 그 효력을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고 규정하였다.

넷째, '인터넷신문'을 언론사에 포함시켜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언론중재법 제2조 1호는 '언론'을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인터넷신문'을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이라고 정하였다. 그런데 신문법과 시행령은 포털을 인터넷신문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자연스럽게 포털은 언론피해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다섯째, 언론피해의 구제대상인 '인격권'을 구체적

“언론중재법 제1조(목적)는 중요한 조문상의 변화를 동반했는데 기존의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를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로 수정하였다. 전통적인 '언론사 바깥의 매체로까지 언론중재의 대상이 확대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동법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물론 초상·성명·음성, 그리고 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의 범주로 묶었다. 그동안 언론소송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등의 구제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또 동법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사망한 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구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 후 30년까지 보호하고 있다.

여섯째, '고충처리인'을 도입하였다. 동법 제6조는 종합편성,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그리고 일반일간신문 사업자는 언론피해의 자율적인 예방과 구제를 위해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정정보도청구권'을 도입하였다. '언론중재법'에서 도입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행사할 수 있으며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중재위원의 숫자를 40인 이상 80인 이내에

9 「종합유선방송법」은 1999.12.31. 법률 제4499호로 제정됐으며 1999.7.1 시행되었다. 동법은 제45조(정정보도청구권)에서 반론권제도를 도입했으며 정간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10 법률 제412호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3(방송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제8조의4(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를 신설했다.

서 40인 이상 90인 이내로 증원하였다거나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언론사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제33조)을 도입하였다. 한편 부칙 제2조로 동법의 시행 전에 행해진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29일 이른바 ‘언론관계법 위헌소송에 대한 일련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국회는 2005년 1월 27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각각 법률 제7369호, 제7370호로 제정·공포하였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인 경과한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5년 2월 16일 정인봉·강병진(2005헌마165)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또 3월 14일에는 동아일보사·조용우·유재천(2005헌마314), 6월 9일에는 조선일보사·방석호·이한우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며(2005헌마555) 시행 후인 8월 26일 주식회사 환경건설 일보가 같은 심판의 청구를 하였다(2005헌마807). 한편 조선일보사는 정정보도청구 소송 계속 중에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기11309) 동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006헌가3). 이들 여러 사건들을 병합하여 처리한 것이 이른바 ‘2005헌마165등 사건’이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언론중재법의 몇 가지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이유와 더불어 2005년 언론중재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포털 및 신규 IPTV 매체 등을 언론중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언론중재법은 첫째, 포털과 IPTV를 언론중재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둘째, 위헌결정이 내려진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재판절차를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규정을 두었다(제17조의2).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대해 이러한 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그 청구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언론사는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았다. 언론중재법 제1조(목적)는 중요한 조문상의 변화를 동반했는데 기존의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를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로 수정하였다. 전통적인 ‘언론사’ 바깥의 매체로까지 언론중재의 대상이 확대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법적·헌법적 판단



반론권 혹은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학술논문을 통해 언론중재제도를 비판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충정어린 학술적 평가가 한국의 언론 피해구제, 구체적으로 언론중재제도의 보완과 발전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일 것이다.

비판론은 반론권이나 언론중재제도가 행정적 장치를 통한 언론통제라는 점,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자발적 해결이라는 취지와 달리 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사법판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 국가기관의 반론권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서영남·박종민, 2008; 김영옥·임유진, 1010; 허만섭, 2010). 특히 임상원(2000)은 언론중재위 및 반론권을 첫째, 1980년 우리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 둘째, 자유주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장치, 셋째, 비대해진 언론제도와 다른 사회제도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제도라고 해석하면서 언론중재위가 법원과 윤리위원회 사이의 정

체성이 불명확한 제도라고 평가하였다. 이중적 정체성은 유연성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의성’이란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중재위원 구성과 중재과정의 결과적 위압성, 중재위가 자율적 속성보다는 강제적 규범을 강화해 온 점, 실질적인 피해구제 여부, 권리의 문제를 다시 권리를 통해 해소하는 방식의 아이러니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임상원, 2000).¹¹⁾

그렇다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반론권 등의 권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정리된 쟁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¹²⁾

첫째, 용어상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언론기본법과 정간법 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제목의 표현과 달리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당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따라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런 점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반박보도청구권’이 옳은 표현이라고 보았다.¹³⁾ 이후 대법원은 1991년 1월 15일 선고한 90다카25468판결, 1998년 2월 24일 선고한 96다40998판결 등에서 기존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며 따라서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1996년 정간법 개정에서 용어를 바로잡은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더불어 보도내용의 허위를 진실에 부합되게 바로잡는 본래적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은 2005년 ‘언론중재법’에 규정되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기존의 ‘정정보도청구권’이 비록 표제 및 법문 가운데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 한 것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¹⁴⁾

둘째, 반론보도청구권(구 언론기본법과 정간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실보도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따라서 이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반론권이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고 판시했다.¹⁵⁾ 헌법재판소 역시 반론권은 신속하고 적절한 무기대등의 수단이자 진실 발견과 여론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언론보도의 피해자에게 해당매체를 통해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둘째, 독자로서도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하에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 의존하는데서 나아가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11) 물론 임상원은 이 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반론권이 우리 사회에서 큰 마찰 없이 수용돼왔고 중재위의 중재나 반론권 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한 일도 별로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중재위나 반론권이 우리 사회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비교적 원만하게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임상원, 2000).

12)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참고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973판결 199.01.15. 선고 90다카25468판결 1996.12.23. 선고 95다37278판결 1998.02.24. 선고 96다40998판결 2000.02.25. 선고 99다2840판결 2006.11.23. 선고 2004다50747판결 등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1991.9.16. 선고 89헌바65결정; 1996.4.25. 선고 95헌바25결정; 1999.7.22. 선고 96헌바9결정 2006.6.29. 선고 2005헌바65 등 결정이다.

13)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973판결

14) 헌법재판소 1991.9.16. 선고 89헌바65결정 1996.4.25. 선고 95헌바25결정

15)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973판결; 1996.12.23. 선고 95다37278판결; 2000.3.24. 선고 99다63138판결; 2006.2.10. 선고 2002다49040판결; 2006.11.23. 선고 2004다50747판결

“비판론은 반론권이나 언론중재제도가 행정적 장치를 통한 언론통제라는 점,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자발적 해결이라는 취지와 달리 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사법판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 국가기관의 반론권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점등을 주장하고 있다”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¹⁶⁾

셋째,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임을 확인하고 있다.¹⁷⁾ 헌법재판소도 일찍이 반론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판단하고 헌법 제10조, 17조, 21조 제1항, 21조 제4항 등을 근거로 제정됐다고 판시하였다.¹⁸⁾

넷째, 민사소송법상 가치분 절차에 의해 반론보도청구의 소송을 재판하도록 한 규정은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해 왔다. 평등의 원칙이나 언론자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해왔다.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본안소송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의 망각이 이뤄진 뒤에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반론이 너무 늦게 집행될 경우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되는 원래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돼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권리나 객관적 질서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정이전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전치요건으로 규정하며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합헌성의 근거가 되었다.¹⁹⁾ 언론중재법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나 추후 보도청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반론보도청구권’은 가치분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²⁰⁾

다섯째, 현행 언론중재법상 ‘고충처리인’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언론사 내부에 두는 자율기구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내부적 제도에 대해 언론중재법은 법적 인 규율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고충처리인 제도에 법적인 규율을 가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는 제약되는 언론기업의 자유와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달렸다면 이 제도로 인해 신문사업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충처리인 제도가 달성시킬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고 이 제도의 이익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문기업에게도 돌아간다고 판단하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²¹⁾

여섯째,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의 소송을 가치분절차에 의해 재판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지만 ‘정정보도청구권’ 그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언론의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그 내용의 정정보

16) 헌법재판소 1991. 9.16. 선고 89헌마66 결정 1996.4.25. 선고 95헌바25 결정 1999.7.22. 선고 96헌바9 결정

17)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150747 판결 2009.11.5. 선고 2008그93 결정

18) 헌법재판소 1991. 9.16. 선고 89헌마66 결정

19) 헌법재판소 1991. 9.16. 선고 89헌마66 결정 1996.4.25. 선고 95헌바25 결정

20) 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5헌마65 등 결정

21) 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5헌마65 등 결정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권은 허위보도를 한 해당 매체를 통해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문의 자유와 피해구제의 이익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현재는 기존의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의 추궁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허위의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구제제도도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신문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허위보도를 한 해당 매체를 통해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문의 자유와 피해구제의 이익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언

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소명만으로 인용하고 언론사에게 충분한 증거제출이나 방어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²³⁾²⁴⁾ 2009년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면서 정정보도청구권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르도록 바로 잡혔다.

IV. 맺음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제도는 여러 차례 헌법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절차상의 일부 흠결을 치유하는 것 외에는 반론권 및 언론중재제도가 인격권과 언론자유라는 헌법상 서로 갈등하는 이익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2005년 단일법을 제정·시행하고 2009년 포털을 조정과 중재의 대상으로 포섭함으로써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등의 보도·매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구제하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반론이나 정정

22) 헌재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양재규(2006b)는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명쾌하게 규명한 것은 정말 큰 수확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김윤정(2006) 역시 신선훈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 이적실무상 많은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정정보도청구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들이 어느 정도 정리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헌재결정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본안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없앴과 함께 절차상의 혼란도 없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23) 헌법재판소 20066.29.선고 2005헌마65 등 결정. 현재의 이 결정에서 다시 한번 국회의 ‘법안숙여흔들기’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04년 6월 입안한 ‘언론피해구제법안’을 보면 정정보도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가처분절차가 아닌 본안소송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사실의 인정을 소명 아닌 증명에 의하도록 하며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절차를 붙이도록 하고 나아가 법원으로 하여금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입안도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사하였다. 양경승(2006)이 지적한 대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위헌시비가 제기된 연유 중 상당부분은 국회의 법안숙여흔들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4) 김지협(2006)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필연적으로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많은 예외규정을 둔 조처에는 이론상은 물론 실무상으로도 많은 의문이 간다면서 정정보도등에 관한 다름이 통상의 민사소송과 성장상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신 권리의 신속구제문제에는 특별 전담재판부를 두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중재위원회 중재절차를 거친 기록을 파악한 뒤 바로 변론기일을 넣어 심리한다든지 혹은 별도의 변론준비절차가 필요한 경우 쌍방에 대해 기일을 짧게 잡아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증거조사에 협조하게 하는 등 담당재판부의 실제적인 시간처리 방식에 의거해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지협, 2005).

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자율적인 조정과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숨길 공간을 얻었다. 현행 언론중재제도는 오프라인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법의 사각현상이 발생하고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나 삭제될 권리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사항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다.²⁵⁾²⁶⁾ 그러나 조정실무를 통해 당사자 간에 법적인 방법외의 피해구제조치로서 문제된 기사의 삭제가 이뤄지는 등 개선의 여지는 크게 열려 있기도 하다.²⁷⁾ 입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흠결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반론권 보장 시비 등 학술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지난 30년간의 언론중재제도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가치를 확산시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욕설과 비난, 혹은 음박치기와 은근한 겁주기 보도 등의 행태가 동원되는 대신 당사자들 간의 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와 언론사의 직접 대화든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든 반론권제도의 도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언론중재위를 통한 조정의 결과가 당사자 모두를 흡족하게 만들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도 양단식 재판절차를 통해 파생될 폐해를 최소화 하는 장치로서 기능했다고 본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반론보도 청구나 추후보도청구 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언론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자발적 신청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피해구제율도 더불어 늘어났다. 조준원의 분석 결과 조정과정에서 피해구제 영역이 해마다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법조항에 근거한 보도와 손해배상 외에도 유감표명, 기사수정, 재방영금지, 기사삭제, 검색제한 내지 정정보도문의 검색 허용, 취재보도 개선 약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회복 및 화해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조준원, 2010: 98).

둘째, 인격권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더불어 언론중재제도가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제도로 정착되는 성과를 낳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16,096건의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되었다. 피해구제율은 64.7%였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5,280건 32.8%였다.²⁸⁾ 언론매체의 양적 증가에 따라 언론피해의 절대건수가 늘어난 것도 배경이겠지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자발적·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500건 이상, 2006년 이후 평균 1천여건 이상의 조정신청이 접수되지 못했을 것이다. 정남철(2010)과 언론중재위원회(2011)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동안 신고한 언론관련 판결 108건의 원고승소율은 52.8%였다. 이에 반해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율은 73.9%였다. 2009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이용자 만족도에 따르면 신청인의 종합적 만족도는 80.1점,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72.3점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

25) 인터넷매체관련 언론보정의 조정·중재 실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자료로 성동진(2010) 양재규(2010)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2010 정책토론회)에서 성동진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을, 양재규는 '포털사건 처리방안 개선에 대한 실무상의 검토'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 논문 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 대한 지정도론자들의 토론 내용도 매우 유익하다. 토론문은 해당 논문과 같은 권에 실렸으며 정희성(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이상협(NHN 정책실 차장)이 맡았다.

26) 여성원(2009)은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가급없이 게재하여야 하는 뉴스서비스업자가 그 기사의 오류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뉴스서비스업자는 기사제공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가 허위 또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기사를 게재하였을 때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여성원, 2009 20-21).

27) 조준원(2010)의 연구에 따르면 비독립법인 언론사닷컴은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지만 조정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점차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영역에서도 피해구제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http://www.pac.or.kr/html/data/d_status_view.asp?seqid=19&num=79&page=1&cur_pac=0&s_field=&s_string=&bnam=ptbl_pds11&|=79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 피해구제율=[조정성립건수+직권조정결정중 동의건수+그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수]/조정건수(기각, 각하 제외)

과 110명 중 96.4%인 106명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남철, 2010: 20-21). 2010년 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80.8점,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75.4점이었다(언론중재위원회, 2011: 105-107).

셋째, 반론권과 언론중재에 대한 학술적 연구성과를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간행물인 계간 <언론중재>와 연례적인 정기 세미나를 통해 저널리즘과 인격권 갈등의 조화, 표현의 자유와 규제, 선거보도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확장,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과 저널리즘의 과제, 대체적 분쟁제도 등 관련 의제들이 술하게 제기되었다. 언론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사례와 언론소송의 판결례 등을 집적해 발간함으로써 언론법 연구의 바탕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원천자료를 토대로 반론권과 언론중재제도의 특성과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석박사 학위논문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또 법학분야의 학술지와 언론학분야의 학술지에 언론중재제도와 관련한 다각적인 관점의 논문들이 게재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국회전자도서관의 검색코너를 이용해 '반론권', '언론중재', '정정보도', '언론피해구제' 등의 키워드를 입력한 결과 국내 학술지에 총 889건의 연구자료가 등록돼 있었다. 그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7건, 등재후보학술지에 10건의 관련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검색되었다.²⁹⁾ 한편 같은 키워드를 입력해 석박사학위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186건의 논문이 소장돼 있었다. 그 중 박사학위논문은 21편이었다.³⁰⁾

“피해자와 언론사의 직접 대화든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든 반론권제도의 도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넷째, 반론권 본래의 취지대로 정보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저널리즘의 취재보도 규범의 착근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으므로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모면한다거나 단순히 언론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가치규범이라고 할 것이다. 언론정보의 소비자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은 논쟁점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 서로 반박하는 정보를 균형 있게 획득해야만 올바른 여론형성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다. 무릇 어떠한 사안이나 쟁점에도 대응하는 견해가 존재하고 또한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해야 제대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규범의 확산은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의 바탕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언론중재제도가 눈에 띄는 성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민주주의 사회질서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소중한 규범·가치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기여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줄 것을 기원한다.

29) 반론권 및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김병국(2001, 2002, 2004)은 잇따라 세 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였다.

30) 이 분야의 주요한 박사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상우(2010)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반론권 적용에 관한 법제적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경배(2009) 인터넷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적 연구: 주요 판례 및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김용주(2007)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시립대 대학원. 류근홍(2006) 장발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도입 필요성과 그 적용한계를 중심으로. 청주대 대학원. 김태수(2006) 공인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한계. 고려대 대학원. 윤성목(2006) 스타의 권리침해 유형과 전략적 대응 방식에 관한 연구: 인격권 침해 소송을 중심으로. 광운대 대학원. 신근호(2005)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박도희(2005)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그 적용의 한계. 한양대 대학원. 박종인(2004) 정부부문 언론보도의 발생구조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양대 대학원. 조지현(2001)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보호영역에 관한 미국·독일·우리나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김동근(2000)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김병국(1998) 반론권제도의 언론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성낙승(1997)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은희(1995)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서울대 대학원. 김종서(1994) 사창자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임병국(1990) 한국 길간신문의 오보와 그 구제에 관한 연구. 4대 일간지의 고찰 시와 언론중재시제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참고문헌〉

- 강경근(1995). 헌법상 반론권과 중재제도. 『법학논총』, 제8권.
- 강경근(2000). 언론환경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언론중재』, 제20권 제4호, 5-33
- 김병국(2001). 언론의 역기능과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제1권 제3호, 5~31.
- 김병국(2002). 한국과 주요국가의 반론권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2권 제3호, 43-69.
- 김병국(2004).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유사 제도의 비교 고찰. 『언론과학연구』, 제4권 제1호, 48-69.
- 김영욱·임유진(2010). 언론-스스근 갈등해소와 '조정' 기능 강화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1호, 182-204.
- 김윤정(20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제26권 제3호, 19-43.
- 김재협(2005).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언론중재』, 제25권 제1호, 26-41.
- 김창룡(2001). 언론에 비친 언론중재제도 20년. 『언론중재』, 제21권 제1호, 17-28.
- 류지태(2004).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 방향. 『언론중재』, 제24권 제3호, 20-34.
- 박경래(2008). 언론에 의해 침해당한 인격권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동서언론』, 제11집, 87-130.
- 박종호(2006).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언론중재』, 제26권 제4호, 98-103.
- 서영남·박종민(2008). 문민국민 참여정부의 언론중재 현황을 통한 정부의 대언론관계.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2호, 5-39.
- 석희태(2006). 언론중재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언론중재』, 제26권 제2호, 88-94.
- 성낙인(2002). 반론보도 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언론중재』, 제23권 제2호, 4-21.
- 성동진(2010).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 『언론중재』, 제30권 제4호, 101-105.
- 양경승(2001). 언론중재위원회 20년 좌표와 전망: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제21권 제1호, 6-16.
- 양경승(2004).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언론중재』, 제24권 제3호, 5-19.
- 양경승(20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인가. 『언론중재』, 제25권 제3호, 45-81.
- 양삼승(2000). '언론피해 구제법' (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제20권 제4호, 34-54.
- 양재규(2006a).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언론중재』, 제26권 제4호, 21-43.
- 양재규(2006b). 언론중재법 관련 현재결정(2005헌마166등)에 대한 소고: 언론의 위축효과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제26권 제3호, 4-18.
- 양재규(2010). 포털사건 처리방안 개선에 대한 실무상의 검토. 『언론중재』, 제30권 제4호, 106-116.
- 언론중재위원회(2011). 『연간보고서 2010』.
- 여상원(2009).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뉴스서비스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언론중재』, 제29권 제3호, 6-21.
- 유재웅(2003).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 국가기관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1호, 147-175.
- 윤성욱(2007). 공인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40호, 150-191.
- 윤성욱(2008). 국가기관의 반론권 보호범위와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2권 제1호, 121-161.
- 이재진·유재웅(2004). 언론중재제도의 조정전치 기능에 대한 재고찰.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2호, 267-293.
- 임상원(2000). 언론의 자유와 반론권. 『2000 한국언론학회세미나자료집』, 49-67.
- 정남철(2010). 행정형 ADR과 언론조정·중재제도. 『언론중재』, 제30권 제4호, 8-26.
- 조소영(2006).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153-181.
- 조수정(2006). 언론보도 분쟁의 재판 외 해결절차로서의 언론중재. 『언론중재』, 제26권 제2호, 75-87.
- 조준원(2010). 언론중재법 시행과 조정 양상 변화연구. 『언론중재』, 제30권 제4호, 81-100.
- 한위수(2006).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제26권 제4호, 5-20.
- 함석천(2005).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제25권 제1호, 42-53.
- 허만섭(2010). 언론중재제도의 '국가기관 반론권' 과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6호, 315-343.

주요 국가의 언론피해 구제방식 비교 고찰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I. 문제제기

옛말에 ‘홍정은 불이고 싸움은 말리랴’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가능하면 다툼이 끝까지 가지 않도록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간의 다툼을 법적인 해결방식을 통해서 하기 이전에 여러 대안적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법을 통한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여의치 않은 경우의 문제해결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민주주의의 실현 목적과도 일치한다. 그래서 국가는 상충하는 제 이익들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따르며 개별 인격권간의 다툼이 발생할 때 국가는 사회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이들 이익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함께 대안적 문제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Lee, 1998, p.155).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이외의 여타 선진 주요 국가의 경우 과연 언론과 개인 사이의 명예훼손 관련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대안적 문제해결 방식의 적용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의 재조명은 현재 반론권을 근거로 하는 언론중재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명예훼손법은 한 사회에서 상

충하는 가치들, 즉 인격권과 언론자유에 대해 특정 사회가 부여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반영한다(Schaer, 1980, pp.3-4). 명예훼손 소송은 개인의 인격권을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로부터 보호하는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복감정을 얻어내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명예훼손법은 무분별한 뉴스 보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언론을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제로 이해되기도 한다(Vick & Macperson, 1996, p.933).

반면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으로서의 반론권은 세계적으로 약 33개국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8; Glasser, Jr., 2009; Youm, 2008). 여기서는 이들 중 반론권과 관련한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반론권 현상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가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한국에서 반론권을 수용하도록 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비교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인데 왜냐하면 법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독일의 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Lee, 1998). 프랑스도 제외할 수 없는데 프랑스는 반론권을 처음 법제화한 국가이다. 때로 독일의 반론권제도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독일의 반론권과 다른 점은 독일에서의 반론권이 단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과 비평 등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이재진, 2006). 일본도 우리의 민·형법등 법구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국가라는 점에서 빠질 수 없는 입장이며, 미국의 경우도 해방 후 미군정기 동안에 한국의 법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대륙법계와 다른 영미법에 속하므로 반론권에 대한 이해의 본질적인 차이를 비교하고 그 시각의 확대를 위해서도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독일

독일에 있어 언론자유는 사회적 제 이익들과 균형이 이루어져야하며(Glasser, Jr, 2010) 명예훼손적 표현은 피해자를 타인에게 오인하게 하는 명예나 존엄성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된다(김상우, 2010; Thwaite & Brehm, 1993, p.343). 그래서 독일 형법 제186조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가 이러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그 행위가 문서의 반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¹⁾ 그러나 실제로 형벌의 적용은 극히 드물거나 “악명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형법은 제193조에서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공익과 관련된 경우이거나 그 정보원이 믿을 수 있는 존재였거나 또는 이로부터 나온 정보에 대해 언론인이 철저히 조사한 경우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독일에서는 ‘공인 원칙이 수용되고 있지 않고 공익성과 진실성을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Glasser, Jr., 2010).

이에 반해 민법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제 823조 및 제824조에 명시하고 있다. 제823조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과실책임을 묻는 반면 제824조는 특수한 경우로서 언론인이 출판이나 방송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내용이 피해자의 신용이나 경제적 위상, 그리고 승진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사실적 주장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며 ‘의

견’의 경우 타인을 ‘중상’하거나 굴욕감을 일으키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

독일법의 기본적 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후의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전의 ‘교정적’(corrective) 혹은 ‘예방적’(preventive) 장치가 중요시된다는 것이다(Karpen, 1995, pp.57-59). 그러한 이유로 반론권은 사전금지(injunction)와 손해배상(damages)과 함께 중요한 민사적 구제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재판 전에 비심(preliminary hearing)에서 법원은 피소자에게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해 제소자가 원하는 반론을 신도록 하거나,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이 더 이상의 출판, 방송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판결의 취지를 언론이 보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Vick & Mcpherson, 1995, p.956). 손해배상은 대개 특정의 피해에 대한 일반적 배상에 한정하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록 반론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 독일에서는 반론권을 명시한 연방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기본법(헌법)(Grundgesetz: Basic Law)에서 개별주(Staat)로 하여금 반론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박윤희, 1995a, pp.40-41). 독일에서의 반론권은 독일 기본법 제1조와 제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의 권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동 조항들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Basic Law of Germany, Art 1 and Art 2). 즉 독일 반론권은 민주적 절차나 여론을 보호하기보다는 개인을 언론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있다(Kohl, 1985, p.214).

독일의 반론권은 1831년 최초의 언론법인 바덴주 언

1) 독일 형법 제187조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187조a는 정치인에 대한 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189조에서는 사자의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 독일 형법 제193조는 ‘학문적·예술적·영양적 업적에 대한 비판 권리의 행사나 방위 또는 정당한 이익의 옹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 의견발표, 상권의 부하에 대한 징계 및 견책, 공무원의 업무상 고발 또는 비평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의견발표의 형식이나 의견발표가 행하여진 상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모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 제85조의 모욕죄, 제86조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89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에도 적용되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해석되고 있다.

론법(Baden Pressrecht: Baden Press Act)에 의해서 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법은 1822년 제정된 프랑스 언론법을 따른 것이다. 바덴주 언론법은 주정부에게 오류가 있는 뉴스의 '정정(correction)'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바덴주 언론법의 실질적 근거가 되는 제국언론법(Reichspressegesetz: Imperial Press Law)이 1874년 제정되었고 동법은 반론권을 모든 주 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최초의 헌법이 되었다(Schwarz, 1966, p.80).

이후 1949년부터 바이에른(Bayern)주를 시작으로 각주들은 언론관계법 조항속에 반론권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다. 현재 모든 독일의 주들은 독일 기본법에 상응하는 언론의 책임과 권리를 상술하는 법을 구비하고 있는데 반론권은 주 언론관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김상우, 2010). 각 주의 언론법상의 반론권 규정은 비록 반론권의 실제 집행의 절차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대개 유사하다.

가장 좋은 예는 독일 출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함부르크(Hamburg) 주 언론법에서 규정하는 반론권이다(Hamburg Press Law). 함부르크주 법에서의 반론권 조항은 독일에서 반론권이 어떻게 법적으로 개념화되는지를 잘 보여준다(Kohl, 1985, p.214). 함부르크주 법에 따르면, 첫째, 다른 주의 경우와 비슷하게, 반론권은 사실적 언사에 대해서만 허용된다(Tatsachenbelauptung). 함부르크주 언론법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자나 발행자는 발행물에 공표된 잘못된 사실적 내용과 관련된 사람이나 개체(body)에게 반론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따라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주관적 표현은 반론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동법은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어떠한 자연인이나 기관·개인, 협회,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반론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Löffler, Heribert, & Frank, 1974, p.74). 발행간격이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모든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과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의 내용들이 이러한 반론권의 대상이 되며 반론권의 요청은

“독일법의 기본적 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후의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전의 ‘교정적’ 혹은 ‘예방적’ 장치가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반론권은 사전금지와 손해배상과 함께 중요한 민사적구제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보도된 지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셋째, 동법은 반론문의 경우 만일 조판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 제호의 다음 호에 실려야 한다고 명시하여 신속한 반론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3항). 특히 뉴스간행물의 경우 명예훼손적 기사가 실린 것과 같은 섹션에 문제기사와 같은 형태(type)로 게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방송이 나가는 같은 시간대와 같은 수신대에 반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판사나 방송사는 반론내용에 임의로 내용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편집자 앞으로 전달되는 편지나 독자란에 실리는 기고는 반론을 대신할 수 없다.

넷째, 언론매체는 단지 사실에 대한 언급의 경우에만 해 반론문이 실리는 해당 호에 반론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평을 실을 수 있다. 함부르크주 언론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기관의 공개된 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의 경우 반론권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Para. 11(4)). 만일 미디어가 반론권 요청을 거부한다면, 반론권 주장은 순차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반론의 게재가 결정되면 민사법원은 반론문이 게재될 때까지 발행지에서의 배포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독일의 반론권은 아직까지 헌법적으로 유효하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983년 2월 8일에 내린 반론권에 대한 합헌결정에서 “일반적 인격권은 그 중요내용의 하나로써 개인이 자기에 관한 서술이나 표현에 관하여, 즉 개인적인 정보에 관하여 스스로 그 공표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반론권은 이러한 일반적인 인격권의 한 종류로서, 현대 대중사회에서 개인영역을 침

해하는 언론매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판시하여 반론강제주의의 합헌성을 확인하였다(박선영, 1999, p.41).

헌법재판소는 또 1998년 1월에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반론권과 정정권을 규정함부르크 신문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인격권을 비교衡量한 뒤 “언론의 자유는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자리에 게재할 것인가를 포함한다. 함부르크 신문법의 반론권은 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박선영, 1999).

그러나 반론권 이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이재진, 2006). 한편 반론권이 특정 유형의 명예훼손으로부터의 구제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이용된다는 것도 최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론문 게재를 위한 요건을 강화해서 권리 남용을 막고자 하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도 최근의 경향이다.²⁾ 바이에른주의 경우 지나치게 긴 반론문에 대해서 광고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³⁾

가장 최근의 쟁점은 인터넷에서의 반론권과 관련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반론권은 전기대중매체를 사용한 제공자에 관한 주(state) 간의 계약(MDStV)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반론권은 사실적인 내용에 한해 인정되며, 반론보도문은 원래의 보도와 동일한 비중으로 인터넷상에 게시해야 한다.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가 처분 절차에 대한 민사소송 규정이 적용되며 본안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박종호, 2000).

뒤셀도르프주 지방법원은 1998년 인터넷 반론권과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LG Dussenldorf, Hus Beschluss v. 29.04., 1998). 이 사건은 원고 A가 개인 홈

페이지를 운영하는 B를 상대로 반론권을 요구한 것이다. A는 B가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는 반론권 요청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신문과 방송처럼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넷에서의 반론권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사실적 주장과 관련된 스트레이트 기사에 한해 반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칼럼이나 논설에서의 주장은 반론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칼럼이나 오피니언 페이지에서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피해자는 반론권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정기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상대로만 반론권이 인정된다. 이때 언론의 여부는 정기성에 근거한다. 또 저널리즘과 편집권을 행사하는 매체가 반론권의 대상이며, 판보 등 편집의 자유가 없는 매체는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사안의 공익성(공개)의 정도에 따라 반론권의 실행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즉 공개적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의 논쟁이나 주장은 반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신문이나 방송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반론권이 성립되는 반면 개인 블로그에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반론보도문이 원래 기사량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으면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프랑스

역사적으로 프랑스 언론은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형태의 정부 간섭을 받아왔다(박운희, 1995b, p.47).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프랑스의 언론은 행정

2) 뮌헨고등법원 1998. 3. 13 선고-21 U2208/98 판결 『언론중재, 1999년 봄호(70호)』, pp.134-137에서 재인용.

3) 1997년 12월 10일 합의부 판결, Av. 21 U 5795/97-Birgen Air. 『언론중재, 1999년 봄호(제70호)』, p.137에서 재인용.

부의 조치, 예를 들어 사전 검열, 안정세(security payment), 또는 간접세 등과 언론을 상대로 한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통해 규제되어 왔다(Errera, 1985, p.137). 언론은 언론대로 개인에 대해 부주의하고 선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남발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 19세기가 끝날 무렵 언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보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을 통한 자율규제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Terrou, 1951, p.13). 무엇보다 혁명기 동안 프랑스 언론은 심각한 명예훼손 기사나 과도한 반정부 기사들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혁명 후 언론이 진실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동시에 개인적 명예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언론을 세우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반론권을 수용하였다. 반론권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안이 1800년에 의회에 제출되었다. 동법안은 ① 언론의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②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보도로부터 독자들을 보호하고, ③ 공중의 권력과 언론의 권력을 균형 지우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④ 형사적 문제해결과는 다른 피해구제책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Blin et al., 1982, p.4). 그러나 이 법안은 언론사가 반론의 의무를 어겼을 경우 언론사의 폐간을 명하는 등 중벌을 과하도록 한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822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반론권을 규정한 법안이 통과된다(박운희, 1995b, p.47).

반론권 실시와 관련하여 가장 실질적인 법인 '출판자유에 관한 법률'이 1881년 제정되는데(동법은 1993년에 개정), 예전의 억압적인 언론관련 법조항을 폐지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동법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대중의 안전, 그리고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은 금지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두었는데, 이러한 '개인적 이익'에 반론권을 포함시키고 있다(Errera, 1985, p.138). 동법제11조(개정법제13조)는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 또는 편집자는 반론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또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때는 다음

"프랑스법의 특징은 반론권이 사실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비판이나 평가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되는 누구라도 해당 언론을 대상으로 반론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호에 그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서 지명 또는 지적을 받은 모든자의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맹원순, 1985, p.190).

프랑스법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개인의 명예나 지역적 명성(consideration)에 대해 반하는 사실적 주장이 있어야 한다(Glasser Jr., 2010, p.286; Braithwaite, 1995, pp.323-326). 이러한 공격에 있어 악의(bad faith)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분석해서 추론해 낼 수 있다. 만일 명예훼손적 주장이 게재된 지 3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악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입증책임은 자연적으로 피소인에게 돌아간다. 기업도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비난(disparagement)의 경우에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이것이 여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과 연결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Glasser Jr., 2010, p.287).

형사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민사소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법상의 조항 적용을 받게 된다(Kunstadt, 1980, pp.62-68). 민법상의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언론사가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 조사하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는 과실로 인정된다(Braithwaite, 1995, p.327). 개인간의 민사소송에서보다 언론이 피소인으로 등장하는 경우 배상액이 높아진다(Vick & Macpherson, 1996, p.954).

반론권은 법정 소송이 가능하던 그렇지 않던지에 상

관없이 인정되며, 반론요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는 민·형사적 소송의 대상이 된다(Vick & Macpherson, 1996, p.954).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보도청구권(right of rectification)을 갖는다. 프랑스의 경우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은 1972년 이전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Ward & Redmond-Cooper, 1983, p.214). 이는 1972년 7월 제정된 방송법 제8조에 의해서 규정되었으며 그 규정은 1974년의 방송법 개정시 제34조로 옮겨졌으나 내용은 계속 유지되었다. 다만 반론방송 청구의 구성요인은 1975년에 공포, 시행된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조직에 관한 법령이 세부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법의 특징은 반론권이 사실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비평이나 평가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되는 누구라도 해당 언론을 대상으로 반론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의사나 경찰관은 대개의 경우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프랑스의 경우 반론권과 아울러 정정보도를 위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1881년 프랑스 언론법(1881, Press Law)은 정부가 정부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들에 대해 해당 언론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는데(Le droit de rectification) (개정법 제2조), 반론권과는 달리 정정보도권은 공직자들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때 정정보도권은 단지 공직자들의 공직활동에 관련된 잘못된 기사 게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정보도의 양은 원문기사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다(개정법 제12조 제2항)(팽원순, 1985, p.191).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도 반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자(死者)에 대한 반론권도 인정되는데 필요하다면 사자의 대리인을 통해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개인이 사망한 후에도 사자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타

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언론에 대한 반론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론문은 만일 법원이 훼손된 명예에 대한 회복에 있어 부적절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게재해야 한다. 비록 이러한 반론권이 언론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없지는 않으나(Danziger, 1986), 1960년대 이후 반론권 청구는 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박윤희, 1995, p.62).

최근의 판결에서 파키원(최고재판소)은 비록 반론권은 일반적이며 반론문의 형식, 내용, 범위, 효용 등은 청구인이 판단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반론문이 법률, 선량한 풍속, 제3자의 정당한 이익 혹은 언론인의 명예에 반하는 경우 언론은 반론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⁴⁾ 특히 반론권의 행사가 반론권 청구인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론권 청구를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주장과 반드시 관련 지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반론을 야기시킨 원문 기사와 반론문 사이에 연계성이나 적합성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청구인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 6월 21일 제정한 법률 제2004-575호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의 신뢰를 위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도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김상우, 2010, p.66). 인터넷상의 반론권 청구의 주체는 오프라인 매체의 경우와 동일하다.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에게 정보가 제공되거나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누구나 반론권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상에 등장했고, 일반인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반론권 행사는 인쇄매체와 마찬가지로 기사가 최초로 게재된 지 1년 동안 가능하다.

반론권 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4) Front National c/ Jean-Marie Colombani,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1998, 6/16 판결 『언론중재』, 1998년 겨울호(통권 69호), 138에서 재인용.

생각하는 사람은 '발행인'에게 반론권을 청구한다. 만약 정보·보도 사이트가 비전문적인 사이트로부터 게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책임자(서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우선 반론권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 수신자가 편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 내용 속에 문제 삼는 콘텐츠, 해당 내용이 실린 사이트에 자신이 접속한 방법, 해당 내용의 저자(저자가 명시된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이미지)과 비디오도 반론권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반론 보도문은 문서 형태로 게재해야 하며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녹음의 형태로 할 수 없다. 반론권 청구 대상이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 비디오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음성이나 비디오에 대한 반론권 청구인 경우 해당 음성이나 비디오의 대사를 텍스트로 옮겨 쓴 분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어떤 경우에도 반론 보도 및 반론 정보는 200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청구 대상 사이트는 독일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인터넷 사이트가 포함된다. 하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한다. 따라서 위키피디아, 아고라 북스(프랑스판 오마이뉴스), 블로그, 인터넷 의견 포럼 등은 반론권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반론권 절차가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간이 아닌 정기적인 뉴스레터(전자우편) 역시 반론권 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뉴스레터에 대한 반론권 청구는 인터넷상으로 구독을 희망한 가입자가 받아 볼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통해 반론 보도문이 게재되어야 한다(김상우, 2010).

이 경우 인터넷 사이트의 책임자는 반론권 청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원래의 내용과 동일한 형태로 반론 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때 단순히 독자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형태로 반론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반론 보도문은 원래의 보도, 정보와 결합된 형태, 하이퍼텍스트상 링크의 형태 또는 해당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의 아랫

부분에 게재해야 한다. 그리고 반론 보도문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반론권 청구 대상 기사는 반론권을 제기하는 시점에 온라인에 게재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러나 해당 기사가 온라인에서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기사를 처음 게재한 지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반론권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 측에서 게시 3일 이내에 보도 내용을 수정해 다시 게재한 경우에는 반론권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이트 책임자가 수정 게재했다면 반론권 청구자가 반론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이트 책임자가 반론 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킨 반론권 청구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반론 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반론이 3일 이내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 3,750유로(약 55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처벌은 명예훼손 등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한 민사 소송과는 별개의 건이다.

3. 일본

비록 일본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언론자유의 보다는 개인권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일본 언론관계법에 따르면 언론은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 입증의 책임을 진다.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Smith, 1993). 따라서 일본의 명예훼손법은 문제되는 내용의 진실성의 정도와 개인의 명예에 대한 피해의 정도를 균형 지우는데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Tanaka, 1988, p.324).

궁극적으로 일본의 명예훼손법은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을 띤다(Haley, 1988, pp.315-327). 피해의 보상은 대개 개인주의적 자율성보다는 '집단 결속'의 문화적인 속성이 강조되며 그래서

“일본의 경우 반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등으로부터 반론권에 대한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명예 훼손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개 사과’ (public apology)가 현재까지도 널리 수용되고 있다(Beer, 1984, p.319). 그래서 사람들이 비슷한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이, 확증되지 않은 주장조차도 마치 자명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집단적 성향이 명예훼손법에 반영되어 있다.

일본 헌법은 광범위한 언론보호 조항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민법과 형법 모두에서 대단히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면 이론적으로는 형사적 해결보다 민사적 해결을 선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는데 왜냐하면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높으며 승소해도 손해 배상액이 명목적인 수준에 그치며, 피해당사자는 금전적 보상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원하기 때문이다(Lee,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추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형법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Horibe, 1985, p.328). 공연히 사실적 주장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개인은, 그러한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구금이나 징역 또는 50만엔(약 6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30조 제1항).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관련된 경우, 법원은 ‘엄격한 책임 (strict liability) 원칙보다 ‘부주의(negligence)’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익과 관련된 경우 그 피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보다는 언론의 부주의가 존재했는가에 따라서 처벌을 판단하는 원칙을 따른다.

아울러 형법은 문제된 기사의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련된 경우 그리고 단지 공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보도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면책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0조의2 제1항). 무엇보다도 형법은 헌법 제21조 언론보호 조항에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법원은 언론이 기사를 게재한 당시 문제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당시 그것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선의의 노력을 하였다면 범죄 의도를 언론에 전가하지 않는다. 아울러 형법은 혐의자의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공직자나 공직 입후보자들에 대한 언사의 내용을 “공적인 관심사”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사인들의 사적인 행위도 그 성격과 사회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에 따라 공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

민법의 경우, 1949년 ‘신문 및 간행물 규제법’ (이후 신문법)이 폐지된 이후 이전에 법에서 허용하던 반론권이 더 이상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을 대신하는 또는 금전적 배상과 함께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723조).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 침해가 위법한 것이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710조의 경우 피해가 개인의 명예권에 발생했는지 또는 재산권에 발생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 피해에 갈음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과는 달리 민법의 경우 공적 이익의 쟁점과 관련되어 면책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비록 공익과 관련된 경우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 법원은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이러한 공익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왔

다. 실제로 일본법원은 개인의 명예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격적인 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데, 법원은 논란이 되는 표현을 진실인 것으로 믿고 보도했다는 '선의 (good faith)'를 입증하거나 훼손된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보도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강조한다(Yamanaka et al., 1986, p.139).

본질적으로 일본의 언론은 명예훼손 소송의 결과로 생기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Youm, 1990, p.83). 구제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주어지고 처벌이나 보복보다는 개선이나 개정이 법 집행의 원칙적인 목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의 사과가 명예훼손의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적절한 구제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판례들은 사죄광고의 적용을 위해 진실성과 공익성의 요건을 강화해 가는 경향이 있다.⁵⁾

반론권의 경우 1869년 제정된 '신문지인행조례'가 1873년 '신문지발행조목'으로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 신문지발행조목 제16조는 '게재한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정정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여 착오에 의한 정정문 게재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김상우, 2010). 그러던 것이 1875년 개정된 '신문지조례'에서 반론권이 좀 더 구체화된다. 동법 제11조는 '신문지 혹은 잡지·잡보에 게재된 사항에 대해 관서, 회사 혹은 인민으로부터 변박서 혹은 정정을 청구하는 서면이 들어온 때에는 수령한 즉시 차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편집인을 10엔 이상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정정과 반론 게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한영학, 2002). 1883년 개정된 신문지조례는 제29조에서 '신문지에 게재된 사항의 착오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정오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차호 또는 제3호에 별도의 난을 두어 게재 또는

정오를 행한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엔 이상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887년 개정 신문지조례는 반박의무를 재도입하고 절차와 요건을 체계화했다. 동법 제13조는 '신문지에 게재된 사항의 착오에 대해 그 사항에 관한 당인 또는 관계있는 자로부터 정오 또는 정오서·변박서 게재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후 차호 또는 제3호의 발행에 있어서 정오를 행하거나 정오서·변박서 전문을 게재해야 한다. 만약 정오서, 변박서의 길이가 원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자수에 대해 광고료와 동일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일본의 반론권 제도가 비록 프랑스의 반론권 제도를 모델로 하였으나 인격권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나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서의 반론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언론보도의 자유를 견제하고 억압하려는 색채가 강했다. 때문에 1949년 신문지법이 폐지되면서 반론권 제도도 동시에 폐지되었다. 오늘날 어떤 법률 조항에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며 일본 법원이나 학계도 반론권을 인정하거나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이다(김상우, 2010; 한영학, 2002). 인터넷에서의 반론권에 대해서도 이는 다르지 않다.

다만 반론권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술한 민법 제723조상의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규정한 내용을 통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회복조치이므로 기존의 반론권과는 구별이 된다(김상우, 2010). 또한 방송법 제4조에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해 권리를 침해한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본인이나 직접적인 관계자는 방송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 또는 취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사는 청구가 있는 즉시 내용을 조사해 진실하지 않은 경우 2일 이내에 정정 또는 취소

5) 상고인 甲斐扶郎/피상고인 朝日新聞社/최고재판소 平成6년 제084호 손해배상 청구사건, 1993.1.30. 제2소법정 판결 『언론중재』, 1998년 겨울호(69호)에서 재인용.

방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윤리강령중 ‘인권의 존중’ 항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판단한 경우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반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등으로부터 반론권에 대한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제21조 조항이 국가로부터의 언론의 자유 확립이라는 해석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권을 법원이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 권리라고 인식하는 학자들도 있다.

4. 미국

미국의 명예훼손법에 대한 이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를 다른 기본권 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두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Youm, 1995, p.85). 미국의 헌법학자인 샤우어(Shauer, 1980, pp.12-13)는 “미국 헌법 하에서 언론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반면, 명예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다. 그 결과 언론에 대한 잘못된 제약이나 처벌은 개인의 명예에 대한 피해보다 더욱 피해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언론은 미국 헌법에 의해서 우월적 지위(preferred status)를 향유한다”고 간파한 바 있다. 또한 언론비평가인 루이스(Lewis, 2010)는 기타 많은 헌법학자들과 언론학자들이 이러한 점에 동의하면서 미국의 법체계와 여타 다른

“미국의 경우 반론권은 피해보상을 위한 구제수단으로부터는 공중의 미디어에 대한 일종의 접근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언론매체가 자발적으로 반론을 허용하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반론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의 법체계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법과 관련된 모든 판결 내용은 수정헌법 제1조의 틀 내에서 결정된다(Goodchild, 1986, p.317). 미국 명예훼손법의 특징은 연방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명예훼손의 여부 판단은 ‘활기차고 공개된 토론이 과도한 정부권력에 대한 최대한의 견제를 제공한다’는 이론 하에서 발전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의 활성화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운영에 핵심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다(Shiffrin, 1994, p.688). 그래서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의한 피해는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Smith, 1993, p.874).

이러한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64년의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이다.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공직자(public official)의 경우 문제되는 기사의 내용이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근거하여 생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376 U.S. 254). 설리반 사건 이후 이전까지 명예훼손적 언사의 진실성을 입증해야만 했던 미디어는 그 책임을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Sullivan 판결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정부활동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으로 간주되고 있다(Kalvin, 1964).

이러한 법문화 때문에 미국에서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은 여타 다른 국가들의 반론권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즉 미국의 경우 반론권은 피해보상을 위한 구제수

단으로보다는 공중의 미디어에 대한 일종의 접근권(right to access)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언론매체가 자발적으로 반론을 허용하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반론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1974년 토닐로 사건(Miami Herald v. Tornillo)의 결과로 인쇄매체에는 반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418 US 241). 토닐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편집에 따른 결정은 전적으로 편집인에게 속한다고 전제하면서,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반론권이 “공적인 논의의 생명력을 위축시키고 다원성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론권은 신문을 인쇄하는데 드는 재료의 사용과 비용을 높일뿐만 아니라 편집에 있어 부가적인 시간이 요구되며, 다른 뉴스에 주어질 지면을 반론에 할애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따른다고 보았다.

이처럼 토닐로 사건으로 인한 인쇄매체 결정은 차후에 방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송의 경우 토닐로 사건이 발생하기 5년 전인 1969년 레드 라이온 사건(Red Lion v. FCC)에서 방송과 인쇄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방송에는 반론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레드 라이온(Red Lio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반론권이 근거하고 있는 ‘공평성 원칙(fairness doctrine)’의 합헌성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결정은 ‘주파수 한정성(spectrum scarcity)’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395 U.S. 367, 389). 즉 방송이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면허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FCC의 공평성 원칙은 방송업자들이 적절한 양의 방송시간을 공적인 중요성이 있는 논의에 할당하고 공적 중요성이 있는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상반되는 견해를 모두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8 FCC2d (1974)). 이러한 공적 중요성의 실천정도를 FCC는 미디어나 지역 지도자들이 특정 이슈에 부여하는 ‘주목’(attention)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적용에 있어 FCC는 개인적인 공격(personal attack), 정치 후보자의 사설을 통한 지원(editorial endorsements), 그리고 정치 캠페인에 있어서의 후보자의 비정치적 광고(non-

-political candidate advertising)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공평성 원칙은, 법제 제315조 ‘공정시간 원칙(equal timerule)’과는 달리,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한 논의의 내용과 방송사가 정치 후보자에 대해 방송하지 않을 권한 등의 부분도 포함한다. 즉 공평성의 원칙은 동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사상들이 전달되었는가의 일반적 의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평성 원칙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결국 1987년 시라큐스 피스 카운슬(Syracuse Peace Council v. FCC) 판결을 통해 공평성 원칙이 폐지된다. 그러나 반론권과 관련하여 ‘개인적 공격’ 조항과 ‘정치적 사실’ 원칙은 공평성 원칙이 폐지된 후(2 FCCR 5063)에도 살아남았다(867 F.2d 654 (1990)). 즉 방송 미디어는 정치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있거나 정치적인 사실에 의한 피해를 보는 경우 이에 대한 반론문을 무료로 방송해야 한다는 것이다(47 CFR, Sec 73.123(1998)).

그럼에도 FCC는 어떠한 방송이 ‘개인적인 공격’이 성립되는지의 범주를 설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쟁점에 대한 반대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공격 또는 무능력의 지적 등은 개인적인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Simmons, 1978, p.86). 또한 ① 외국인 집단이나 공인에 속하는 외국인, ②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정치 후보자에 의한 언사에서 발생한 개인적 공격, ③ 순수한 뉴스 보도, 순수한 인터뷰, ④ 즉흥적인 뉴스 이벤트의 취재, 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담겨있는 분석이나 비판 등의 경우 ‘개인적 공격’ 조항과 ‘정치적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으로 중요한 논란이 될 만

“미국 법원은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반론권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다. 즉 반론권을 인정하는 많은 국가들의 경우 국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 쟁점을 방송할 때 방송하는 동안 진실로 개인적 공격이 발생하였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FCC의 범주 설정은 불명확하였다(Bree Walker Lampley, 7FCCR 1385 (1992)).

좀 더 구체적으로 FCC는 방송사업자가 개인적 공격에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정치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또는 상대 후보를 지원하거나 하는 정치사실에 대해서 반론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47 CFR, Sec 73.1093 (1998)). 자격이 되는 후보나 그 상대자의 경우 반론요청이 있으면 사실이나 간지 24시간 이내에 반론방송을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단지 정치적 사실이 방송사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시각을 대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정치사실 원칙은 방송국을 대표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닌 정치 평론가들의 사실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5 FCCR 466 (1990)). 방송사는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은 사람이나 정치 후보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공격이나 승인의 방송을 녹화한 테이프나 원고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비용부담 없이 적절한 반론의 기회를 허용해야 했다(47 CFR, Sec 73.1930 (1998)).

이처럼 미국 법체계가 점차 확립되어 가면서 반론권은 아주 명목적으로는 살아남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미국의 경우 반론권 청구와 관련된 법원 판례는 없었다. 그나마 방송에 한하여 일정부분 명목만을 유지

해 오던 것이 2000년 이후에 들어서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는 폐지된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반론권 적용은 다양한 이유로 이를 허용되지 않으며 미네소타대학의 실하연구소는 반론권 도입을 거부할 것을 유럽의회에 건의한 바 있다(Silha Center, 2003).

물론 최근까지도 여러 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론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한다. 배런(2007)은 반론권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새로운 권리가 되어야 하며 마이에미 헤럴드 원칙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채피(Chaffee, 1965)는 명예훼손법의 대안으로서의 반론권의 필요성을, 그리고 길모어(Gillmor, 1992)는 언론의 오만함을 시정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론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 법원은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반론권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최근 콤키펀트, AT&T 같은 ISP를 규제할 권한이 FCC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Washington Post, 2010년 4월 17일자). 이는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수정헌법 제1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반론권 적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엄규호(Yooum, 2008)는 언론자유를 둘러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간파한다. 즉 반론권을 인정하는 많은 국가들의 경우 국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Ⅲ. 결론 및 논의



명예훼손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것이 실제로 실행되어지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명예훼손법의 내용과 실제 적용방식은 국가별 로그 사회적 특성에 근거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약 33개국에서 수용되고 있는 반론권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프

(표) 국가별 명예훼손법 특성비교

쟁점	국가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한국
면책사유로서의 '진실성' 여부	○	×	○	○	○
암시를 통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	○	○	○	×	○
기업의 명예훼손 소송가능성 여부	○	○	○	○	○
상품명예훼손 가능성	×	○	○	×	○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	×	×	×	○
공인에 대한 과중 입증책임 여부	×	×	○	×	×
면책사유로서의 '공익성' 적용가능성	○	○	○	○	○
공적 관심사로서의 기업 보도 인식 가능성	×	불분명	○	○	○
공정한 논평 또는 의견의 면책사유 여부	○	○	○	○	○
반론권 청구를 위한 법조항 여부	○	×	×	×	○
정부문서(공문서)에 대한 접근 특권	○	○	○	×	×
통신사 면책사유 인정 여부	○	×	○	×	×
법정모독죄 여부	○	○	×	×	○
사전검열의 금지법조항 여부	○	○	×	○	○
사생활권 인정 여부	○	○	○	○	○
명예훼손법의 인터넷 적용 여부	○	○	○	○	○

* 출처: Gasser, J(ed.) (2010), p.430에서 재구성.

랑스, 일본 그리고 미국의 명예훼손법과 반론권에 대한 탐색의 결과 비록 각국들이 개인의 명예와 언론사유의 이익에 비교형량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비슷하나, 이를 실제로 행사하는 방식은 각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Glasser Jr., 2010).

첫째, 미국과 달리, 많은 국가들은 기사의 내용이 오류라고 판단하는 경우 언론에게 진실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뉴스의 정확성을 속보성에 우선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으며 원고가 공인인 경우 사인보다 더욱 높은 입증책임을 요구한다.

둘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당사자에게 기사와 관련

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즉 뉴스의 가장 명확하고 기본적인 요소가 '공정성'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공익성이 강한 논의에는 공정성을 강요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절대적인 면책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도의 내용이 단순히 진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도 행위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공익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으로 그 결정은 대개 수정헌법 제1조의 "사상의 자유 시장" 원리에 순응한다.

넷째, 어떤 특정문화에서는 악의가 없는 문구가 다른 문화에서는 명예훼손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법의 경우 "해고하다"는 표현이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적인 것

“다양한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균형지우는데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판단의 모습을 내포한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를 모두 중요시하지만, 이를 균형 지우는 방식은 각 사회의 사회적 법적근간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 아니며 직장에서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거의 대부분 누군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고되기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표현은 직장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적어도 무능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다섯째,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식이 국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명예훼손은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비록 아주 간혹 일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언론인들에 대한 처벌이 유효하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은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인식되지 않지만 형사적 처벌은 갈수록 줄어들어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형사소추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섯째, 반론권을 개인적인 피해의 구제양식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각 국가들은 유사한 시각을 갖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프랑스의 경우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권은 공직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사실적 주장과의견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약하다. 인터넷에서의 반론권의 경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주요국의 분쟁해결과 관련된 여러 특징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앞의 표와 같다.

결론적으로,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사회에서 선호하는 구제수단이 잘못된 언론을 징벌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에 따라서 다른 구제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은 이 논문의 가정인 ‘명예 훼손법은 특정한 사회의 문화적 구조를 반영한다’는 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균형지우는데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판단의 모습을 내포한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를 모두 중요시하지만, 이를 균형 지우는 방식은 각 사회의 사회적 법적 근간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각국의 사례들은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상우 (2010).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반론권 적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영 (1999). 반론권이란 무엇인가? 『방송문화』, 2222 (12월), 38~41.
- 박용상 (1981).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 『언론중재』, 1, 18~25.
- 박운희 (1995a). 독일의 반론권 (I). 『언론중재』, 15, 40~57.
- 박운희 (1995b). 프랑스의 반론권. 『언론중재』, 14, 47~70.
- 박중호 (2000). 독일에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중재』, 74, 49~60.
- 박진우 (2007). 프랑스의 언론법제: “언론자유와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105, 52~64.
- 앤서니 루이스 (2010) (박지웅 · 이지은 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서울: 긴장.
- 이재진 (2009). 『인터넷언론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재진 (2006). 『언론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팽원순 (1985).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법문사.
- 한국언론연구원 (1995). 『세계언론법(상, 하)』.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한영학 (2002). 반론권에 관한 연구: 일본에 있어서의 반론권의 재구축을 위하여. 일본상지대학박사학위 논문.
- Beer, L. W. (ed.) (1972). *Freedom of expression in Japan: A study in comparative law, politics, and society*.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Ltd.
- Bliņ, H, et al. (1982). *Traite du droit de la press (Old law of the press)*. Paris: Library Techniques.
- Braithwaite, N. (ed.) (1995). *The international libel handbook*. Boston: Butterworth-Hainemann.
- Calvey, M. J. et al. (1987). “Foreign Defamation Law.” in Kaufman, H.(ed.), *LDRC(Libel Law Resource Center) 50 state survey 1987: Current developments in media libel and invasion of privacy law*. New York: Libel Defense Resources Center.
- Danziger, C. (1986). The right of repl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l Law and Politics*, 19, 171-201.
- Errera, R. (1985). Press law in France, in Lahav, P. (ed). *Press law in modern democracies*. New York: Longman.
- Glasser, C. J. (ed) (2010). *International libel and privacy handbook*. New York: Bloomberg Press.
- Goodchild, S. (1986). Media counteractions: Restoring the balancing to modern libel law. *Georgia Law Journal*, 75, 313-359.
- Haley, J. O. (ed.) (1988). *Law and society in contemporary Japan: American Perspectives*. Dubuque, IA: Kendall and Hunt Publishing Co.
- Horibe, M. (1985). Press law in Japan, in Lahav, P. *Press law in modern democracies: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Longman.
- Kalvin, H. (1964). The New York Times case: And on “The central meaning of the First Amendment. *Supreme Court Review*, 1964, 191-221.
- Karpen, U. (1993). Legal protection of individuals against encroachments of media in particular defamation—The case of Germany. *Journal of Media Law and Practice*, 14, 57-79.
- Kohl, H. (1985). Press law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Lahav, P. *Press law in modern democracy: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Longman.
- Kunstadt, R. M. (1980). *The protection of personal and commercial reputation*. Deerfield Beach: Verlag Chemie.
- Lee, J. (1998). Freedom of the press and right of reply under the contemporary Korean libel laws: A comparative analysis. *UCLA Pacific Basin Law Review*, 16(2), 155-197.
- Lee, J. (2008). Right of reply. In Wolfgang Donsbach(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vol. X (pp. 4411~4415). Boston: Blackwell Publishing Co.
- Löffler, M., Heribert, G. & Heribert, G. (1974). *Das gegendarstellungsrecht in Europa: Möglichkeiten der harmonisierung (The right of reply in Europe: Possibilities of Harmonization)*. Munich: C.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 Schauer, F. (1980). Social foundations of the law of defamation: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Media Law and Practice*, 1, 3-23.
- Schwarz, U. (1966). *Press law for our times: The example of the German legislation*. Zurich: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 Shiffrin, S. (1994). The politics of the mass media and the free speech principle. *Indiana Law Journal*, 69, 662-697.
- Silha Center of University of Minnesota (2003). *Comments of the Silha Center for the study of media ethics and law*.
- Simmons, S. J. (1978). *The fairness doctrine and the media*. New York: The Free Press.
- Smith, E. M. (1993). Reporting the truth and setting the record straight: An analysis of U.S. and Japanese libel laws. *Michigan Journal of Int'l Law*, 14, 871-903.
- Tanaka, H(ed.) (1988). *The Japanese legal system: Introductory cases and materials*.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 Terrou, F. T. (1951). *Legislation for press, film and radio*. Paris: UNESCO.
- Thwaite, G. J. & Brehm, W. (1994). German privacy and defamation law: The right to publish in the shadow of the right to human dignity.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 8, 335-362.
- Vid, D. W. & Macperson, L. (1996). Anglizing defamation law in the European Union. *Virginia Journal of Int'l Law*, 36, 933-998.
- Ward, A. & Redmond-Cooper, R. (1983). The right of reply in England,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edia Law and Practice*, 4, 205-227.
- Yamanaka, H. et al. (eds.) (1986). *Japanese communication studies of the 1970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Youm, K. (2008). The right of reply and freedom of press: An international and cooperative perspectiv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6, 1017-1065.
- Youm, K. (1995). U.S. media and libel law: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Gazette*, 55, 185-205.
- Youm, K. (1990). Libel laws and freedom of the press: South Korea and Japan reexamined. *Boston University Int'l Journal*, 8, 55-83.

전문가들이 바라본 언론조정·중재제도 30년

김창숙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언론학 박사

I. 서론



2011년은 우리나라에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1981년에 도입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 환경의 변화와 인격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성장에 발맞추어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대체적 언론분쟁해결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고, 근거 법률이 된 언론기본법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인식 또한 좋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중재제도가 운영되면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재판을 하기 어려웠던 개인이나 단체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게 되고, 언론사들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언론중재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갔다. 이런 인식의 증대로 인해 1987년 언론기본법은 폐지되었지만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언론중재제도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던 중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단일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05년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이런 역사적 전개를 봤을 때,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인격권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의 오랜 숙고의 결과이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언론보도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발전해 왔다.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를 넘어 언론사닷컴, IPTV, 포털사이트를 언론조정·중재 대상매체에 포함시킨 것은 이들 매체들이 언론보도의 생산과 확산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새로운 언론환경변화를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의 변화가 사회적 요구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해도 개정을 둘러싸고 형성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더구나 언론중재제도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이고, 다른 국가들도 새로운 언론환경에 맞는 법제들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할만한 국내외 법률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도 법 자체의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도출되곤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영 30년을 맞이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수준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소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향후에 언론중재법 개정 시 주요하게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2009년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졌다. 2005년과 2009년 당시 사회적으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들이 2009년 개정안에서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정착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우리는 앞으로도 한참동안 겪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2005년과 2009년 언론 중재법의 주요 내용과 그것을 둘러싼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주요 쟁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선 2005년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첫째,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획기적인 질적 변화로서 실질적인 '중재' 기능이 도입되었다. 물론 2005년 이전에도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자와 언론사사이의 분쟁을 언론중재위가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당사자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 하는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언론중재법 24조 ①에서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5조 ①에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명시함으로써 '중재' 기능이 도입되어 진정한 의미의 언론중재시대가 도래하였다.

둘째, 피해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되었던 것도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였다. 손해배상을 언론조정·중재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날카롭게 대립되기도 하였다. 찬성론 입장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반대측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언론보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손해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과실상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심리기간(최장 21일)과 심리 방식에 있어 제한이 있는 중재부에서 해결하기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었다(양삼승, 2005, p. 7).

또한, 윤경(2005, p. 31)은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의 경우 정정보도청구처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지,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당해 업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

"2009년 개정안이 2005년 단일법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한 것처럼 현재의 언론중재법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지속적으로 법을 정제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정정보도청구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별도의 구성요건이나 청구권자의 범위를 갖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법원(法源)은 언론중재법 제4절(소송) 제30조(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민법에 근거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다고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셋째, 인터넷 신문이 언론조정·중재 대상매체에 포함됨으로써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뉴미디어가 언론조정·중재제도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불명확하고 미비한 법규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면서 파생되는 법체계의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삭제 및 반박제재청구제도와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제도가 법체계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상호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황성기, 2005, pp. 7-8). 또한, 인터넷 신문은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인터넷 방송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논리의 부재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넷째,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반론보도의 신청기간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언론중재법 제14

조①, 추후보도 역시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언론보도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를 3개월로 늘린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많이 제공한 것이다.

다섯째, 언론중재법 제32조 ①에서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서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여 종전보다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나(제32조 ②), 2009년 개정안에서 이 내용은 폐지되었다.

한편, 2009년에는 종전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이 실시되었다(김명전, 2010, p. 481).

개정안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직접 언론보도를 생산하지 않고 매개만 하는 포털사이트를 대상 매체에 포함한 것이었다. 기존에는 ‘언론사의 언론보도’에 대해 조정·중재를 했던 것을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는 기존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미디어이기 때문에 법 규정 마련이나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이 존재한다. 우선 포털사이트는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와 달리 기사제공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전달받아 뉴스를 내보내는 매개체이므로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뉴스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또한, 기사제공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매개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여 규격화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기존 매체들이 시공간적인 제약 가진 반면 포털사이트는 무한정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선형적인 구조의 기존 매스 미디어와는 달리 하이퍼 텍스트 구조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매체에 적용했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방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과 법규정상 미비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뉴스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나(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구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여상원(2009)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다는 알림문구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실행하지 않아도 벌칙이나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즉, 이행과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불이행시 규정이 없어 불이행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사의 삭제 등의 조치를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언론중재법에는 기사삭제권이 피해구제방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지적되기도 한다. 언론중재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2009년 개정안이 2005년 단일법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한 것처럼 현재의 언론중재법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지속적으로 법을 정제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적인 분야인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면대면 인터뷰(전문가(a)와(e)와 서면 인터뷰(전문가(b), (c), (d))를 병행하였다. 면대면 인터뷰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구술로 응답한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서면 인터뷰는 사전 허락을 구한 뒤,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발송한 후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여 2주일 후 이메일로 되돌려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그동안의 경력과 연구실적, 저서 등을 고려해서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들로 선정하였으며, 법조인, 법학교수, 언론학교수를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대상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a)
-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b)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c)
-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d)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e)

Ⅳ.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인터뷰의 질문은 크게 6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언론조정·중재제도 30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② 언론조정·중재의 피해구제방법(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에 대한 의견, ③ 시정권고에 대한 의견, ④ 포털사이트에 대한 의견, ⑤ 향후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견, ⑥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 시 주요 개선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질문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영 30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우선 언론조정·중재제도가 30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거두었던 성과 혹은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981년 출범 당시 정치적 배정이나 근거 법률이 되었던 언론기본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으나 30년간의 노력으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언론이 덕성스러워지고 성숙해지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과정에 참여해 본 언론인들의 97.7%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63.5%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언론중재위원회, 2010).

80년 언론기본법이 근거 법률이 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생겨났는데, 언론기본법 자체는 언론통제법의 근거 법률이었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명예를 안고 있는 법률이다.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언론의 자유와는 배치되는 명예를 안고 출발했었다. 하지만 30년 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을 거치고, 연구 기능과 좋은 인적구성을 갖추고 노력을 한 결과,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기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언론사 측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맡겼을 때 말이 더 잘 통하는 기구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30년을 지나오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진명예를 이제는 벗었다고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갖게 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체적인 노력과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한다.(a)

초기의 언론중재위원회는 태생 때부터 정치적인 안목에서 오해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백안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일반적인 평가는 성숙한 언론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것이 언론

계 내외에서 받는 평가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부정적인 측면의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백안시했는데 지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를 향한”, 즉 덕성스런 언론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한다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30년간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e)

중립적 기관으로 그 중요성과 존재감을 언론사와 피해자 양측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d)

또한, 언론중재제도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격권 침해를 입은 개인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었다. 특히, 2005년 단일법 제정이나 2009년 개정 등 법률적 개선을 통해 피해배상제도가 강화되고,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하여 제도의 외형을 완성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되어 30년이 흐르면서 제4부의 권력으로 부를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상당한 보장이 이루어졌다. (c)

언론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제도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피해보상제도가 강화되는 등 점에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d)

중재위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 같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매년 피해구제 청구건수가 늘고 있고, 구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가 단일법을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매체가 자꾸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체해야겠다는 염원들이 모여져 2005년 단일법 제정, 2009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제도의 테두리는 완성됐다는 점에서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a)

한편, 그동안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조정·중재 환경의 열악성, 중재위원들의 전문성 부재,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과도기를 넘어 좋은 커뮤니케이션 풍토로 정착되기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전체적인 언론 풍토를 바꾸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언론 조정·중재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분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

중재위원들의 전문성이 들쭉날쭉하다. 선발과정에 투명성과 전문성 검증이 없다. 신방과 교수라 하더라도 저널리즘 전공을 우선해야 한다. 지역별, 중재부별 편차도 큰 편이고, 굳이 여성대표, 시민단체 대표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다. 상대적으로 전직 언론인들이 너무 많은 편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중재위원을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은 전문성과 시명감을 가진 위원들마저 그만두게 하는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포털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너무 앞서가는 힘들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d)

총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긍정적이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으로 야기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b)

최근에 와서 소셜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예전에는 매스였다면 지금은 point to point로 바뀌고 있어서 중재가 필요한 양상이나 중재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외형적 성장의 바탕을 마련했다면 지금부터는 속살을 다지는 상숙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장에서 상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내가 가지는 30년에 대한 평가다.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이나 양태가 달라져 소셜

미디어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촉발시키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이 사회 통합과 공동선 구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은 소셜미디어 환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언론자유를 향유하는 동시에 언론이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언론중재위원회가 절차적인 부분보다 전체적인 언론 풍토가 바뀔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2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피해구제방법에 대한 의견

현재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피해구제 방법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4가지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 및 규정의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에 대한 의견은 많지 않았으나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남발할 경우 자칫 언론의 자율성 침해 및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반면, 반론보도는 저널리즘의 가치인 공정성과 균형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정정보도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더 나아가 전문가(b)는 프랑스의 예를 들며 반론보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무기대등의 원칙면에서 '의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전문가(c)는 반론보도나 추후보도가 결국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차원에서 구제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반론이나 추후보도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해구제방법은 현 상태로는 상당히 적정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정보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처분 절차에 의한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위험결정도 있었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해서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반론에 치중한 반론보도를 조금 더 중시하는 쪽으로 피해구제 방법이 이끌어져 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a)

반론보도의 경우 사실적 진술에 대한 반론보도만 허용됨으로 인하여 의견 진술에 대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프랑스처럼 의견에 대한 반론권도 실제법으로 규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언론이란 '사실'과 '사실'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언론에 대해 '사실'과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상 '무기대등'의 차원에서 '사실'에 대한 반론 이외에 '의견'에 대한 반론도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b)

정정보도의 경우에 정말로 그만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할 수 있었지만 뉴스라는 것이 순수한 사실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에 기사가 될 만한 것을 택하는 형식에 의해 기사가 만들어지므로 이미 평가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사실과의 의견을 완벽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명명백백한 것 외에 정정보도를 자꾸 쓰게 되면 위축 효과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걱정스럽다.¹⁾ 그래서 정정보도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고 엄격한 기제를 통해서 정정보도로 인한 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저널리즘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반론보도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일방의 입장을 쪽 제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이에 대해, 한편' 하면서 반대편 입장은 조금 싸늘한 경우가

1) '사실보도' 혹은 '사실적 주장'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의 함축적인 범위가 매우 넓어 '사실'이나 '진실'을 평가하는 것'은 각분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과학에서의 진실은 검증만 되면 되고, 법에서의 진실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저널리즘은 특성상 대체로 '당당하게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사실'을 진실(truth)로 본다. 완벽하게 입증되고 확인된 것만 가지고 기사를 쓰려면 저널리즘이 가져야 하는 시의성과 적절성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완벽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사실'을 기사화할 수 있어야 사회적 담론도 이끌어내고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밀에 감춰진 것을 공개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제도에서 법리적인 안목에서 증거가 있느냐 혹은 확인했느냐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하더라도 언론의 자율권이나 자조권이 광장히 위축될 수 있을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에너지를 환경이 되는 언론의 자유의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전문가 (a)의 보충 설명

“반론보도나 추후보도가 결국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 라면 실질적인 차원에서 구제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반론이나 추후보도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많이 있다. 즉, 기사의톤을 정해놓고 구색 맞추기식인데, 반대편의 이야기를 확대하고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반론보도를 언론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저널리즘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야만 공정성이나 균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오히려 덕성스런 언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론보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반론보도의 크기, 위치, 시기 등을 원기사 크기만큼은 아니더라도 눈에 띄게 하여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후보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사건의 발생은 크게 보도하고 종결은 조그맣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추후보도가 그 사람의 훼손된 행복추구권이나 개인권을 회복시키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 언론이 할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추후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추후보도의 양식에 대해서는 요식행위나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중재위에서도 조사를 통해 어떤 방식의 피해 구제가 실제로 효과적인가를 파악한 후에 기이도인 등을 만들면 어떨겠나 생각한다. 기령 오늘 발생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면, 사람들은 노리에서 모두 지워졌을 지 모르지만, 본인은 몇 년 동안 그 피해를 계속 당한 상태인데 그게 한두 줄의 기사로 구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구제가 목적이 라면 실제적인 구제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크기, 시기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e)

손해배상제도는 2005년에 새롭게 피해구제 방법에 포함되었다.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실효성이나 법 해석문제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인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구제 방법보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

문가(a), (b), (c), (d)는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증액하거나(b) 손해배상액의 산출의 어려움을 개선하거나(d),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제도를 개선할 것(c) 등을 언급하였다. 반면 전문가(e)는 언론보도와 손해배상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실효성도 많지 않아 손해배상은 민사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 치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가 피해보상에 이르기에는 적은 금액이라는 것, 그로 인하여 3배 배상제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와 관련된 것인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언론중재법이 일반불법행위법(민법 제750조 이하)에 대한 특별불법행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3배 배상제도의 선도적 도입이 다른 불법행위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현재와 같은 언론환경에서 과거보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b)

‘손해배상’이란 용어에는 강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만 있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긴 했다. 언론사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다른 형태의 구제방법도 있었지만 보상문제가 따라 나오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 권한을 2005년도에 집어넣은 것은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다. (a)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 인격권의 침해,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배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이 언론기관을 상대로 손해를 보상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손해를 손쉽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제도의 보완과 함께 다양한 피해구제방

성과는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현실화로 피해자들의 편익과 실질적 불만해소에 큰 도움을 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개선사항이라면, 손해배상제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계산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손해배상제도는 보다 활성화,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d)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처음 도입 시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언론보도가 그 사람의 재산상에 피해를 줬는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기사로 인해 회사가 망했다 혹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 에 대해 액수를 정하는 것이 민만치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단 언론위일만 많아지고 실효성도 없을 것 같다. 상징적으로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오히려 언론보도나 추후 보도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고 생각한다. (e)

3. 시정권고에 대한 의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32조 ①). 이와 관련하여 시정권고가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운영 및 규정에서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²⁾.

이에 대해 전문가(e)는 시정권고가 언론사에게 일종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전문가(c)와(d)는 시정권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c)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내용의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던 종래의 규정이 삭제된 것이 개인의 언론피해에 대한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d) 역시 시정권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언론들이 시정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언론사에게 시정권고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여 시정권고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전부터 시정권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시정권고는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느슨하고, 수용여부를 언론이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사람의 경우 시정권고로 인해 간접적으로나마 피해구제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언론에게는 '이런 보도는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부지불식 중에 들어가서 윤리기준, 행동양식이 되어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권고를 너무 유목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시정권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주제(theme),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언론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그것을 집중적으로 시정권고한다면 언론에게 스스로를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정권고 여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시정권고를 하는가에 대한 논리나 근거를 함께 제시해줌으로써 언론인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자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이 보다 구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e)

개정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

2) 전문가(a)는 응답하지 않음

론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내용의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던 종래의 규정(언론중재법 제22조제2항)을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개인의 언론피해에 대한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 시정권고가 있었다 해도 실효성있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보완·강화되어야 할 사항이다. (c)

시정권고는 그야말로 권고사항이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너무 신중하게 처리하고 상대적으로 언론사들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시정권고의 의미가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언론사들은 이런 시정권고에 대해 별 부담이나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서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이를 보도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 크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해당 언론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의미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고뇌에 찬 시정권고가 간단하게 무시되는 현실에서 그것이 무슨 효용성을 갖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d)

한편, 전문가(b)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명한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가 함으로써 처분발령청이 재심을 하게 되는 절차적 측면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언론중재법상의 시정권고는 그 명칭이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로서는 권리의무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중재위가 발명한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언론중재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역시 언론중재위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발령청이 재심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 절차적 측면에서 우월적 소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물론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하고, 재심은 언론중재위에서 함으로써 조직적으로는 차별을 둘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정권고 자체가 언

론중재위원장 이름으로 발령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정권고소 위원회는 언론중재위 내부의 조직법적 문제에 불과하므로 처분발령청에 의한 재심 판단으로 인한 절차법적 하자는 그대로 남는 것으로 보인다. (b)

4. 포털사이트에 대한 의견

2009년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서 포털사이트가 새롭게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포털을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a)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고 포털사이트가 가판대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편집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의 책임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2009년 4월에 포털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또한 최근에는 미국처럼 계약에 기반하여 언론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b)와(d)도 포털이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과 영향력을 강조하며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타당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전문가(c)는 포털사이트가 표현의 자유 확대나 정보공유 등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기다리되, 반론권 등의 피해구제 방법이나 교육을 통해서 포털사이트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포털사이트가 언론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는 무의미하다. 그 이유는 지금은 크게 신문과 방송으로 나뉘서 매체별로 규제를 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형태인데, 포털사이트는 언론형성 기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취재를 해서 뉴스를 생산해내는 곳은 아니다. 유통을 하는 곳, 이를테면 가판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가판대 역할을 하면서 어떤 양태를 보였느냐 하면, 제목에 손을 대고 기사를 취사선택했다. 메인에 무엇을 내보낼지

를 취사선택을 하고 기능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언론이나 아니냐하는 논쟁이 있었지만 2009년 4월에 포털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선고가 되고 나서 포털사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처해왔다. 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뉴스캐스터 형태로 무색투명하게 자신들은 가판대 역할만 하겠다고 해서 유통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다. 기능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안지느냐는 법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을 대상의 측면에서 언론이나 아니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 OSP(Online Service Provider)³⁾가 책임을 지느냐 안지느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가 notice and take down(인지 후 삭제조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서 법이 강제된 규칙이 정한 역할만 하면 다 면책 된다. 그런 규정을 정하고 움직이는 곳에서는 포털사업자가 언론이나 아니냐는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이다. 그리고 또 우리와 상황이 다른 것은 우리는 계약에 의존하지 않거나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따지지 않고, 우선은 유통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일단 뉴스캐스터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기에 비하면 미국 등은 계약을 맺어 언론사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포털사업자 문제는 2009년 4월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영업형태, 게재나 게시행태가 많이 바뀐으로써 정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새로운 분쟁행태가 생길지는 감히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a)

개인적으로 2007년부터 포털을 전통적 개념으로서의 언론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언론으로 포섭함으로써 언론중재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비록 포털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능적 측면에서의 언론성을 인정하고 포털을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b)

두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만 시지탄(晩時之勤)⁴⁾이 있다. 현재 포털은 언론사들보다 더 많은 광고단기를 부르며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뉴스제작 언론사보다 덜한 위치에 있다. (d)

포털이 중재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증가하여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액세스권, 정보공유 등이 증가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누군가 “수단이나 기회가 확대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아주 저질의 공약수적인 메시지가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요즘 그런 것 같다. 굉장히 선정적이고 철라적이고 소비적인 것들이 범람하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나 채널의 양태들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여과기능도 없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포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피상적으로 보기에 포털 종사자들이 무엇이 법에 저촉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각 신문의 것을 퍼오기도 하고, 언론사닷컴은 자신들의 신문 중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퍼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포털도 조회수, 방문자수, 클릭수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꽤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신문이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성을 사용해도 댓글에서 실명이나 나와 버린다. 이렇게 기존 미디어에서 애를 써서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주려고 애를 써도 포털에서 깨질 수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별로 없다. 그렇다고 포털에게 아예라 자재라 통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일단 이용자들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제 자리를 찾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 자리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포털사이트에게 여기까지는 안된다 는 넓은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백한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다든지 반론권을 보장해준다든지, 포털

3)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라고도 함

4) 시기에 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포털사이트가 표현의 자유 확대나 정보공유 등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기다리되, 반론권 등의 피해구제 방법이나 교육을 통해서 포털사이트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사이트의 운영자를 통해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거르고 선별해서 정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유용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지. 초기니까 규율(discipline)을 가르쳐야 한다. (c)

포털사이트와 관련된 언론조정·중재제도나 규정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전문가 (c)는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포털사이트에 대한 초기 대응을 좀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삭제되지 않는 인터넷 뉴스 때문에 죄값을 치른 피해자가 이중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인터넷 뉴스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c)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정과 제도 마련을, 전문가 (d)는 포털에 대해 견제, 감시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적 책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전문가 (b)는 타법률과의 관계 측면에서 포털사이트가 언론중재법상 규율의 대상임과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중 규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삭제나 반론보도와 같은 초기의 대응방안을 조금 엄중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엄격하고 엄정해야지 교육제도로써 정착이 되므로 느슨하게 해서 안되고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엄격하게 하고, 기사를 삭제, 반론,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인터넷에 올라가면 삭제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설혹 어떤 사

람이 잘못을 해서 응징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관련 기사가 또 나와서 이중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견 언급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재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주는 것이지만, 징벌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보다는 예방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가려면 대가를 치뤄야 하니까 좀 인내를 가지고 참자 하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의도일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이 제대로 행사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포털사이트에 대한 것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동시에 법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본다. (e)

뉴미디어 시대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방송과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보다 그 숫자나 접근성, 전파력에서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 방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포털사이트는 그 영향력과 전파력에서는 강력하지만 콘텐츠의 사실과 진실성 등 검증 기능은 취약하다. 언론중재법의 규정은 최소한의 피해구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당연히 효과는 있지만, 매체의 확산 추세를 비춰볼 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정과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d)

포털의 영향력과 취사선택하는 편집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개 언론사와 같거나 더한 법적 책임감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포털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인터넷 미디어 강자로 군림하는 포털에 대해 견제, 감시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d)

포털은 언론중재법상 규율의 대상임과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중 규제를 받을 염려가 있는 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개정 방향 또는 개정 이전에 실무적 측면에서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b)

5.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의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 여부에 포함 여부

언론중재법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인 방송매체와 신문매체 외에 언론사닷컴, IPTV, 포털사이트 등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의 형식적인 매체 구분에서 벗어나 매체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격권 침해를 보다 광범위하게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새롭게 등장할 미디어나 이미 많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생산하고 유통한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매체도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느냐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d)는 소셜미디어가 향후 기존 미디어를 대체할 만큼 영향력과 전파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함시킬 때에는 새로운 미디어의 ① 의도성 ② 범위만 정도 여부 ③ 클릭수 혹은 전파력/영향력 ④ 공익성 및 공공성 ⑤ 사후 조치의 책임성 ⑥ 피해자에 대한 배려 정도 등 엄격한 기준에 두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전문가(b)는 편집기능(editorial function)의 여부를 언론이나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따라서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가 편집기능을 행사하지 않을 시에는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포함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향후 소셜미디어는 기성미디어 못지않은 영향력과 전파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기성미디어를 대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언론중재법도 적응하는 차원에서 이를 법체제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기성언론과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요인은 1) 의도성 2) 범위만 정도 여부 3) 클릭수 혹은 전파력/영향력 4) 공익성 및 공공성 5) 사후 조치의 책임성 6) 피해자에 대한 배려 정도 등(d)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언론으로 사고할지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편집기능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⁵⁾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사회적 영향력(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로 인한 인격권 침해)을 언론중재법으로 규율하는데 있어서 언론학적, 법학적 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다만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으로, 또는 준언론으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편집기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편집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에 규정하는 것은 자칫 언론이 아닌 것까지도 언론으로 개념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는 언론중재법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구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기능이 없음에도 언론중재법으로 포섭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리 구제가 언론중재법에 비해 길어질 수도 있는 등 언론중재법에 비해 미비한 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제항과 같은

5) 포털이 언론중재법(형식적으로는 언론이 아니지만 언론중재법에 규정됨으로써)에 실질적으로는 준언론으로 개념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포털이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것과 관련해서 그 이면에는 사회적 측면(포털의 영향력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언론학적 관점 역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관점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포털이 언론으로 규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통적 언론 개념(뉴스를 '취재', '편집', '배포'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만 언론으로 사고하던)에서 벗어나 슈메이커(Pamera Shoemaker)의 게이트 키퍼링 확장 모델을 응용하여(전통적 언론에서의 사전적/폐쇄적 게이트 키퍼링만 아니라) 포털과 같이 사후적이고 느슨한 게이트 키퍼링까지 언론으로 포괄하면서 언론의 본질을 편집(Edit)으로 보았다더라면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픈코(Open)이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편집기능과도 일관되지 않나 싶다 - 전문가(b)의 추가 설명.

“기본적으로 게마인사프트적인 성격이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규제보다는 사람들이 공동성이나 국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구를 통해 기여해야 한다”

내용(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언론이 아닌 정보통신망서비스의 경우에도 이용자들(users)에게 경고적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b)

한편, 전문가(a)는 아직까지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에 언론 혹은 언론기능이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을 유보하였다. 다만, 현재의 트위터와 같이 자신들의 짧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가(e)는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가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나 정부의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게마인사프트적인 성격이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규제보다는 사람들이 공동성이나 국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구를 통해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프랑스 혁명 때도 지금의 SNS의 형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단계에 자신의 찝막한 의사를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리면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보고 그 사람한테 찬성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곤 했다. 지금 중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규제 대상으로 넣을지 말지 하는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언론이나 줄기를 이루는 언론이나 언론기능을 하는 데 들어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현재 단계로서는 자기의 찝막한 생각을 퍼트리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실이나 허위나 여부를 놓고 따지기 전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a)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가 기존 매체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걸 정보사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보면 동호인이나 전문가들이 보내는 좋은 메시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 또한 많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위키리스크를 통해 국가 기밀이 새어나간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큰일났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곤혹을 치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정부는 까리끼리가 아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고, 비평받는 바탕 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상하이 스캔들을 보더라도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로서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도 모르는 데 있다. 이를 자유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유방임적으로 내버려둬야 그러면 진리가 가인다’는 믿음을 고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를 적당한 선에서 사람들에게 공동선이나 국가 통합을 보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중재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양이 너무 많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개인과 개인, 동호인과 동호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게마인사프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재제도가 그리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도 든다. 그러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에 대해 좀더 지켜보면서, 중재위원회는 소셜미디어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e)

6.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이나 향후 개정시 주요 개선점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이나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시 주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중재위원 운영과 전문성에 대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가(c)는 중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근 중재위원제의 도입과 전문 인력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d)도 중재위원의 연임 횟수를 늘리거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제도 도입, 중재위원 선임의 투명성 등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a)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성숙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좀더 언론을 이해하는 중재위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중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있는 중재위원들이 보다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언론중재법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비상임 중재위원체제에서는 절대적인 인력도 부족하지만 심리의 전문성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근 중재위원제 도입과 전문 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다. 매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SNS의 확산에 따른 개인의 피해범위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d)

언론중재제도는 시대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그 전문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이 기계적으로 2회 임기로 모두 내보내는 식을 지양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제안해본다. ① 임기는 2회에서 3회로 연임을 가능하도록 한다. ② 각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위원들에 대해 전문성과 성실성 등을 심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한다. 이를 향후 연임 여부의 평가지침으로 삼는다. 평가는 어느 조직이나 필요하며 이는 조직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③ 중재위원들의 선임이 좀 더 투명하고 전문성을 우대 쪽으로 강조됐으면 좋겠다. ④ 중재부별로 필수 전문 중재위원들을 배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언론사들로부터 배척당해서도 안되고 피해자들로부터 반발에 직면해서도 곤란하다. (d)

성숙한 언론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 우선 스스로 '중재위원회가 필요 없는 언론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사건에 대해 중재나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각 사건에 대한 피해구제는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전체 언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등을 낼 때 분명하게 언론판결, 신청인, 그리고 피해구제의 변화 등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고서,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언론풍토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중재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걸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재부장을 2년 맡는데, 중재부장이 바뀌면 이전 중재부장이 하던 것과 단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오신 분들의 저널리스트한 안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나치게 법의 잣대로 보게 되면 자칫 언론이 거부감을 가지거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특성과 개인의 법익보호라는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인 중재부장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전문 의식이 있는 사람을 좀더 오랜 동안 하는 게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전문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법적인 측면과 언론적인 측면을 먼저 숙지한 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피해구제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e)

한편, 전문가 (b)는 손해배상액의 증액이나 재심청구 절차와 관련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문가 (a)는 향후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언론중재법상의 절차에 의하면, 이의 신청만으로도 법원에 대한 소제기 효과가 있고, 소가가 2천만 100만원에도 단독 판사가 아니라 합의부에 의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등 절차법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이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라는 언론중재법의 법이념에 충실하고자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사법적 판단을 받게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실정법에 반영된 것으로 현명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절차상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실제법상으로는 앞서 살펴본 손해배상액의 증액 문제를 끝낼 수 있고, 절차상으로는 재심 청구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운영에 대해 말하자면 조정이나 중재가 언론사업자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더욱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b)

30년 동안 참 훌륭하게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기구로 변모를 해야 할지, 어떤 기능을 하면

서 남아있어야 할 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 여러 매체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는 중에 생길 수 있는 피해들이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지목돼서 몹시 고통을 당하는 등의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거기에 관한 사회현상을 가지고 빨리 연구를 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기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계속 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남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a)

V. 결론



이상의 전문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언론조정·중재 제도의 30년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이 없지 않았으나 30년간의 노력으로 이제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정정보도의 경우 ‘사실’에 대한 정의가 저널리즘적 차원과 법적 차원이 다른데, 지나치게 법적으로 엄격한 잣대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언론의 위축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널리즘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반론보도는 사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전달해야 하는 저널리즘적 가치에 부합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피해구제 방법에 손해배상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손해배상액의 적절성, 절차적인 문제, 손해배상액의 산출 기준 등 법적 내용을 보완하거나 명확히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정권고제도가 언론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정권고 내용을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절차적인 측면의 문제점

을 제기하기도 하여, 시정권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포털사이트를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 개정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포털사이트가 언론이 아니냐의 여부보다는 그 기능이나 영향력을 고려해서 포털사이트를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고, 포털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등의 문제들이 언급되어 포털에 대한 규정의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섯째, 포털사이트처럼 향후 다른 뉴미디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언론이 인격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런 매체도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공간인 만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인격권 침해를 일으킨다면 이런 경우는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경우 포함대상을 선별할 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섯째,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중재위원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연임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중재위원에 포함시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적은 수의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단일법 제정과 최근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법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의 미비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롭게 언론중재법에 도입된 손해배상제도나 포털사이트와 관련하여 규정이 없

거나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론중재제도의 피해구제 방법의 효과연구와 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시정 권고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효과적인 정정·반론·추후보도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뉴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정·중재 이후에 피해구제가 어떻게 행해졌고, 실제적인 구제 수준의 피해구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피해구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법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한 듯 하다. 중재위원의 전문성은 비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이용자에 의해서도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다(언론중재위원회, 2010). 그러나 중재위원은 법조계, 법학교수,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전문성이 실제로 부재한 것보다 같은 언론보도라도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데서 오는 오해가 하나의 요인일 수 있을 듯 하다. 어쨌든 중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언론중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된 만큼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재위원의 전문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시에 중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 하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단순히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올바른 언론풍토를 정착하는데 있어 계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향후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지 알 수 없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올바른 언론이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인이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인격권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뉴미디어 상에서의 윤리적인 논의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기회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법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을 보더라도 많은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2005년 단일법 제정으로 언론중재법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내용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법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가면서 내실을 다져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밝히고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최종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라는 보다 큰 비전 안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향후 30년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 김명진 (2010). 『미디어법』, 서울: 박영사.
- 양상승 (20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94, 4-25.
- 언론중재위원회 (2010).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민족조사 보고서.
- 여상원 (2009).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뉴시스 비스 사업자와 기사제공인론사의 책임범위. 『언론중재』, 112, 6-21.
- 윤 경 (2005).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95, 30-41.
- 황성기 (2005).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언론중재』, 95, 4-18.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 좌담

언론조정 · 중재제도 30년 역사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일 자 2011년 3월 7일 11:00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사회자 정준영(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4중재부장)

참석자 한동원(전 언론연구원장)

황덕남(변호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김상우(중앙일보 차장, 신문방송학 박사)

정혜승(Daum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오사와 분고(大澤文護 - 마이니치 신문 한국 지국장)



정준영 사회자

사회자: 올해는 언론중재제도 시행 및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언론중재제도는 시행 초기 언론계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간 언론학자와 법률가 및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언론피해구제제도도로 발전해왔습니다.

30년 동안 성장한 위원회의 현재 모습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는 뜻 깊은 자리를 갖고자 이번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께서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이후 9년간 중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위원회 설립과 제도 정착에 가장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위원회를 지켜봐 오셨으니, 초창기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 등 위원회와 제도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위원회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덕남 변호사께서는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 조정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정 전문가입니다. 법원에서는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상임 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조정위원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만 가능한 중책입니다. 위원회가 성공적인 조정기관이 되기 위해 언론조정·중재제도와 법원조정제도를 비교해 어떤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가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상우 차장님께서서는 중앙일보에서 20여 년 동안 기자로 재직하는 동안 오랜 기간을 사회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언론중재위원회와 제도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바를 허심탄화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에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반론권 적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논문으로 신문방송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인과 피신청인, 중재위원을 심층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와 제도를 연구·분석하셨기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혜승 실장님은 다음(daum)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으로 계십니다. 2009년 8월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포털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었고, 실제 작년에 포털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요 포털사인 다음(daum)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만큼 포털의 입장을 대변해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사와 분고 지국장님은 마이니치 신문 한국 지국장입니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세계 고유한 언론분쟁 해결 제도이므로 자칫 보편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일본에서의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한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 외신기자의 시각에서 위원회와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럼,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론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중재제도, 제5공시절 정부기관에 의한 청구 없어”

한동원: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언론탄압이란 이유로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당시 일부 독소조항 때문에 악법으로 규탄 받던 언론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 반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된 1981년부터 언론기본법이 폐지된 1987년까지의 제5공화국 기간 중 국가기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중재(실제는 '조정')신청이 1건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50~70건의 중재신청이 있었는데 모두가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의 중재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론을 귀찮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중재제도를 언론을 탄압하는 직접적인 방편으로 이용할 생각보다는 언론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

들이 법적인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언론과의 대결을 공공연히 내세웠던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해마다 정부기관이 최저 101건에서 최고 190건의 중재신청을 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황덕남: 제가 변호사로 개업한 1998년 당시에는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강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언론관련 소송이 많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위원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이 2,205건인데 이는 위원회 초창기에 비해 약 50배 증가한 것으로, 단순히 처리 사건수로만 봐도 과거에 비해 위원회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제도가 확고히 정착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회 처리 사건수는 대상 매체수와 비례하여 증가, 사건수 증대를 질적인 성장의 척도로 간주 해선 안 돼”

한동원: 위원회 설립 초기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오늘의 모습을 보면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설립 당시 5~6명이던 사무처 직원이 지금은 70명 정도로 늘었고, 조정·중재신청 처리건수도 초기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사회가 한층 더 다양화되고 매체수도 많아졌으니 자연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처리건수가 초창기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질적인 성장의 척도로 간주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는 연평균 55건 정도의 중재신청이 있었는데, 이때는 언론기본법에 따른 언론통폐합으로 전국에 일간지가 12~15개 밖에 없었으니 중재신청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6·29선언으로

· 1980년대,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의식 낮았으나 언론중재제도 정착되면서 사회적 인식 높아져

· 위원회 처리 사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중재대 상매체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음.

사건수 증대를 위원회의 질적인 성장의 척도로 봐선 안 돼

· 시정권고는 실효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언론사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음. 공개경고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도입 검토 필요



한동원

언론사의 설립요건이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매체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1989년 이후에는 일간지가 120개를 넘었고, 주간지와 월간지도 수없이 생겨나면서 중재신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매체수 증가와 함께 한편으로는 매체는 급격히 늘었으나 자질을 제대로 갖춘 기자가 많이 부족했다는 점도 중재신청 증가에 한몫을 했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였습니다.

2010년도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이 2,205건인데, 종전의 일반매체를 대상으로 한 신청도 약간은 늘었으나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앞으로 새로운 매체가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청사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 중재위원과 조사관의 역할분담 우수 전문성과 성공적 조직운영으로 위상 제고”

사회자: 황덕남 위원님께서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 조정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분쟁의 해결 과정이란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조정센터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황덕남: 처리 사건수의 증대는 조정대상매체의 증가도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운영을 잘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사건의 특성, 분쟁당사자의 성격, 조정자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판결이나 조정 과정에서 이 전부를 판사나 조정위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조인, 학계, 언론계 출신 등 언론 분야 전문가로 중재위원을 구성하고, 조사관 제도를 둬으로써 중재위원은 조사관을 통해 사건이나 분쟁당사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조정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위원은 조정의 3박자 중 2가지를 이미 갖추고 조정자의 역할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성공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전문성과 함께 조사관 제도를 통해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중앙노동위원회를 꼽고 싶습니다. 언론분쟁과 노동분쟁으로 인해 법원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바로 언론중재와 중앙노동위와 같은 해결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신뢰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소송과 비교할 때 효율성 높지만 손해배상 청구로 ‘언론의 위축’ 우려”

사회자: 앞서 한동원 원장님께서 초창기에는 위원회와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언론계의 거부감이 심했다고 하셨는데, 주로 위원회의 피신청인 입장이 되는 언론사와 포털의 입장에서는 현재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상우: 언론사 입장에서도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소송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위원회에 제소되면 언론사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였고 언론사나 기자는 위원회에 거부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제도의 장점이 많이 부각된 덕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원회 제도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제소되면 나중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담당기자는 ‘결백’을 주장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데스크는 중재위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중재가 반론보도문·정정보도문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론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다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짐에 따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규모가 큰 언론사도 그렇지만, 소규모의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론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되므로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조정·중재제도는 효율적인 피해구제 제도이면서 동시에 언론사에 부담을 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포털, 기사 자체에 대한 권한 없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어 절차적 소모 반복”

정혜승: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포털의 파급력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언론조정·중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라 생각하나, 이로 인해 실무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청구건수 중 38.1%가 포털에 대한 청구사건이었습니다. 다음(daum)의 경우 매일 평균 2천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현재 대다수 일반인들은 거의 모든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털에 대한 청구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포털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도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신청인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분쟁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털이 직접 작성한 뉴스가 아니라서 이유로 무책임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포털은 콘텐츠에 대한 권한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정보도 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조정·중재절차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절차적인 소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여 주된 언론사와 합의된 결과물을 포털이 신속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사와분고: 한국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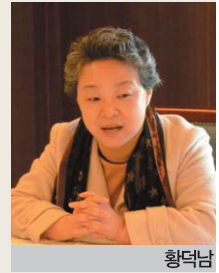
무엇보다 일본 언론사의 가장 큰 고민은 신문, 방송 등 언론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사회적 평가가 있어, 언론사는 독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로 기사 취재 방법의 개선을 통한 언론 전체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 자체적으로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하고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혹은 ‘~라 알려졌다’와 같은 익명을 전제로 한 보도나 모호한 표현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취재 방법이나 기사 작성 방법은 매우 어렵지만,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본 법원,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언론사에 수억 원까지 배상 판결”

사회자: 일본의 경우 언론사 자체적으로 기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에는

· 언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은 조사관을 통해 사건의 특성과 분쟁당사자의 성격을 미리 파악, 분쟁의 해결책 제시라는 조정자의 역할에만 전념할 수 있어 성공적인 조정이 가능



황덕남

· 일반적으로 접근도와 소요시간에 따라 분쟁이 쉽게 해결됨. 언론분쟁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소송에 비해 바람직

·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예방적·자율적분쟁해결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 홍보 강화가 필요함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쟁 해결을 위한 언론사 간 협의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는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는 편인지, 즉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간에 방점을 어디다 두는지, 손해배상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사와분고: 일본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신문협회가 있으나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직접 청구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언론사 자체의 문제, 즉 언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원에서는 정정보도, 사과보도, 손해배상 등에 대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 원까지 명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큰 경우, 이는 기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조직의 문제

로 사회에서 평가하고 있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신문사는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정·중재제도와 같은 사후 피해구제제도 없어 언론사 자체적으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

사회자: 주로 위원회의 피신청인이 되는 언론사와 포털의 입장에서 김상우 차장님과 정혜승 실장님은 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부정적 측면과 양면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사와 분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기에 한국에서는 조정·중재제도와 같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후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먼저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지를 교육시키고 시스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입사한 1980년도의 경우 일본에서는 이미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따라서 신문사에서는 인격권 침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기사에 기자의 실명을 넣기 시작했고, ‘기자의 눈’이란 칼럼에서는 기자의 얼굴 사진까지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기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사내에 ‘열린신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변호사, 자유 저널리스트 등 4명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 고정해두고 매일 신문 기사를 체크하여 기사의 문제점과 외부의 지적을 검토해 신문사 간부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다수 신문사는 이와 유사한 자체 검토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1980년대,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인식 낮아, 언론중재제도 정착되면서 사회적 의식 높아져”

사회자: 일본의 경우, 1980년도에 언론사가 자체 심의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등 이미 언론보도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이 아주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국의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 인식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한동원: 1980년대 초반의 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를 보면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당시에는 기사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사의 인식이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초상권 침해 등 개인의 법익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이 약했고, 언론법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논문을 쓸 수 있는 언론학 교수, 법조인, 언론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언론중재』가 해를 거듭하면서 언론법제에 관한 논문과 자료들을 집적해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언론법제를 연구하는 언론학 교수, 법조인 언론인들이 늘어가면서 각 대학의 언론학과에 언론법제 과정이 개설되기 시작했는데, 『언론중재』가 교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사에서조차 점차 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원회가 『언론중재』를 통해 우리나라 언론법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위원회와 언론중재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의식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우: 중앙일보도 사내 변호사 제도와 기자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팩트체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이 발행된 뒤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와 기사출고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방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사가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체적으로 노력을 강화한 것은 한동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중재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영향을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신문사마다 사전 심의에 노력하고 있고, 출고부서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담당하는 기사는 취재기자가 아닌 제3자로, 신문의 첫독자인 셈인데 이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일반독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출고부서가 적극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황 덕 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접근시각을 보니, 문제발생시 해결까지 접근도나 시간이 가까울수록 해결이 쉬운 것 같습니다. 기사에 대한 문제 제기시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서로 많이 양보하여 분쟁이 쉽게 해결되는데, 소송까지 간 경우에는 모두 한발 물러섬 없이 완강한 입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사가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언론사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포털의 표시의무,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 있어”

사 회 자: 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언론보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이 조정·중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포털의 영향력, 확산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법 개정 이후 최대의 쟁점중 하나가 포털과 관련한 부분인데, 포털에서도 포털이 게재한 뉴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사전문제 예방을 위해 자체

· 조정·중재제도는 효율적인 제도이나 위원회에 제소되면 입증자료 준비 및 심리 참석 등 언론사에 부담으로 작용함. 특히 손해배상청구는 언론보도에 대한 위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김상우

· 신청인 입장에서는 누가 기사를 생산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털을 통해 공표, 확산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포털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바람직함

· 피해구제문 이행방법으로 인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나 결정 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함

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 혜 승: 다음(daum)에서도 법에서 정한대로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털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법적인 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2006년부터 외부 변호사, 학자, 실제이용자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디어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불편부당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비판과 감시를 받기위해 열린이용자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에 대한 직접적인 정정, 반론, 손해 청구등이 가능해졌는데 포털은 실질적으로 기사수정이나 정정보도 게재 등 뉴스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이는 언론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포털의 주요 의무 중 하나인 표시의무와 관련해 신청인 입장에서는 표시가 너무 약하다고 더 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독자들에게 기사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 위원회에 제소된 거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꼬리표, 즉 표시를 달아 기사의 신뢰성을 깎아 내리기 위해 언론중재제도와 포털의 표시 이행의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표시 자체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털, 기사 배열을 통해 뉴스 접근성 높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져야”

사회자: 김상우 차장님께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이미지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심층 인터뷰해 논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정혜승 실장님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상우: 연구결과신청인은 언론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의식이 강하나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구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사는 부당하게 제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신문과 같은 소규모 매체는 작은 언론조정·중재 청구가 언론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포털도 인터넷 신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포털에 대한 잦은 청구는 포털뿐 아니라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도 압박이 되어,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포털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신청인 입장에서는 누가 기사를 생산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표, 확산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마트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마트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진 않지만, 여러 제품

들을 잘 정리하여 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뉴스’라는 제품에서 포털은 대형마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인격권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책임은 뉴스의 가공(加工) 여부로 결정, 뉴스 배열은 가공인가?”

한동원: 정혜승 실장님은 포털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어 직접적인 정보요청 등도 가능해 진 것에 답답함은 토로하셨는데, 연합뉴스와 같은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신문과 같은 일반 언론이 게재한 것과, 일반 언론이 제공한 기사를 포털이 게재한 것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연합뉴스라는 기사 출처를 밝히고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다면 해당 언론사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가공하여 게재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공’의 과정을 거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혜승: 다음(daum)의 경우 80개 매체에서 하루 2만여 건의 기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계약을 통해 일부 기사만을 포털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언론사로부터 생산한 기사 전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에 대해 저희가 선별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터링 자체는 언론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에 대해 일절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우: 포털에서는 기사 콘텐츠를 일절 가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가공 여부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daum)이 하루 2만여 건의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포털의 메인 화면이나 뉴스면 등에 게재되는 것은 몇 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사 선별이며, 이 자체를 가공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혜승: 앞서 포털에서도 기사 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는 등 기사 배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포털에 게재된 기사를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건으로 본다면, 물건 자체를 수정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꼬리표를 다는 것은 제조사에서 해야 할 일이지 마트의 권한 밖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상 포털이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타당하고 자연스런 것이라 생각하나, 포털은 콘텐츠 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한국과 같이 인터넷 문화가 발전한 일본의 경우도, 포털이 제공 또는 매개한 기사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언론사와 포털의 관계는 어떤지, 포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사와 분고: 한국에서는 신문사가 생산한 기사 전체를 포털에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는 약 40%를 신문사가 자체 선별해 포털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은 신문사가 제공한 기사에 대해 별도로 선별하는 과정 없이 전부를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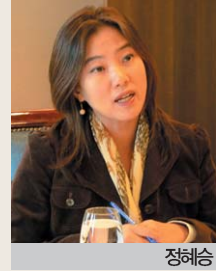
포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수정요청 등이 제기되면 포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협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털의 확산력은 큰 문제인데, 포털에 게재되면 카피가 반복되어 기사가 확산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회자: 여러 의견을 종합하자면 언론사로서는 소송이

· 포털은 정정 및 반론 보도 등 기사 내용의 수정에 대한 권한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중재 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언론사와 합의된 결과물을 포털이 신속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할 필요 있음

· 포털의 표시의무에 대해 기사제공 언론사는 기사에 원가 문제가 있다는 표시를 달아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

· 신청인이 언론사나 포털을 압박하기 위해 조정·중재 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잦은 신청인의 명단 공개 방안 검토



정혜승

나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부담스런 점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 자체적인 피해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후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최종 목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이 최선일 것이나, 완벽한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언론조정·중재제도와 같은 사후구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조정·중재의 결과물을 어떤 방법으로 게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언론사에서도 수용하기 쉬운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포털의 경우, 콘텐츠 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청인이 최소한의 결과물에 마지못해 ‘취하’ 하는 경우, 피해구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한동원: 피해구제율의 경우, 1981년부터 2007년까지는 50~60%인데 비해 지난해에는 79.2%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작년 처리사건 2,205건에 대해, 조정성립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8.6%인 630건 뿐이며, 51.3%인 1,131건은 취하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높은 취하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취하된 사건 중심리전 기사를 수정·삭제하거나 피해구제보도가 이뤄진 경우 피해구제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인데, 피해구제된 것으로 보는 취하 사건에 있어서 질적인 내용면에서나 피해회복 만족도 면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예로 보면, 피신청인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신청인을 협박, 회유, 또는 만족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해명보도를 게재하고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경우 피해가 구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의 문입니다.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보도문, 2면과 같은 고정적인 지면 게재가 효율성 높아”

김상우: 언론사는 피해구제문의 크기나 위치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거나 중재부에서 결정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구제보도문을 반드시 원 보도문이 게재된 면과 동일한 지면에 게재해야 하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정적인 지면을 둔다면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종합 2면을 고정란으로 두고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다만 지방면에 게재된 기사는 일부 지방의 독자에게만 배포되기 때문에 종합면보다는 원 보도면에 피해구제문을 게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박스 기사 형태보다 피해구제보도문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편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피해구제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독자의 주목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신문이나 포털에서도 시각적으로 우수한 편집은 독자나 이용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기사의 분량이나 위치에 대한 고려와 함께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피해구제문 게재시 위원회 로고를 넣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로고가 디자인적 측면에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기에 피해구제문에 로고를 넣는다면 독자들의 주목도를 높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언론사 입장에서도 자체 디자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동원: 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정정기사 문안 말미에 ‘이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정보도입니다’라고 기재한 일이 있었고, 언론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해설 기사도 함께 보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안 내용은 수개월이 지나자 언론사에서 거부하기 시작했고, 해설 기사도 얼마가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는 언론사에서 위원회와 제도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승: 박스 기사 형태나 별도 아이콘 표시를 통해 정정보도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처럼, 그 이행 방법에 있어서 포털은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언론사가 이행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daum)의 경우 정정보도 등에 대해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뉴스메인 페이지에 별도로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덕남: 제 경험상 90년대 말까진 언론에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

적권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낮아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영향도 있겠지만, 언론사가 그만큼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의 주목도를 낮게 게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당시에 비해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을 자주 접하게 되는 만큼 주목도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되며, 향후에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실한 피해구제가 이뤄진다는 신뢰를 가질 만큼 언론사에서 피해구제문의 분량이나 배치를 완벽히 해주길 기대합니다.

“일본, 원 지면과 동일한 지면에 정정보도 게재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 특징적인 아이콘 표시”

오사와분고: 일본에서의 피해구제문 게재방법은 한국과 거의 유사하나 원칙적으로 정정이나 사과문을 원 보도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1면에 보도되었다면 정정보도문도 1면에 게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를 할 경우, 박스 기사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정정보도’와 같은 고정적인 제목과 특징적인 아이콘 표시를 해 독자가 기사내용을 보지 않고도 제목과 아이콘을 보면 정정기사인지 사과문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구제문의 크기나 분량이 원 보도문과 유사하게 이뤄지긴 무척 어렵습니다.

사회자: 언론중재위원회의 작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신청인 80.8점, 피신청인은 75.4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소송에 비해 조정·중재제도가 ADR로서 갖는 장점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대한 만족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쟁의 당사자에게 위원회가 불편부당함이 없이 얼마나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로 합의를 유도하였는가에 따라 당사자의 만족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 일본에서는 언론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고, 법원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수억 원까지 배상 판결한 바 있음



오사와 분고(大澤文翁)

· 조정·중재제도와 같은 피해구제제도 없어 언론사 자체적으로

기자 교육 등을 통해 분쟁의 예방을 위해 노력

· 언론보도와 포털은 국경을 넘어선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언론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 상호 교류 필요

위원회와 조정·중재제도가 지향하는 바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피신청인의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란 측면에서 언론사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조정·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언론사에 더 큰 부담이 되길 전 분쟁을 해결하지는 취지이므로 언론자유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 입장에서도 조정·중재제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라 간주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방어만 하기보다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정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정정보도할 것인지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인지, 주된 맥락에서는 합의가 되었는데, 분량이나 게재위치로 다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물론 중재부에서 적정 수준을 제시하지만 자칫 당사자 간 자존심 싸움으로 악화되어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구제문의

분량이나 위치에 관한 것은 신청인의 피해구제 실효성 차원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 보호란 측면에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분쟁해결 기능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홍보 강화”

사회자: 언론중재위원회는 2011년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언론중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법안 개정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좌담회를 마치기 앞서, 이와 관련해 아직 말씀을 못하신 의견이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황덕남: 위원회는 매체 변화와 같은 사회 변화에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대해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새로운 매체로 인한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민사사건 해결을 위한 제도에 비해 정말 신속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였고, 스스로 위상을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은 균형을 잡기 어려운 문제인데 위원회가 운영을 잘 해왔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예방적·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홍보를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

“시정권고의 효력 강화, 동일한 심의기준 반복 위반 시 공개경고문 게재조치 등”

한동원: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시정권고는 언론사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문자 그대로 실효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의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의 경우,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했으며, 공개경고의 경우에는 한국신문협회 소속 전 회원사의 지면에 보도하게 한다는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이러한 제재규정을 도입하여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부, 피해구제문 이행 방법 명확히 지정하고, 포털이 자체 생산하는 보도의 해결책 마련”

김상우: 피해구제율에 치중하기보다 내실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0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재부에서는 합의문의 내용, 이행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인터넷 매체의 사건에서 중재부는 피해구제문의 게재 위치, 게재 시간 등을 문안에 명시하지 않고 합의를 유도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재부는 또 다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포털이 자체 생산하는 기사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2009년 서울조정413사건의 경우, 변희재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진중권씨의 인터뷰를 방송해 피해를 당했다며 야후(yahoo)를 상대로 조정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재부에서는 해당 동영상은 포털이 자체 생산한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찾은 신청인 명단 공개 등 조정·중재제도 남용 방지책 마련”

정혜승: 신청인이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남용하여 언론사나 포털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자주 신청을 하거나 당하는 기관, 단체, 언론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털의 특성상 뉴스서비스뿐만 아니라 게시판 서비스와 같이 미디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언론중재법에 포함되었으니 일부 해결되었으나, 게시판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나 국회 등 각계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조정·중재제도를 모범사례로 보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중재위원회는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하고 있으므로 유사조정 기관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와 포털, 국경을 넘어 분쟁 가능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한·일 교류 강화”

오사와 분고: 이번 좌담회를 통해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논의가 깊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언론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고 대개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도에 대해 조금 부러운 감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포털의 경우 국경을 넘어선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해결이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국가가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언론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언론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계 고유한 소송 전 중간단계인 조정·중재제

도 역시 분쟁해결에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쟁이든 처음에는 작은 형태로 발생되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조정·중재제도의 취지가 작은 불만이 큰 분쟁으로 악화되기 전에 해결하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건강한 사회가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가 향후 10년을 위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요청의 필요성

박근서 대구가톨릭대학교언론광고학부 교수

I. 서론

1996년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출판되었다. 출판당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재 권고가 있었고, 다음 달 출판사 간부가 연행되었다. 출판사 관계자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죄는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후 법정 공방은 계속되었고, 2000년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지었다.

2001년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드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논란에 휩싸인다. 예술가로서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홈페이지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혹은 교사직을 포기하라는 요구했다.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 김인규 교사 사건은 2005년 대법원의 ‘일부유죄 판결로 일단락된다.

2010년 개그맨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에 KBS에 소위 블랙리스트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김미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2010년 6월 14일 조선비즈(biz.chosun.com)에 “트위터 너마저... 음란물 전파통로로 전락”이라는 손혜정 기자의 기사가 실렸다. 손혜정 기사는 기사에서 “음란물 유포는 점점 지능화되는데, 이를 막을 정부의 대책은 느리기만해 답답합니다.”라고 썼다. 같은 해 MBC PD 수첩은 김종

익씨와 관련해 정부의 일반인 사찰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다. 김종익씨는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링크한 적이 있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부의 개입에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 사건을 나열해보았다. 장정일의 소설, 김인규의 홈페이지, 김미화의 트위터, 김종익의 블로그, 미디어는 각각 다르고 문제의 성격 역시 상이하지만 모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였다. 장정일과 김인규의 예술적 표현의 문제나 김미화와 김종익의 정치적 문제제기 혹은 의사표명 등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행사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자유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무작정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는 누려야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사이에 두고 이를衡量하는 것은 아마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공동체의 가치에 거스르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리 없겠지만, 상반된 두 가지 가치의 대립과 모순은 필연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미 오랜 시간 묵혀온 논의지만, 묵힌 시간만큼 ‘해결 이 가까워졌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이 논의는 현실적으로 종결되지 못한다.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최적점’을 찾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다.

90년대 중반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허가된 이래 네트워크는 우리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전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기존의 일방적이며 획일적인 소통 채널을 일신하고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 공간을 제공하리라는 기대를 얻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첨단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한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 수집을 놓고 새로운 감시사회의 등장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대두되었다. 발로우가 사이버스페이스 선언문을 통해 역설한 새로운 삶의 공간과 그 가치에 대한 주장은 어떠한 면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통제

와 권력의 작용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확실히 인터넷은 기존의 미디어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대상이다. 그것은 통상의 미디어들과는 구분되는, 오히려 유선, 무선의 개념과 같이 미디어의 기술적 문화적 기반에 가깝다. 그것은 특정한 콘텐츠를 실어나르도록 특화된 채널이나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방식이며 그것을 얻어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다. 더구나 날로 진보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그것의 규모와 영향력 그리고 가치는 하루하루 더욱 커지고 있다. 웹 2.0의 대두는 인터넷의 기술적 진보와 문화적 진전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다.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가치를 기치삼아 인류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이는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력한 미디어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가장 주목받는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 140자의 단문으로 의사를 주고받는 트위터, 사용자 개인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공시하기보다는 타인과의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쌍방향성을 대폭 강화한 페이스북은 특히 2009년 불어닥친 아이폰 열풍에 힘입어 빠르게 사용자를 늘려나갔다. 특히 '트위터'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커다란 주목을 받으면서 그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개그맨 김미화의 KBS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이나 조선티비즈 기사 파문 그리고 최근의 트위터 엽기녀 논란은 트위터의 가능성이 조화로운 합의에 따라 평화롭게 펼쳐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국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이슈나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논란은 페이스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메일을 해킹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 남성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된 사건이나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매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끊임없는 의혹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역사는 진전하고 미디어 또한 진전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한 논란들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같다고 해도

한 같을 순 없다. 문제는 우리는 늘 새로운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며, 그것은 어제와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에 요구되는 가치에 낡은 미디어에 요구되던 그것을 복사해 넣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글의 목적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우리의 문화적 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이에 대한 규범적이며 윤리적인 요청의 필요성을 논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단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무작정한 생각에서 그러자는 것이 아니다. 낡은 부대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면 나름 쓸모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낡은 부대가 충분히 쓸만한 것이냐는 점이다. 새로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우려'가 반복된다. 미디어와 관련된 콘텐츠의 진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규범적 차원의 '우려'는 여전히 낡은 버전으로 남아 있다. 어쩌면 '우려' 자체가 낡아서 쓸모없게 되어 버린 부대인지도 모른다.

II. 소셜 미디어,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구성한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 기반 매체들이 지니고 있었던 가능성을 새로운 국면으로 진전시켰다. 기존의 인터넷 공동체가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폐쇄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 개인에 초점을 둔 개방적이며 보다 사적인 형태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 동호회는 특정한 관심사를 놓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했다. 그러므로 인터넷 동호회는 그것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관심의 대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거나 위계서열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인터넷 동호회와 같은 기존의 웹 공동체는 단일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소

“새로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우려’가 반복된다. 미디어와 관련 콘텐츠의 진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규범적 차원의 ‘우려’는 여전히 낡은 버전으로 남아있다.”

통하는 ‘장소’였다.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의 실제적 운영과 관리는 필연적으로 권위와 정보의 불평형한 분배를 낳았다. 대부분의 동호회에서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 버린 ‘실명인증’이나 일반회원과 정회원 그리고 관리자등급의 구분 등의 관행은 이러한 불평형성의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관심에 따라 사람들이 모여든 까닭으로 애초부터 보유 정보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소통을 통해 평형화(leveling)되기보다 공동체의 권위가 일부 회원에게 집중되어 그 격차를 더욱 벌여놓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터넷 공동체의 상당수는 애초와는 다르게 폐쇄적이며 위계서열적인 구성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폐쇄성과 위계서열적 수직구조는 신규 회원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따라서 이들과 다수는 공동체의 핵심에 접근해 인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불량회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¹⁾

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새로운 인터넷 기반 솔루션은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네트워킹한다. 즉 ‘객관적’ 관심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할 사람을 엮음으로 기존 공동체에서와 같은 정보와 권위의 불평형적 분배나 신입회원이 느끼는 진입장벽 등은 애초

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 개인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인적 관계의 네트워크로서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지닌 시공간적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인터넷 공동체와 소셜 미디어의 인적 관계의 형성 원리상의 차이는 PC 통신의 구성모델과 인터넷의 구성모델의 차이와 일치한다. 메인프레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단지 콘텐츠 제공 요청을 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었던 PC 통신의 구성상은 기존 인터넷 공동체의 구성상과 비슷한 중앙집중형인 반면, 소셜 미디어의 구성상은 인터넷의 구성상인 네트워크상을 갖는다. 이러한 형태적 차이는 한편으로 소셜 미디어가 인터넷의 구성상과 일치하는 그러므로 그것의 기술적 가능성을 보다 극대화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의 분산적 네트워크이며,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박성철(2009)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이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양식이라고 보고 그 단점과 장점을 요약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은 규칙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져 규범이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송수신자간의 관계 형성 없이도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고, 메시지 전송의 과정과 통로 또한 표정이나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소통의 실체성이 약하므로 관계 관리의 당위성이 무시되거나 경시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를 배려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할 필요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은 제한적으로나마 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권리와 참여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 독점을 막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박성철 2009:

1) 이기적 불량회원이란 공동체의 ‘무임승차자’에 해당한다. 무임승차자는 인터넷 공동체의 입장에서 매우 미묘하고 까다로운 문젯거리다. 왜냐하면 무임승차자는 최소한 발화의 청중으로서의 역할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동체의 중심과 다소 거리가 있고 이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이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몰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공동체의 공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은 심하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성철의 인터넷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경우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소셜 미디어는 인터넷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익명성'을 무작정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성철의 논의는 인터넷을 '익명적 매체'라고 규정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따라 묶인 사람들이 형성한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관계의 맺고 끊음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러한 이유로 소통의 실체성이 약하다는 주장은 소셜 미디어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로 실제적 관계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이다. 적어도 발화의 상황에서 혹은 최초의 메시지 게시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의 조건은 단순히 익명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이 곧 규범의 준수 혹은 규칙의 순응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관계의 중요성이 규범으로 연결되는 수준과 소셜 미디어에서의 관계가 관철되는 네트워크의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소셜 미디어는 인터넷의 익명적 공동체와 달리 상대적으로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규범 또한 상이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익명적 공동체에서 '실명'은 추상수준이 높은 보편적 규범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반면, 소셜 미디어에서의 '실명'은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 따라서 동호회와 같은 통상의 인터넷 공동체에 적용되던 규칙과 규범을 소셜 미디어의 공동체 혹은 네트워크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셜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사적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나 상호 이해의 폭이 기존 인터넷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물론 소셜 미디어는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특성상 메시지가 공적으로 유포되거나 공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양면성을 지닌다. 더구나 인터넷이라는 기본적인 기술 조건은 사적 메시지의 공적 발화를 전대미문의 속도와 범위로 전파하는 위력을 발휘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게시물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어떻게 해석되어 전달될지를 가늠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셜 미디어의 전달 범위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룹 혹은 강한 연대의 네트워크는 물론 그로부터 몇 차례 건너뛰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약한 연대의 네트워크 그룹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통제와 개입은 더욱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이다(이동훈·유정호 200: 167-8).

어떠한 면에서 소셜 미디어는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구비적 공간 혹은 음성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구비적 공간에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은 발화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 그리고 발화자의 목소리를 들은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반복의 과정에서 변형과 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화의 맥락이 달라짐으로써 해석을 위한 단서들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최초의 발화는 발화자가 통제할 수 있는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 대중적이며 일반적인 차원으로 전파된다. 이러한 과정은 소셜 미디어에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임재해(2006)는 이야기판의 구연공동체와 인터넷의 사이버공동체 사이의 유사점을 나열하며 사이버공동체의 구비성을 주장한다.²⁾ 인터넷은 어떠한 측면에서 구비적 소통 상황에 평등한 관계와 극단적인 속도

2) 임재해는 두 공동체의 특징을 다음 여섯가지로 비교한다(임재해 2006 1-76). 첫째 구연공동체와 사이버공동체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서로 소통하며 순환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둘째 구연공동체가 '풍류(numa)효과'로 이야기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동체는 '가면효과'를 통해 자유를 구가한다 셋째 구연공동체는 대면적 관계에 기반하는 까닭에 나이, 성별,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나, 사이버공동체는 전혀 차별이 없다 넷째 두 공동체는 모두 약한 연대와 강한 연대라는 두 가지 경향을 지닌다. 다섯째 사이버 공동체에서는 복제에 의한 텍스트의 횡적 합성이 이루어지는 반면 구연공동체에서는 기억과 구연에 의한 종적 합성이 이루어진다. 여섯째, 효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인정욕망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두 공동체는 비슷하다.

“소셜 미디어는 이전의 인터넷 미디어 혹은 공동체와 구분되는 윤리적 혹은 규범적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즉 ‘익명성’에 의해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터넷 미디어들과는 다르게, 소셜 미디어는 적어도 네트워크 상위 위치로서 혹은 그 자리로 호명된 이름으로 사용자를 규정함으로써 이미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범과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와 범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인터넷이 구비적 소통이 장구한 시간을 통해 설화를 전승하고 신화와 전설을 형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일을 순식간에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인터넷 공동체가 지니고 있었던 익명성에서 벗어나 유사면대면 상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구비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전형적인 구비적 소통 상황이 기억에 의존했던 까닭에 그 메시지의 변이와 변형이 익명적이었던 반면, 소셜 미디어에서는 메시지의 완벽한 복제가 가능한 까닭에 그것의 변이와 변형이 기록으로 남는다. 구연공동체는 소통의 결과는 남기지만 구체적인 소통의 역사를 망각하는 데 반해, 소셜 미디어는 양자모두를 기억한다. 이 점에서 소셜 미디어는 이전의 인터넷 미디어 혹은 공동체와 구분되는 윤리적 혹은 규범적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즉 ‘익명성’에 의해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터넷 미디어들과는 다르게, 소셜 미디어는 적어도 네트워크 상위 위치로서 혹은 그 자리로 호명된 이름으로 사용자를 규정함으로써 이미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범과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규범과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메시지가 전달되는 최종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셜 미디어의 통제 가능한 범위는 최초의 메시지 전달 범위 혹은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 범위에 해당하며, 그 바깥은 최초 발화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공동체의 바깥이다. 소셜 미디어의 공동체가 사적인 관

계에 의해 형성된 비교적 단단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바깥은 이 네트워크와 느슨하게 연결된 통제 불능의 영역이다. 물론 소셜 미디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이러한 공동체 바깥의 영역이 될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메시지가 공적 발화가 되는 지점 또한 메시지가 공동체의 바깥으로 전파되는 순간이다.

Ⅲ. 사회적 자본과 인정 욕망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정보 중심 공동체와는 다르게 인적 연결망 자체를 가장 중심에 두는 서비스다. 즉 기존의 인터넷 공동체가 최소한의 콘텐츠 혹은 그것의 기본적인 원칙과 구성원리를 전제했던 반면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특정성 혹은 제한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네트워크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심층심리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이라 함은 소셜 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말하고, 심층심리적 차원은 소셜 서비스를 욕망하는 인간 심리의 기저에 대한 논의에 해당한다.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네트워크는 상호간의 신뢰와 호혜에 근거하여 서로를 엮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Putnam 1993; Bourdieu 1984).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과 공통적 문화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셜 미디어는 퍼트남의 개념을 통해 보자면, 개인의 친분과 신뢰를 통해 구축된 사적 네트워크로서 조직화 수준이 낮고 공유된 규범과 가치에 의한 강제가 약한 반면, 비공식 채널임에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의사결정의 단위를 집단화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영역이다. 어떠한 면

에서 소셜미디어는 그 자체가 사회적 자본일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은 지배의 관철이 단 순히 경제적 생산수단의 장악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수준의 자원들을 통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는 점을 설명해 준다. 즉 자본의 지배는 문화적 상징의 독 점과 그들 사이의 공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권력의 인적 네트워크 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한 방법과 자원을 통해 형성 된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는 가장 전형적 메커니즘을 교육에서 찾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소위 '학벌'로 대표되는 교육에 의한 사회적 자본의 형 성이 가장 뚜렷한 현상이다.

'소셜 미디어'는 부르디외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미디어라 할 수 있다. 트 위터의 팔로워와 팔로잉 개념이나 페이스북의 친구 개 념은 자신의 사회적 자본을 관리함은 물론 자신과 관계 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적 네 트워크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 솔루션을 제공 한다. 이는 애초 부르디외가 언급했던 사회적 자본의 양 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를 통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적어도 교육제도만큼의 폐쇄 성이나 경제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과 같은 다른 자본 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는 소셜 미 디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지배집단에 독점될 수 없으며, 따라서 대항적 사회적 자본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소셜 미디어가 지닌 사회적 기능 혹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베트남의 사회를 건 전하게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나 한 사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 고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한 형태로서 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 모두 소셜 미디어가 어떤 사회 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 신뢰를 회

복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 보든가 혹은 대안적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수단으로 보든가 관계없이 소셜 미디어는 특정한 사회 적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셜 미디어가 사용자를 흡인하는 중요한 이유 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학적 필요에서 뿐 아니라 심층심리 적인 차원에서 또한 설명 가능하다. 라캉의 주장에 따르 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할 능력이 없다 (Lacan 1977). 왜냐하면 인간의 정체성이란 스스로에서 비롯하는 즉자적이며 직각적인 느낌이나 감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언어와 기호를 통해 구성된다. 라캉은 언어와 기호를 통해 구성된 나머지들을 가리켜 '환상'이라 부른다. 환상은 강력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 치지만 공식적이며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는 주변적이거나 부차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 아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상징과 기호를 끌어 모은다.

상징과 기호는 인간의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기 이름은 타자에게 불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징과 기호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타자에게 그러한 상징과 기호 로 불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조건이다. 인간 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타자로부터 의 부르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욕망은 기본적으로 인정 욕망 이다. 타자가 나를 나로 인정해 주는 한에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다수의 자원, 즉 자기를 인정하는 타자 의 수를 늘려 나가고자 한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라캉은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을 구분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상적 자아는 인간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상을 말하며 자아 이상은 타자를 통해 자기를 보는 따라서 자신의 향한다자의 시선을 말한다. 이상적 자아 와 자아 이상은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선 인간의 사회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상적 자아라기보다는 자아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면에서 자아 이상을 규범적으로 내면화한 것이 이상

“사적 공동체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단계에서 소셜 미디어에서의 발화는 더 이상 사담이 아닌 공적 발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적 발화의 성격과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의 논리가 그다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정체성이란 스스로 확립되거나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자를 통해 형성하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점에서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준다. 페이스북의 친구 리스트나 트위터가 제공하는 팔로워와 팔로잉 리스트는 타자의 타자, 타자의 타자의 타자까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팔로잉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숫자는 자기 정체성을 가시화하고 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숫자에 연연함은 관계의 ‘물신화’를 드러내는 징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물신화와 그로부터 비롯하는 소외 이전에 관계의 결핍을 메우고 이를 가시화함으로써 충족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관리의 사회적 필요뿐 아니라 자기 정체감의 유지와 그를 통한 심리적 만족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공동체의 급격한 해체는 한편으로 개인을 얼굴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민, 소비자 등과 같이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 체제에나 걸맞은 거대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얼굴은 유일한 얼굴이다. 유일함은 곧 개인의 정체성과 맞닿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일한 얼굴을 타자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모순된 욕망을 갖는다. 이러한 욕망이 모순된다는 것은 얼굴의 유일성이 오직 타자에 의존해서만 확립되기 때문이다. 유일함은 그 자체의 실체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아님을 통해서만 부정적으로 확립된다. 그러므로 유일성과 개체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욕

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네트워크와 공동체에 대한 욕망 또한 강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는 얼굴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다.

IV. 소셜 미디어의 개입 지점 ○○○○

소셜 미디어는 사적인 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출발하지만 그 영향의 범위는 이러한 사적영역을 벗어난다. 소셜 미디어 상의 한 개인은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들에게 의해 특정한 지점 혹은 위치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네트워크는 또한 다른 네트워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위치로 표시될 수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단순히 사적인 공동체일 수 없는 까닭이다. 비록 그것이 사적 관계에서 출발한 작은 공동체였다고는 해도,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한보다 넓은 범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사적 공동체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단계에서 소셜 미디어에서의 발화는 더 이상 사담이 아닌 공적 발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적 발화의 성격과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의 논리가 그다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사적 공동체라고는 해도 그 발화의 범위가 사회적 수준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전제로 통상의 공적 발화에 대한 통제 기제를 단순히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발화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놓고 사적 공동체에서의 발언을 통제하는 것은 소위 ‘막걸리 보안법’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정당화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 어떠한 면에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내용적 통제는 그 자체가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예로 들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비방·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이를 삭제 혹은 삭제 권고하거나 해당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 방침의 근거로 트위터는 일종의 전자메일이므로 선거법 93조 1항에 의거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자 메일과 달리 메시지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만 소통이 가능한 사적 대화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제재 방침에 대해 우선순위에 도로 교통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나 전화통화도 단속하고 술집에서의 대화도 단속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비난은 당연한 결과였다(조희정 2010: 38-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소셜 미디어에 대한 공적 제도를 통한 통제는 그 자체가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 듯하다. 영향력의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성격상 사적 네트워크에 해당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공동체 바깥이라고는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엮여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본성상 사적 대화의 채널로서 자유로운 발화를 전제로 한 서비스를 공적 권력의 개입과 법률적 제재를 통해 통제한다는 것은 분명 과잉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 공적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요구할 경우, 그것은 자체의 정체성을 잃고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어떠한 의미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발화 내용을 문제 삼아 이를 제재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 자체를 부정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제도적이며 공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윤리적 통제 기제에 따라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윤리적 통제는 기존 미디어에 적용되었던 차원에서 벗어나 변화된 소통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준으로 상승해야 한다. 통제라는 말 자체의 어감이나 이미지가 그렇기는 하지만, 소셜 서비스를 작용점으로 하는 윤리적 개입은 ‘제재’, ‘금지’, ‘억제’ 등과 같은 부정적 작동 원리로 움직여선 곤란하다. 인터넷이 그렇고 인터넷의 기

“소셜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제도적이며 공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윤리적 통제 기제에 따라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윤리적 통제는 기존 미디어에 적용되었던 차원에서 벗어나 변화된 소통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준으로 상승해야 한다”

술적 구성상을 인적 구성상으로 전환한 소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탈중심, 평등, 자유, 참여, 공유, 개방과 같은 적극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어진 미디어가 특정 가치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반드시 그 가치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소셜 미디어의 공동체가 갖는 이미지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리즘’과 겹쳐진다. 리즘은 탈중심화된 공동체 구성 방식으로 권위와 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따라서 개인의 잠재력을 고양함으로써 집단적 잠재력이 실현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가타리는 네그리(1995)와 함께 건강한 공동체의 건설은 독특한 개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독특한 개성이야말로 공동체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성이란 개인에게 아무런 억압도 없는 즉 개인이 자유롭게 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위로부터 주어진 규칙과 규율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조직하고 그로부터 자기를 생산적으로 고양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가타리·네그리 1995: 35).

가타리와 네그리의 주장에 있어 핵심은 공동체의 요구가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데 있다. 개인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이 공동체의 잠재력을 구현하는 길이 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길이며 동시에 개인이 원하는 삶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또한 개인의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집단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길에 있어야 한다. 이는 소셜 미디어

어에 대한 윤리적 개입이 단순한 금지와 제재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성하는 실천의 논리 혹은 행위의 기술이라는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암시한다(박근서 2005).

소셜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원칙의 구성은 그러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적시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칸트 식의 정언적 명법과 유사하게 제시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행위를 규정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하나의 제안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는 우선 박근서에 의해 제시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행위 원칙으로서의 '성찰'과 '배려'를 따라야 할 것이지만, 소통의 구체적 상황과 수준에 따라 대략 여섯 범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소통의 구체적 상황을 구분하는 여섯 범주란 아콕슨(1989)이 제시한 소통의 모델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이미 박성철(2009)이 수사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성찰과 배려의 원칙이 작동해야 하는 소통의 여러 지점 혹은 국면들로 원용하고자 한다.

우선 커뮤니케이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맥락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당사자들을 그들 밖에 있는 세계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건전한 소통은 공동체의 가치와 더불어 그것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공동체 바깥의 가치와 심하게 대립한다면 이는 제고의 여지를 갖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맥락은 발화자와 그의 공동체가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보다 건전한 소통을 생산하기 위한 우선적 고려 대상이다.

둘째, 발화자의 입장에서 자기표현의 자유와 의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신의 발화가 어떠한 억압이나 강제에 의해 왜곡되거나 변형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발화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의사와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발화를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성찰할 수는 없다. 일상적 수준에서의 발화는 대개 버릇과 같이 특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들 발화가 결국 자기표현의 매체이며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면, 발화자는 자기 이미지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청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청자의 상황에 대한 배려이며, 결과적으로는 소통의 품질 혹은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소셜 미디어는 근본적으로 청자와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진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고려의 지점이다. 청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우선 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코드와 상징의 선택으로부터 그를 네트워킹된 다수 존재의 평균치로 추상화하지 않고 실제적 관계 속의 익숙한 얼굴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자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아콕슨이 의사소통의 친교적 기능(pathtic function)이라고 부른 것과 관계가 있다. 소통은 메시지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는 소통이 일방적으로 주도되거나 관계의 맺고 끊음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특별한 의미가 없더라도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별 의미 없는 소통 또한 관계 유지에 중요하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코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소통의 채널이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자체에 대해 사유하고 그 논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통 채널에 대한 논의는 효율적 소통의 전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문화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웹 2.0의 가치에 충실한 매체로서 참여, 공유, 개방의 원칙이 관철되는 한에서 그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의 운영과 관계 맺기의 원칙을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되 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메시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메시지는 의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 자체의 형태와 구성에 관련된다.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경우, 이러한 구체적

표현 형태 자체가 그것의 의미보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의사의 전달과 더불어 그것을 전달하는 그릇이 되는 표현과 형식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표현과 형식은 그 자체로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의 메시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변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섯 범주에서 혹은 국면에서 성찰과 배려의 원칙이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위를 규제하는 통제와 논리가 아니라, 행위를 구성하며 실천을 유인하는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V 결론 : 소셜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요청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소셜 미디어에 윤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다. 윤리, 적어도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 이후의 윤리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금지의 명령이어서는 곤란하다. 행위의 생산을 목표하고 구체적 실천을 유인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으로서 이 시대의 윤리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들과는 다른 어떠한 측면에서 그것의 물리적 기반인 인터넷의 가능성에 더욱 가까이 다가선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다. 소셜 미디어에 의해 구축된 공동체는 기존의 인터넷 공동체와 비교할 때 리즘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전하는 자유와 평등 참여와 연대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발화와 실천에서 비롯된 소셜 미디어의 관계 맺기는 그러나 어느 선에서 가까운 네트워크 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영향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 지점에서 통제와 제재의 논리가 들어선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기 애매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사적 미디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적 제재와 제도적

통제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쉽지 않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공적 제재의 명령들은 개인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과할 뿐 아니라,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통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거브너스는 공적 채널과 제도적 방법을 통한 부정적 효과가 아니라 사적 채널과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긍정적 효과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윤리와 규범을 요청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로운 미디어는 늘 새로운 규제와 새로운 통제를 낳는다. 이는 늘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우려'에서 비롯하기 일쑤였다. 우려는 그러나 대개 우려에서 그친다. 하지만 그 우려가 행위와 실천을 억압하고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위축한다면 이제 그쳐야 할 것은 이 대책 없는 '우려'다. 우려가 우려로 끝나는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다. 최선은 우려가 없는 자유, 우려로부터 억압되지 않는 실천이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요청은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규범적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공식적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적극적 대안이다.

<참고문헌>

- 김기타리 · 네그리 (1999) 조한경 역, 자유의 새로운 공간. 갈무리.
- 박근서 (2005) 유령의 윤리 또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윤리적 개입.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성철 (2009) 네트켓과 현실공간 커뮤니케이션 규범의 대비연구. 『수사학』, 11권, 323-361
- 아쿠타사, 로만 (1989) 신문수 역. 문학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 이동훈 · 류정호 (2009) 인터넷 선거 캠페인 관련 개인미디어 규제법률의 문제점 연구: 공론장적 접근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권 3호, 159-198
- 임재해 (2006) 사이버공동체의 소통양식과 실화 전송양상의 재인식. 『구미문화연구』, 22권, 1-78.
- 조관중 (1998) 인터넷 기술혁신과정의 지배조정기제. 1998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37-9.
- 조희정 (2010) SNS를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개선 방향. 『언론중재』, 2010년 여름호, 30-43
- Bourdieu, P. (1984). tr. Richard, Nice.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 Press.
- Lacan, J. (1977). ed. Jacques-Alain Miller, tr. Alan Sherid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W. W. Norton.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 Press.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 사례 및 피해구제방안 고찰

-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제도' 를 중심으로

이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변호사

어서 이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요청하며, 또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고 건수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새로운 유형 서비스보다는 인격권 침해의 폐해가 만연된 블로그, 카페 등의 전통적인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고찰하게 된 점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II.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 사례

1. 침해 유형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격권 침해 유형도 일반 인격권 침해 유형과 큰 차이가 없는데,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유형을 살펴 보더라도 명예훼손, 모욕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된 사례가 90% 정도에 이르고 소수의 초상권 침해나 사이버 스토킹(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회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 개인정보 노출등이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자신이 본인 운영의 소셜미디어에 자발적으로 게시하여 공개한 사진, 각종 개인정보 등이 다른 이용자에 의해 소위 '떠나르기' 등의 방법으로 변형, 왜곡된 뒤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데,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이 오히려 피해를 자초하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동호회 활동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격권 침해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프라인을 통한 모임도 병행하는 카페들도 많지만 주로 사이버상으로만 서로 교류를 하고, 가입 및 탈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회원들간의 교류 지속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매우 과도한 수위의 표현을 서슴없이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나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로 사건화 되어 당사자를 파악하게 되었을 때, 연령과 관계없이 심지어 상당한 연령

I. 논의를 시작하며

우리가 현대의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기 어렵듯이, 개인적인 영역 특히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활동을 압도하는 것 같다. 특히 블로그, 카페 등의 전통적인 소셜미디어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로 불리면서 이용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활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사람들이 혁명적이라고 평했었는데, 최근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민주화 열풍을 보면서 그 혁명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용자들을 정보의 수용자가 아닌 생산자 및 전파자로서 탈바꿈시킨 이러한 소셜미디어가 표현의 자유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타인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회적 흉기로 자리 잡은지 오래된 시점에서,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 사례 및 피해구제방안' 을 다시 고찰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 지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도 도입되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제도' 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본인이 다른 제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많지 않고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본 제도와 관련된 것이

대의이용자조차 현실 사회관계에서 도저히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저속한 표현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사이버세계에서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폐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2. 인격권 침해 사례

인격권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포괄적이어서 대표적 인사례를 선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나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로 이어졌던 사례 중 자주발생했던 사례를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가. 모욕

인터넷 카페 「○○모임」내 게시판에서, 카페 회원인 피신청인 B는 카페지기인 신청인 A가 자신의 의견을 자주 비난하고 심지어 강퇴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신청인 A를 성토했는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A와 관련하여 “병신”, “X도 모르는 새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와 손해배상을 신청취지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사례.

나. 명예훼손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피청구인 B는 자신의 블로그에 □□ 병원의 원장인 청구인 A에게 진료를 받았던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청구인 A는 피청구인 B의 게시글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환자가 급감하는 등 영입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B를 상대로 민, 형사상 소제기를 위하여 피청구인 B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이용자 정보를 청구한 사례.

다. 초상권 침해

인터넷에서 □□로 활동하였던 청구인 A는 우연히 방문한 ○○○ 카페에서 피청구인 B가 청구인의 사진을

“현대 사회에서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감시와 컨센서스를 도모할 수도 있는 유용한 매체인 소셜미디어가 일부 이용자들의 그릇된 이용행태로 인해 그 사회적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훼손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마치 자신의 것인양 게재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B의 미니홈피를 방문하였으며, 그곳에서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A가 □□활동을 하며 촬영한 사진을 다수 게재한 것을 발견하고 피청구인 B에게 메일로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피청구인 B를 상대로 민사상 소제기를 위하여 피청구인 B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이용자 정보를 청구한 사례.

3. 문화지체현상으로서의 인격권 침해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학창시절 사회 수업시간에 학습했던 ‘문화지체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과학기술과 같은 물질문명의 변동 속도를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따르지 못하여 발생하는 부적응 현상을 ‘문화지체현상’이라고 하는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나 개인당 휴대전화 보유율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이용자들의 통신 이용행태나 준법의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 같다. 인간 개개인이 고립화, 원자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서로간의 소통과 정서적 교류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감시와 컨센서스를 도모할 수도 있는 유용한 매체인 이러한 소셜미디어가 일부 이용자들의 그릇된 이용행태로 인해 그 사회적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훼손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다.

4. 과도한 소셜미디어에의 접근 및 이용의 문제점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나친 집착과 몰입도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유발시키는 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 및 청년층의 이용자들의 경우, 과중한 학업에 따른 피로감, 만연한 청년실업, 적절한 취미활동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인터넷 특히 소셜미디어에 몰입하게 되고 필요 이상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사이트들의 경우도 단순히 게임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채팅을 통해서 게임 이용자 상호간의 교류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인터넷 게임동호회, 마니아 집단인 이른바 ‘길드’ 또는 ‘클랜’을 형성해 활발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하고 장시간에 걸친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권태 및 매너리즘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은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이용행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다. 비대면성 또는 익명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가학 및 공격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죄의식 또는 위법성 인식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어, 인격권 침해의 정도와 범위는 날로 확대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Ⅲ.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피해구제 방안



1. 일반적인 권리구제 방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격권을 침해한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일 것이다. 민사

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당 카페나 블로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삭제, 폐쇄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 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¹⁾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친고죄 여부 등 쟁점으로 인해 현재 입법화되지는 않았고, 따라서 소셜미디어에 의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등

인격권 침해의 가해자가 아닌 게시물을 관리 운영하는 포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가 관심을 가질만한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무조건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여 조치할 경우 다른 한편으로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한 권리침해 게시물이 아닌 한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임시조치(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1) 나경원의원대표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8. 11. 3.)

차단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러한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정보계재자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개정안²⁾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중국적인 피해구제가 아닌 가(假)구제적인 성격을 갖는데, 대부분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률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가치분 등의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급속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간적, 절차적 관점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불가피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보계재자의 불복수단 마련 등 정보계재자의 법익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소셜미디어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반 민사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경우,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 시간적, 비용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ADR이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인 관계로 통상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라고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라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일반, 즉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해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지원, 보좌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담당부서가 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수집 등 사전 조사를 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를 토대로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건의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되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양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 제38조 제4항)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현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 4인이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촉되어 있으며, 그 중 3인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보되어 대부분 당사자 출석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절차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 민사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부분 등 각종 서류의 송달과 조정서의 작성을 위해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분쟁조정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상 정보의 게재가 게재자의 실명이 아닌 아이디(ID)나 닉네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인이 해당 게재자의 인적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분쟁조정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명예훼손 분쟁조정 효력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은 없고 계약의 효력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2) 나경원의원 대표발의(2008. 11. 3.) 이용경의원 대표발의(2008. 11. 7.), 이종걸의원 대표발의(2009. 5.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셜미디어의 발전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이용자들의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표현의 집단폭력이 난무하는 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4.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도

앞에서 적시한바와같이, 이용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거의 실명이 아닌 아이디(ID)나 닉네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격권 침해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아이디(ID)나 닉네임을 대상으로 해도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 또는 신청인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의 경우, 법정화되어 있는 성명, 주소와 함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생년월일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소제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되어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며, 분쟁조정 제도와 달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중국적 결정을 하게 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정보제공을 결

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보가 제공된 경우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3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4호, 제44조의6제3항).

다만, 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도의 경우 대상을 포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 매체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인격권을 침해한 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입력한 경우,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IV. 인격권 침해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의 문제



소셜미디어 활동에 있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뿐만 아니라 침해의 피해자 또한 대부분 아이디(ID),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 특정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대법원도³⁾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아이디(ID), 닉네임의 경우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표시로 간주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⁴⁾에서 다수의견으

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4)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인터넷 ID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과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ID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ID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ID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으므로, ID로 지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ID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더 이상 특정 연령대나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전 인터넷 사용자들의 일반적 표현 매체로 자리 잡았고 사이버 공간과 현실세계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디(ID), 닉네임은 점점 피해자 특성의 중요한 표시로 부각될 것 같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피해자 특성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당해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특성 및 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형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피해구제의 방식에 있어서도 민, 형사 구제수단이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어



인터넷 소셜미디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성과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유용한 매체로서 계속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개인간 또는 집단간 소통의 가교 및 여론형성 등의 중요한 수단으로 더욱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있는 이용자들의 성숙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표현의 집단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그 무제한적인 확장성과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자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사회적 생명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영세상인, 소규모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이용후기, 리뷰 등을 통한 인격권 침해는 정신적 피해를 넘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이버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덕성과 자기 통제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차형근 법무법인디지털밸리 변호사

I. 들어가면서

○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 중 “공익” 및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번 현재의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 되어 검찰은 2010년 12월 3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씨에 대한 항소를 취소했다.

이런 현재의 결정에 대한 찬반론이 있다. 현재의 결정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지만, 허위사실의 유포가 가져오는 피해가 자주 현실화됨을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결정문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 취지를 설명하고, 위헌결정으로 인해 보호받게 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밝힐 뿐더러 현재 결정이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및 쟁점

○○○

1. 사건의 개요

가. 2008헌바57 사건

청구인 김○○은 2008. 6. 2. 진보신당 홈페이지(www.newjinbo.org)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이명박탄핵투쟁연대카페(cafe.daum.net/antimb)에 각 접속한 후,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집회 진압 과정에서 시위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각 기재하고 청구인이 직접 조작한 합성사진을 게재함으로써 2차래에 걸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896호) 계속증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2420).

그 후 법원이 2008.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8. 12. 1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9헌바88 사건(이른 바 “미네르바 사건”)

청구인 박○○은 2008. 7. 30.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포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하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만 명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고, 2008. 12. 29. 위 토론방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하에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

조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04) 계속중 위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가258).

법원은 2009. 4. 20. 위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203), 위 청구인은 2009. 5. 14.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쟁점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기통신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형사처벌법규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는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되는데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허위의 통신’이 명확한 개념인가?

②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규제를 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고 있고, ‘허위의 통신’에는 ‘송신’ 외에 ‘수신’까지 포함되는바, 과도한 규제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③ 평등권 위반 여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쇄매체에 의한 허위사실의 적시에 비해 인터넷 등 통신매체에 의한 허위사실의 적시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아님에도 내용으로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1.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개념의 추상성

“공익”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 유지”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자유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② 개념의 상대성

“공익”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공익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판단주체에 따라 공익인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존재함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공익의 양의 불명확성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되는 행위가 어떤 공익에 대하여는 촉진적이면서 동시

“‘공익’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에 다른 공익에 대하여는 해가 될 수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익간 형량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 ‘허위의 통신’ 부분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래 입법취지가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충의견)

1961. 12. 30. 전기통신법 제정 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거의 같은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조항이 처음 입법될 당시에 실제 사용된 전기통신설비는 전보와 전화 정도였고, 그 당시에는 전보와 전화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형벌로써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도 없었다.

나아가, 구 전기통신법이나 구 전기통신기본법이 통신시설의 설치 관리 등 기술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었던 점이나 동법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고자 한 데 있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 제정된 이후 40년 이상 실제 적용되지 아니한 채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내용상 허위의 통신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이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불명확성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법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누적되어 판례가 확립된 경우 신뢰성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장시간

에 걸쳐 사문화된 법률조항이 갑작스레 적용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돌출적인 최초의 법률 적용 사례가 표준이 되어 법률조항에 관한 일반적 기대나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는 1차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이라는 문언이 가진 추상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 소수의견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전기통신법 47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① 일반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처벌법규에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② 공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인 ‘허위의 통신’은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의미는 명백하지만, 포섭되는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허위의 통신’ 가운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와 같은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공익’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또한 여러 법률에서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한편 공익을 ‘해할 목적은 오로지 공익을 해할 목적 일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행위의 주요 목적이 공익을 해하는 것인 때를 의미한다. 결국 ‘공익’ 개념이 지닌 약간의 추상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고, 또한 ‘공익’ 개념이 현재 우리의 입법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의미하는 바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허위의 통신” 부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허위”는 참이 아닌 것, 거짓을 의미하며, 그에 비추어 “허위의 통신”이란 내용이 거짓인 통신 또는 명의(발신인이나 수신인)가 거짓인 통신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일본 전파법 제106조 제1항 중 “허위의 통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일본 학계의 입장 또한 위와 같다.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서의 ‘허위’ 개념의 용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에서 ‘내용이 거짓인 통신’이 배제된다는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실무적으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용이 거짓인 통신’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둘러싼 우리 학계의 논의 역시 대체로 ‘허위의 통신’이 ‘내용이 거짓인 통신’을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 입법취지에 관하여는 역사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으로, 이중기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법익형량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등이 거론되는데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더러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으며 소수의견은 동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용하는 수단의 특수성, 즉 강력하고 신속한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구 전기통신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통신의 내용에 따른 규제를 정한 것이 법의 목적이나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결국 관련 법률조항의 체계적 해석 및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가 거짓인 통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자의적 법해석·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하기는 어렵다.

2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가. 다수의견(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공익’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만약 허위의 통신에 의하여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면, 그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시하여 규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행위 자체로 명백하지 않은 때는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포괄적 규제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소수의견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규제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서 '입법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한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을 맞추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할 때 문제가 없다.

3. 평등권위반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이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고 소수의견은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의 통신의 경우, 정보수신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특성 등에 관계없이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허위사실의 전파속도나 파급효과가 인쇄물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양자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의견으로 평등권 위반주장을 배척하였다.

4. 소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으로 ①이중기준의 원칙 ②명확성의 원칙 ③과잉금지의 원칙 ④법익형량의 원칙 ⑤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등이 거론되는데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더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으며 소수의견은 동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특히 다수의견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다른 점을 검토하기에 앞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Ⅳ. 헌법재판소 결정이 제기하는 문제점



1.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이 보호하는가?

다수의견이나 소수의견 모두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

또한 다양한 허위사실의 표현 가운데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이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표현이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국가의 개입이 1차적인 것으로 용인되고,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중요한 기본권을 떠나서는 규명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¹⁾ 그러나 '허위사실의 표현'이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동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과는 보호법익이 개인의 명예로 특정되어 있고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2008헌바157 사건과 2009헌바88 사건에서 검찰은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면 전기통신기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서의 사람은 형법제307조에 서와 같이 자연인과 법인에 한하며 법인적 없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²³⁾

2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법률적 제재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 문제는 다수의견이나 소수의견이 어떠한 이념적 바탕하에 결론을 도출하였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수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은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과 사상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하여 생존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수의견의 논거는 존 밀턴의 「아레오페지티카」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구에 기원한다.

“진리와 허위가 대결하게 하라. 자유롭게 공개된 대결에서 진리가 불리한 편에 놓이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진리의 편이 반드시 승리하고 생존한다. 권력은 이러한 선택의 싸움에 일체 개입하지

말라. 설혹 허위가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일이 있더라도 선택과 진위가 자유롭게 싸워간다면 마침내 선과 진이 자가 교정 과정을 거쳐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리라.”

그러나 소수의견은 위와 같은 자유방임주의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파의 유통속도와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넓어지고 있으며, 매체의 연계성과 복합화로 인하여 유통된 정보의 최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 더구나 정보의 다변화와 복잡성 때문에 통신상의 논쟁에 의하여 허위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과정에 의하여 진실이 발견되었다 하여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이미 발생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나 훼손된 공익이 회복되기 어렵다.

이처럼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진 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도 통신이용자들에게 의하여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교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허위사실을 둘러싼 장시간의 논쟁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하여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다수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일지라도 법률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소수의견은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방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이념적 바탕인 존 밀턴의 자유방임주의에 대하여는 예전부터 비판이 있어왔다.

존 밀턴의 시대에도 누구에게나 사상의 자유가 주어

1) 헌재2009 5.28 2006헌바09, 판례집 21-1 하, 545, pp.559~560 참조

2) 대법원 1969. 12. 23. 선고 429 형상539 판결의 입장이나 반대학설은 법인적 없는 단체라 할 자라도 법에 의해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통일된 시를 형성할 수 있으면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3)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국가기관이 원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지만 개인적 법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조문의 취지나 인격권의 항유주체가 아닌 보장주체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은 민형사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은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하여 생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일정한범위의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하여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배우고,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였는데 그러한 현실은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상업적인 시장처럼 정보의 시장도 구조적으로 권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언론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무력한 경우보다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세기 말 미국에서 등장한 정보시장은 이른바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정부의 개입을 가능한 한 허용치 않는 이 정보시장은 언론기업의 집중이라는 상황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정보의 다양한 유통은 그 실제에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정부에 의한 언론의 자유 제약보다는 소수에 의한 언론기업의 소유에서 파생되는 사적인 언론 제약이 더욱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행정부에 의한 검열이 아니라 언론기관에 의한 사적 검열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정부가 소극적, 부정적인 역할에서 긍정적인(affirmative) 조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Jerome A. Barron 교수 등은 보고 있다. 즉, 미디어 접근권이 그 대표적인 이론인데, Barron 교수는 불균형적인 언론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간신문에 의견광고를 사서 실을 수 있는 권리」와 「공적인 인물들이 명예훼손을 당하면 신문에

반론권을 실을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

우리는 최근에 한 유명인이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을 졸업하였는가 여부를 놓고 1년여간 싸우는 과정을 지켜 보았다. 결국은 수사기관의 힘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사람은 진실앞에서도 당당하였고 또 동조자 수를 불려갔다. 그사건에서 유명인은 형사법적으로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결국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파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다만 그 법률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잘못 이해하면 ‘공익’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결론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공익’ 개념을 사용하는 법조문이 과연 합헌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특히 형법 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행위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 라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민사판결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먼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구체적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인가 및 사회적 평가의 저하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 측의 항변사유로서 매 판결마다 판단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때의 공공의 이익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

4) 염규호 (1994), 미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언론중재」, 여름호, p.40 참조

가. 구체적 사례⁵⁾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1995. 5. 8. 저녁 7시 KBS 제 1TV의 뉴스네트워크 시간에 아래 ①항의 기사를, 피고 주식회사조선일보사가 같은달 9일 조선일보사회면 중단 '색연필'란에 『면접女大生性희롱 변호사간통被訴』란 제목으로 아래 ②항의 기사를 방영·게시한 사실, 당시 원고의 처인소외 김○○이 같은달 8일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이혼과 아울러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방영내용

여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하러 온 여대생을 성희롱해서 말썽을 빚었던 배모 변호사가 간통 혐의로 부인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배변호사의 부인 김모 씨는 서울지방법검찰청에 낸 소장에서 배씨가 지난 87년 지방의 판사로 근무할 때 알게 된 여대생과 2년 전부터 동거에 들어갔으며, 최근에는 동거녀를 집까지 데리고와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과립치한 행동을 해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기사내용

서울변호사회 소속 P변호사(42)의 부인 김모 씨(40)는 8일 남편과 장모 씨(28·여)를 간통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P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의 지급과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박탈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을 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82년 결혼한 남편이 87년 4월 판사 시절 여대생 장 씨를 만나 사귀어 오다 2년 전부터는 아예 동거 생활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변호사는 "87년 장 씨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돼 김 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지만 김 씨가 이를 거부해 현재 합의하에 별거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P변호사는 91년 변호사 개업 당시 여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하러 온 여대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93년 변협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공익성에 관한 판단

위 언론보도들은 공익성이 있는 기사인가? 1심은 다 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하였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공인은 아니더라도,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에 관한 언론보도가 그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겠으나, 그 보도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그에 부수해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이고, 그 보도의 동기나 목적도 변호사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데 있기 보다는 변호사 지위의 공성 또는 변호사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높이고 변호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있다면, 위와 같은 보도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보도라고 볼 수 상당하다.

이 사건 각 기사는 변호사인 원고가 여대생에 대한 '성희롱' 시비로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그 처로부터 간통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취지로서, 그 내용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의 수행이라는 변호사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①이 사건 각 기사는 전체로 보아 변호사가 사무실 여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 과정(이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업무이다.)에서 벌어진 사건을 소재로 삼아 변호사의 도덕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원고의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생활 영역을 보도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들이 원고의 '간통 피소'를 계기로 이 사건 각 기사를 방영·게시한 것은 단지 원고가 변호사이고 간통 사건이 지닌 선정성 때문에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가 아니라, 원고가 1년 전에 위와 같

5) 1심: 서울지방법원 1992. 2. 3. 선고 987합38307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1999. 12. 23. 선고 99나3432 판결

3심: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

“결국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파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다만 그 법률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명확성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사무실 여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성희롱 사비로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은 바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원고의 사례가 변호사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적합한 소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③이 사건 각기사의 형식과 구성,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자체만을 간략하게 보도하는데 그치고, ‘성희롱’이나 ‘간통 사건’에 으레 뒤따르는 선정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를 ‘배도 변호사’ 또는 ‘P변호사’라고만 지칭함으로써 원고의 신원이 노출됨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려고 노력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기사는 원고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시청자 또는 독자들의 선정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변호사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변호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이 상당하다(이 사건 각기사가 다소 사실을 과장한 부분이 있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달리 평가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이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공익의 목적에서 그리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2심 및 3심은 공익성을 부정하였는데 그것은 기사 작성이 비방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사소송법상의 규정이었다.

“이 사건 각기사의 작성 및 보도 경위, 이 사건 각기사의 내용과 양 및 그 표현 방법, 특히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배의 기사 내용은 원고 가간통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거나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등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흥○나 피고 한국방송공사 소속의 위 성명불상의 법조 출입 기자가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되게 한 행위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이 상당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는 위와 같은 보도 금지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위헌이라고 본 이유를 경험하였다. 1심 판사와 2, 3심 판사 간에 같은 사안을 놓고 ‘공익’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였을 뿐더러 가사소송법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공익간의 형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공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법률이 총 315개이고 조문단위로는 823조문에 달하는데 이 조문들은 모두 명확성을 결한 조문이라고 볼 것인가? 특히 형법 310조는 어떠한가?

외관상으로는 1심 판결과 2, 3심 판결 간에는 ‘공익’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개념의 상대성, 공익간 형량의 불명확성이 보이지만 상세히 1, 2심 판결을 비교하면 1, 2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동일한 사실이 아니고 2심 판결은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추가적으로 피고 회사들의 기

자들이 사실확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사정들과 2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가사소송법 규정이 정하고 있는 가사사건의 비공개 원칙을 피고회사들이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는 사정을 추가하여 공익성을 판단한 결과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공익개념이 상대성 때문에 생긴 결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언급된 공익에 대하여는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을 뿐더러 대법원이 나름대로의 기준⁶⁾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적다. 이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수십 년간 잠자고 있다가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과 명확히 비교되는 점이다.

4. 새로운 제재입법 입안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 필요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1항이 위헌이 된 지금에 새로운 제재입법을 만든다면 어떤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다수의견이 지적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에 도움이 되는 헌법재판소의 다음 결정을 보기로 하자.

동 결정은 근로기준법 110조 중 ‘정당한 이유’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는

‘공익’만큼이나 개념의 추상성, 상대성이 문제된다.

“법률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불명확한 법률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수범자에 대하여 ‘공정한 경고’를 흠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수범자는 준법정신을 가진 사회의 평균적 일반인을 의미하는데, ① 준법정신을 가진 평균인은 애매한 법문을 자신이 해석할 수 없을 때 자신만의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나 당해 법령에 보다 정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 등의 의견이나 조언을 직접, 간접적으로 듣거나 참조하여 자신의 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정의 금지규정 내지 처벌규정의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행동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러한 결론이 보편성을 띠어 대부분 같은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다면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도저히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그 규정은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령 특히 형법법규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법령의 특성에 맞추어 그 일반인이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통상 어느 정도 법적 전문지식에 의한 보완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명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명확성 원칙의 준수 여부는 ② 문제된 법령의 문구가 확실하지 않음으로써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적용을 가저울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서도 판별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그 집행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한다

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 237호 판결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란 ‘적사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사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사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사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중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96. 10. 11. 선고 95다 36329호 판결 등).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 510호 판결 등) 그 범위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진다.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부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 3309 판결)

헌법재판소 2005. 3. 31. 결정 2003헌바2 사건

“다수의견이 ‘공익’에 대하여 불명확하다고 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으며 ‘허위의 통신’이 오히려 불명확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집행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제시하여 그 법령이 원래 의미하고 목적하는 것 이상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③ 당해 법령의 성질 및 규제대상 등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최고의 상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명확성 판단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반 추상적 표현을 불가피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시의 방법,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는 방법, 주관적 요소를 가중하는 방법 등으로 보다 더 구체적 입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지 여부가 헌법위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 110조 중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법문상 요건이 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그것의 의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 그 성과가 쌓여있고 다수의 행정해석과 관련 판례들이 풍부하게 집적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험과 사례의 축적에 의하여 이제는 그 의미 내용의 전체적 윤곽이 형성되고 구체적 사안들에서 특히 법률전문가들에게는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고 무엇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판단하기에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법문상으로는 ‘정당한 이유’라는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여쭙하

는 것이 가능한 정도라고 할 것이어서 수범자인 사용자가 해고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고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하여 법적 지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⁷⁾

위 결정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수의견이 ‘공익’에 대하여 불명확하다고 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으며 ‘허위의 통신’이 오히려 불명확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7) 법재판소 2005. 3. 31. 결정 2003헌바2 사건

2010년도 국내 언론관계 판결동향

한유수 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

I. 서론

이 글에서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언론에 관한 주요판결(대법원과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의 판결을 포함한다)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에 관한 판결이라 함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침해에 대한 언론기관의 책임에 관한 판결이 주가 될 것이나, 언론의 자유넓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관련판결도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검색되는 판결 등도 함께 살펴보았다.

지난 1년간 전체적으로 보아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새로운 법리를 전개한 판결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더욱 구체화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예컨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로 인한 명예훼손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여러 대법원 판결이나 와이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나아가 방송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이른바 취재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에 관한 정보를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인정함으로써 방송사 등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판결도 나왔다. 한편, 종교분야에 대하여 비판의 허용범위를 넓게 보는 기존의 판례 입장을 확실히 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하급심에서는 공

인에 대한 비판의 범위를 확대하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모멸적 표현은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종래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판결들이 나왔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멍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결정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표현 규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경시켰고,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선거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다수의 결정 및 건강기능식품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동향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II.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1.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이론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므로(형법 제307조제1항)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범위가 넓다. 이는 공인에 대한 비판과 공적 사항에 대한 활발한 문제제기를 본령으로 하는 언론의 기능과도 상충된다.

그리하여 우리대법원은 일찍이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¹⁾에서,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인격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켰다.

나아가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1) 99헌바1392

37531판결²⁾은 “당해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할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의 인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획기적인판결을 한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하여, 그 후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1) 죄와 우의 이념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 되며³⁾, (2)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고⁴⁾, (3)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

는 아니된다고 판시함으로써⁵⁾, 공인에 대한 비판 또는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표현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2 2010년도의 명예훼손관련 판결

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 또는 드라마에 서의 명예훼손

(1) 영화, 드라마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먼저 1945년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이라는 한국 현대사를 모델로 삼아 창작, 연출한 드라마 ‘서울1945’의 제 34, 35, 38회 방영분 중 일부 장면이 마치 장택상, 이승만이 친일파로서 친일경찰인 박○○을 통해 정판사 사건을 해결하고, 이승만이 여운형의 암살을 암시적으로 지시하고, 박○○이 이에 부응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처럼 묘사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이승만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이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판결⁶⁾은, “이미 망인이 된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에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예술작품의 창작과 표현 활동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위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영화, 드라마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또한, “다만,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경우, ... 그 필연적 현상으로 연출자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가적 해석 및 평가와 예술적 창의력

2) 공2002상, 522.

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4613 판결(공2003상, 425)

4)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공2003하, 1688)

5)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162494 판결(공2003하 1770),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공2003하, 193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공2004, 594)

6) 공2010상1059

을 발휘하여 허구적 묘사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마련이라 할 것이고⁷⁾,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주로 하는 기록물이 아닌 허구적 성격의 역사드라마의 경우 이를 당연한 전제로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위 허구적 묘사가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고 있는 한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위라거나 연출자에게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위에서 본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⁸⁾

이 판결은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에 다소 허구적 사실이 가미되더라도 함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역사드라마등에서의 표현의 허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영화 및 드라마에서의 상당성 판단

한편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즉,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⁹⁾은 영화 ‘실미도’에서 당시 대북침투목적의 특수부대 훈련병들 전원에 대하여 살인범이나 사형수 또는 사회의 낙오자들로 표현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⁰⁾

나이가 위 판결은 “영리적 목적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또한 상업영화를 접하는 일반 관객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유지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인 점도 그 판단에 참작할 필

7) 위 판결은 그 이유로, “역사적 사실은 당대에 있어서도 객관적 평가가 쉽지 아니한데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실제적 진실의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는 관계로 이를 소재로 드라마를 창작, 연출함에 있어서는 명백하여 다툼이 없거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단편적 사실만을 묶어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전개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 같은 드라마에 대한 같은 취지의 민사판결로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미간행) 참조

9) 공2010하 1622

10) 이 부분 판사는, 백범김구 선생 암살사건의 논픽션 드라마에서 배우로 묘사된 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사가 그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공998상866)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요가 있다”고 판시하여, 특히 상업영화의 경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각색은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다. 또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¹¹⁾ “이러한 상업영화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정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진실이라고 광고·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광고홍보행위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나. 종교적 비판에 대한 보호 범위

한편, 종교적 비판행위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행위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취지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즉,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¹²⁾은, 특정교회와 소속 목사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

의 광고를 종교신문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보고서등을 작성하여 신학대학원 학생과 교단 총회에서 배포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 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 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보고서 등의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¹³⁾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기초하여 특히 종교적 비판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는 특별히 종교적 언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판시는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¹⁴⁾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¹⁵⁾,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¹⁶⁾,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¹⁷⁾,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¹⁸⁾ 등에서 누차 거듭된 것으로 대법

11) 그 이유로서, 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사실로 묘사하여 통상적으로 광고·홍보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12) 미간행.

13) 원상에서는 보고서의 작성 배포만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광고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14) 집44(2)민172 공996하, 2983. 이는 우리나라 기독교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그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인 자들이 다른 교단 소속의 기도원 운영자를 비판한 행위 및 그에 맞선 기도원 운영자의 광고행위는 원고를 ‘고소 질하는 마귀’에 비유하는 등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15) 공997하, 2882.

16) 미간행. 다만, 이는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 배포 상대방, 문장의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드문 사례이다.

17) 공2007상, 772.

18) 미간행.

원에서 다시 한번이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 공직자 등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

(1) 명예훼손 책임을 부인한 판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의혹제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그 책임의 인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는 2010년의 여러 판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¹⁹⁾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학원 및 그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한편, 하급심판결도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방송을 제작·보도한 문화방송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 등을 상대

로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법 2010. 2. 9. 선고 2009가합17586 판결²⁰⁾은, 위방송에 다소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는 쇠고기 수입업자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데 있지 않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와 사이에 기존 수입위생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한 것을 비판하는 데 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방송보도가 영업방해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위방송이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²¹⁾ 또한, 위방송 중 다운너스, 아레사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허위이지만 관련 피해자들이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국회위원 박 모씨가 측근을 통하여 한 사학재단 소유주에게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요구하여 전달받았다는 뉴스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2010. 2. 16. 선고 2008가단96240 판결²²⁾은, "원칙적으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경우에 비하여 언론권의 보호영역권이 더 넓어지도록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

19) 공2011상 70.

20) 각공2010상, 553.

21) 미간행 상고되어 대법원 계속중.

22) 언론중재2010년 여름호 142면.

이라고하는 언론기능의 보호영역권이 좁아지게 만드는 경계선을 함부로 설정해서는 안된다. ... 이 사건에서 피고OO방송이 이 사건 보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 사건보도가 원고에 대해 악의적인 면을 가지거나, 아주 과도하게 공격적인 면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위 보도의 위법성을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해 970명의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시켜 연 35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였고 ‘공기업선진화우수기관’이 되기 위하여 노조에 승진약속을 하였다는 일간신문의 기사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서울서지법 2010. 3. 16. 선고 2009가합8789 판결²³⁾은, 위 승진에 따른 원고의 추가 부담 인건비의 액수가 연간 총 35억 원이 아니라 24억 원 정도라 하더라도, 위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이상 인건비 액수의 차이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사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노조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및 공지사항, 정원 관련 규정, 직원 인원수의 현황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었고,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원고의 해명을 보도하였으며, 다른 언론매체와 국정감사에서도 위 기사내용과 비슷한 지적이나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사례

그러나 공인 또는 공적 사항에 대한 비판이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경우에는 언론사의 책임을 지우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즉, 모 여당국회의원이 가명으로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아

고라)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잡지 기사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0. 2. 17. 선고 2009가합518 판결²⁴⁾은, 위 기사가 허위임이 인정되며,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고 그 내용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는 인터넷 상에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가 댓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은 위 글 게시자와 무관함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해명하였고, 위 잡지의 배포 직전에도 잡지사에 연락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담당 경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으며, 위 잡지나 기사의 성격상 신속하게 일반에게 공개할 것이 요청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야당 대표가 장관 재직 시절 사기업체 사장으로 부터 공사 사장 후보 추천 등의 대가로 측근을 통해 2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일간신문의 보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147092 판결²⁵⁾은, 위 기사를 작성한 기사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검찰 내 취재원으로부터 위 사기업체 사장이 원고의 측근인 강모씨에게 2만 달러를 교부하였고, 위 측근도 검찰 조사 시 이를 시인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위 강모씨에게 직접 확인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나아가 증인 자신도 원고가 2만 달러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처럼 기사가 신원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정보원의

23) 미간행, 항소심서 조정성립.

24) 미간행, 상고되어 현재 대법원 계속중.

25) 미간행, 판결선고 후 소추화로 종결.

말만 믿고 2만 달러 수수의 당사자인 위 측근이나 원고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가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국가에게 명예훼손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한편, 개인이 아닌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상급심에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즉, 시민운동가인 박모씨가 한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사찰을 하였다고 진술한 데 대하여 국가인 대한민국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²⁶⁾은, 국가는 기본권보장 의무수범자이지 그 향수주체가 아니며,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국가가 당연히 이를 수용하여야 하고, 형법상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는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아무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적격을 인정하면 언론가 봉쇄되고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국가도 부여된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며,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

방과 같이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보호를 외면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는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영미에서는 판례법상 국가가 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²⁷⁾ 대륙법계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가도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한 명예훼손소송의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방송사의 취재결과물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허용여부

방송사의 취재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의 측면에서는 널리 허용되어야 하지만, 취재결과가 제한 없이 외부에 공개된다면 취재원이 취재를 꺼려하고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등 방송의 자유 및 독립에 대하여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대19038 판결²⁸⁾은, 한국방송공사(KBS)가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실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제작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히를 노렸나” 인 방송

26) 언론중재 2010년 겨울호 162면, 항소심 계속중

27) Robert D. Sack, *Sack on Defamation* (PLI Press, 1999), §2.10.1 n.554; Rodney A. Smdia, *Law of Defamation*, (Clark Boardman, 1990), §4.11[4] at 4-56; *New York Times Co. vs. Sullivan* 376 U.S. 254, 287 (1964) (dicta) 이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안사, 2008 60면과 국가가 명예훼손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향유하는 것과의 균형상 그런 것이라도 한다(Smdia, at 4-57). 그리하여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통상 관련 공무원이 자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위 *New York Times Co. vs. Sullivan* 사건도 경찰이 시위를 과잉진압하였다고 비판한 의견 광고에 대하여 경찰책임자가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8) 공1998상 865.

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청구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을 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와의 관계나 시청자와의 관계,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형평성·중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한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로 하여금 정보공개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방송사의 경영·영업상의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방송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비공개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취재 및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판결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국민이 행하는 정보공개청구의 측면에서 내려진 판단일 뿐, 특별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법원이 발하는 방송취재물에 대한 제출명령이나 압수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²⁹⁾

4. 모멸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단순히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³⁰⁾

그런데 어떤 표현이 이른바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에 관하여 선례가 될 만한 하급심 판례가 있었다.

즉, 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개그우먼 김 모씨가 자녀의 성본명 경 후모(母)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어느 스포츠 신문 기지와 인터뷰한 내용에 관하

29) 취재물이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김사철, "언론사의 압수·수색", 언론관계소송(한국법행정학회, 2007) 508면 참조

30)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87524,37531 판결(집50(1)민43 공2002상 522) 등 참조

여, 『김OO발언의 반인륜성과 무자비한독선』이란 제목으로 '이런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들 때문에 세상 살기가 더 피곤하다'는 취지의 칼럼을 보도하고, 『친노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까?』 등의 제목으로 원고에 대하여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방송인' 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법 2010. 2. 17. 선고2009가단168078 판결³¹⁾은, 위 칼럼의 주요 내용은 원고의 발언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서 의견 내지 논평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칼럼 중 '반인륜적독선', '독선과 패륜',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 라는 등의 표현은 원고에 대하여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면서, 반면 원고에 대하여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방송인' 이라고 표현하였다는 부분은 위 기사 및 칼럼이 원고의 그동안의 활동을 기초로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친노연예인'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에 대한 논평 혹은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유명한 진보논객 진 모씨가 그를 비판하는 변 모씨에 대하여, 인터넷의 모정당 게시판에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³²⁾을 키워줄까요? 방송과 인터넷 까는 일에 내세우는 거죠. 조중동이라고 명칭하겠습니까?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모를 정도로 명칭하게 충성할 사람은 그밖에 없으니 싹 맛에 갖다 쓰는 거죠."라

는 글을 게시하고, 인터넷포털의 자신의 블로그에 『비운 드보르잡³³⁾의 근황...』이란 제목으로, "요새 통 얼굴 보기 힘드네. 난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개집으로 숨어버렸나? 비운 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라는 글을 게시한데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0. 7. 16. 선고2010노615 판결³⁴⁾은,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 중 특히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모를 정도로 명칭하게 충성할 사람', '싹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운 드보르잡', '개집'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³⁵⁾

III. 초상권 침해 등



1. 초상권 침해

우리 대법원은 초상권의 침해에 대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31) 미공간 항소심에서 청구포기.

32)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의미한다.

33) '변화재 듣보잡'을 말한다.

34) 미간행 상고되어 현재 대법원 계속중.

35) 나야기 위판결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근거 없는 비난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박하려는 취지에서 위 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것으로, 위 모욕적인 표현들이 반복되고 위 글 전체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글을 진기함에 있어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³⁶⁾

그런데 근래의 보도는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바 어떤 경우에 초상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는지가 문제되는데,³⁷⁾ 이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만한 하급심판례가 있었다.

먼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보도한 것이 초상권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법 2010. 1. 27. 선고 2009가합 81994 판결³⁸⁾은, 피고들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게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하면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 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반면, 피고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설 연휴 실시간 교통상황을 보도하던 중 원고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장면을 3초간 방영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산지법 2010. 3. 26. 선고 2009마18455 판결³⁹⁾은, 위 프로그램

중에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이나 긴급성이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직업상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그 모습이 노출된다는 것과 함부로 촬영되어 방송에서 공표되는 것을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에 관하여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침해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그대로 방영한 점에서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촬영장소가 사적 공간이 아니고, 원고를 미행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도 아니며,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자이크 등 처리는 방송 효과를 저감하며 언론사에도 큰 부담을 지우는 점에서 위 판결의 판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⁴⁰⁾

2. 퍼블리시티권 침해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 등을 허락 없이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어 왔던 바⁴¹⁾, 2010년도에도 이에 관한 하급심판례가 있었다.

즉, 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가합 245 결정⁴²⁾은,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3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대6280 판결(주542)민, 37; 공2006하 1897).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원고들의 후유장애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 몰래 원고들의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때때로 찍는 차량으로 뒤따라가 사진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37) 이에 대하여는 한우수, “사진의 무단촬영·사용과 민사책임, 민사재판의 제문제 8편(민사실무연구회, 1994), 209면 이하; 함석헌 “초상권”, 언론관계소송(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45면 이하 참조.

38) 언론중재 2010년 봄호 122면 확정.

39) 언론중재 2010년 여름호 151면 확정.

40) 그런 취지에서 위 판결의 1심판결인 부산지법 2009. 9. 22. 선고 2009가합 23128 판결(언론중재 2010년 여름호 153면)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고, 독일의 예술자권법 제 23조 제 2항 제 2호는 인물이 단지 경치 기타 장소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은 전파와 공개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박용상, 명예훼손법, 한양사, 2008 547면).

41) 한우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상)(하)”, 인권과 정의 242/243호(대한변호사협회 1996.10/11), 28면/109면 이하 참조.

42) 각공2010상 87.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라며,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그러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⁴³⁾

이처럼 초상권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관련업계에서 아직 이들 권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IV.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인터넷상의 허위내용의 글 게재와 관련하여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획기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즉,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결정⁴⁴⁾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안⁴⁵⁾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에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간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사하였다.

나아가 5인의 재판관(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보충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 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 일뿐인데,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을 처벌한다면, “‘공익’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고,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로 하여금

43)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피신청인들이 이전에 신청인 선수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선수들의 성명, 선수시절 소속구단 및 수비위치 등 선수자들의 인적 정보를 이 사건 게임에 등장하는 야구선수 캐릭터에 사용하였다가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자 이 사건 게임의 다른 요소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선수들의 성명만을 이 사건 각 이니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이용자들에게 선수들의 성명을 이니셜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공자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들에게는 이 사건 각 이니셜이 신청인 선수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44) 헌재공보 17호, 132

45) 이는 피고인이 진보신당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접속하여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진압 과정에서 시위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이 직접 조작한 합성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2008헌바57)과, 피고인이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이교과’ 경제토론편에 외환보유고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글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발송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2009헌바88)에 대한 것이다.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표현행위를 억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⁴⁶⁾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무효이므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생각건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⁴⁷⁾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주장은 헌법상 보호의 가치가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면⁴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2 선거운동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11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는 공정선거를 위하여 각종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상의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가 아닌지가 문제된 여러 사안에서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즉,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

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 8879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 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 결정⁴⁹⁾은, 위 법률조항은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며, 인터넷의 특성상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되어 정보의 왜곡이 쉬운 점,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불가능한 점,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이 표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도 갖추었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명확성의 원칙이나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 768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3호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169 결정⁵⁰⁾은,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되고 불공정

46) 반면 2인의 재판관(재판관 이동훈, 재판관 목영준)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익을 해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와 같은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은 아니며, 법률상 ‘공익’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주의 목적적 공익을 해하는 것인 때를 의미하는바,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진 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도 통신이용자들에게 의하여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교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허위사실을 둘러싼 장시간의 논쟁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하여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47) 예컨대,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 및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폭력시위를 조정할 목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등과 같이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만하다.

48) 그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허위사실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한수용, 헌법학, 법문사, 2010, 707면), 의사적인 허위사실의 주장과 이미 표현행위의 시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사실주장이 금지됨은 당연하다는 견해(박용상, 명예훼손법 헌안서, 2008 316면)가 있다.

49) 판례집 22-나상, 347.

50) 판례집 22-하, 497.

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고, 이것이 후보자의 당선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바,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는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조화하기 위한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온라인 공간의 빠른 전파가능성 및 익명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이나 후보자 등의 반론 허용 등 단순한 사후적 규제만으로 혼탁선거 및 선거의 불공정성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고, 선거 관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여 사실상 선거관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비추어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의 정도가 수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⁵¹⁾

나아가, 헌재 2010. 2. 25. 선고 2008헌바10 결정⁵²⁾은,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

동을 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개정되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2항 제1호가 문제된 사안에서, “입법자가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제방식을 채택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가진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선거의 지나친 과열과 혼탁, 나아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 판단되고, 그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라는 방법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데 적합한 수단이다”는 이유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⁵³⁾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내지 선거문화의 수준을 감안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이익 중 후자 쪽에 중점을 둔 종래의 결정⁵⁴⁾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선거문화 수준의 향상 등에 맞추어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51) 또한 “유권자는 후보자와는 달리 전적으로 타인(후보자)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게시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후보자 본인이나 자기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정보의 신뢰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온라인의 빠른 전파가능성 때문에 게시물의 원칙적 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인 선거관리 및 규제가 어려우므로, 유권자에 비하여 신뢰성이 용이하여 선거관리가 상대적으로 쉽고, 허위정보에 대한 시정 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후보자 등과 유권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 및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2) 판례집 22-나 상, 175.

53) 반면 4인의 재판관(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중재,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은,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의 출마의사를 알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명함배부의 주체가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를 허용하더라도 조가 과열 및 혼탁선거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또한 후보자 자신이 명함을 배부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선거운동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후보자 간의 재정적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으며, 명함의 발행자, 책임자, 부수 등을 명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명함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추상적인데 비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위 명함배부 부분은 법외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명함배부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54) 우리 헌법재판소는 종래부터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주제, 시기, 방법을 제한하는 선거법 조항들에 대하여 대부분 합헌이라 선언하였으며(예컨대, 헌재 1995. 4. 20. 92헌바20, 판례집 7-1, 499(선거인쇄물금지); 헌재 1995. 5. 25. 95헌바05, 판례집 7-1, 826(단체선거운동금지); 헌재 1995. 7. 21. 92헌바77, 199 판례집 7-2, 112(여론조사 공표금지); 헌재 1999. 6. 24. 99헌바53(기초자치단체장 선거방송 제한); 헌재 2005. 2. 3. 2004헌바216 판례집 17-1, 184(국회의원선거기간 14일 제한); 헌재 2007. 8. 30. 2004헌바49, 판례집 19-2, 258(서신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헌재 2009. 3. 26. 2006헌바526 판례집 21-나 상 622(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헌이라 선언한 것은 공무원이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헌재 2008. 5. 29. 2006헌바096 판례집 20-1하, 270) 및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명할 수 없도록 한 규정(헌재 2003. 1. 30. 2001헌가, 판례집 15-1, 7)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2008. 6. 26. 선고2005헌마506 결정⁵⁵⁾에서,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하여 이와 비슷하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항 제5호, 제32조제1항 제3호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바,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2006헌바75 결정⁵⁶⁾은 예상과 달리,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우리 재판소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관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의 존재를 비롯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전심사절차의 경우에만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사전검열행위 자체의 범위를 헌법 제21조의 진정한 목적에 맞는 범위내로 제한하여 적용해 왔다. 이와 같이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전검열행위 자체의 범위를 제한하여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역시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신체·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영리목적의 순수한 상업광고로서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별로 관련이 없고, 이러한 광고를 사전에 심사한다고 하여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 등이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되어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표현만 허용되는 결과가 될 위험도 작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외에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도 지는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권들 간의 균형을 기하는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⁵⁷⁾

이 결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와 같이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전검열행위 자체의 범위를 제한하여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역시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 부분이다.

즉, 종래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드는 모든 표현에 미친다고 보았는데,⁵⁸⁾ 위 결정은

55) 판례집 20-1하 397

56) 헌재공보 166호 1366.

57) 나아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표시·광고 문언을 사전에 심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를 두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가 크고 광범위한 반면에 사후 제재 등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거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절차를 거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드는 표현이라도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⁵⁸⁾ 앞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드는 표현이라도 사전검열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있었으며, 선거의 공정을 중시하여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선거법조항에 대하여 합헌을 선언하는 다수의 결정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판례의 집적이 기대된다.

V. 끝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전체적으로 보아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새로운 법리를 전개한 판결은 없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더욱 구체화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즉,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방송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취재결과물 등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함으로써 방송사 등 언론기관의 취재활동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판결이 나왔으며, 종교분야에 대하여 비판의 허용범위를 넓게 보는 기존의 판례 입장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고, 하급심에서는 공인에 대한 비판의 범위를 확대하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모멸적 표현은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히는 판결들이 나왔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결정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규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경시키고 있고,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변화를 엿보게 하는 건강기능식품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한 결정

58) 헌재 2008 6. 26. 2005헌마 506, 판례집 20-1하 397, 415 참조(조대현 재판관의 별개의견). 다만 위 결정에서 조대현 재판관과 목영준 재판관은 절대적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표현배제와 표현행위를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토론 및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표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수단’ 또는 ‘우리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진중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설사한 바 있다

59) 다만 이 사건 결정에서 재판관 이강득,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과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중대의 반대이견은, 상업광고의 성격 가진 건강기능식품 광고 역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절대적 사전검열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사하고 있고, 위 별개의견은 광고심의 기구인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그 산하심의위원회는 행정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서 그 행정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2010년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조정사건전년 대비 40.0% 증가

2010년 한해 동안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역대 최고인 2,205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9년도에 비해 40.0%(632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증가폭 64.9%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2년 연속 600건 이상의 청구가 추가로 접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9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이 전체 청구의 3분의 2 차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사건 비율이 전체 사건수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전년의 181건보다 약 4.6배 이상 증가한 841건을 기록했으며, 소위 언론사닷컴이 포함된 인터넷신문의 경우도 2009년의 233건보다 약 2.4배 이상 증가해 567건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신문이나 방송이 전체 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었다.

■ 피해구제율은 79.1%로 역대 최고

2010년도 피해구제율은 79.1%로 역대 최고이다. 피해구제율은 2007년도 64.8%의 피해구제율을 보이다 2008년도(72.9%)를 기점으로 70.0%대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73.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피해구제율이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은 조정 절차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인터넷 접수, 주요 접수방법으로 정착

인터넷 접수가 1,205건(54.6%)으로 나타나 전년도 50.0%를 넘어선 이래 2년 연속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터넷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과 같은 다른 접수방법에 비해 편리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주요한 접수방법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 네이버가 203건으로 가장 많아

매체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두드러졌는데 네이버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과 네이버가 각각 189건과 163건의 사건 수를 보여 그 다음을 이었다. 방송 중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KBS-1,2TV와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총 69건의사건 수를 보여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3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의피해구제율 가장높아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은 인터넷뉴스서비스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인터넷신문과뉴스통신이 높았고, 신문이나방송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기반 매체가 인쇄매체나방송등 기존 미디어에 비해 기사삭제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 손해배상사건 최고 조정액 1,500만원

손해배상사건 중 최고 조정액은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사건으로 1,500만원이었다. 그외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660만원, 최저 100만원, 평균 220만원 정도였으며,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 최저 15만원, 평균 106만원 정도였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1,5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533만원으로, 음성권 침해는 15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 중재사건 77건 접수

2010년 중재사건은 77건으로, 전년도의 111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중재사건은 2006년도 도입 이후 2008년까지는 10건 안팎의 저조한 사건 수를 기록하다 2009년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도 적지 않은 사건 수를 나타냈다.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4건으로 70.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사제공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조정성립되거나 피해구제될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즉 중재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의사를 비교적 쉽게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시정권고소위원회, 자살관련 보도 등 총 284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 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총 746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284건의 법의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09년 253건에 비해 31건(12.3%) 증가한 것으로,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세묘사 등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결정건수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에 대한 시정 권고 결정건수는 줄었다.

◇ 2010년 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 ◇

제1장 조정신청 현황

1. 연도별 현황

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2,205건의 조정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이는 위원회 설립 이래 최다건수로, 전년도에 비해 40%(632건) 증가한 결과이다.

위원회 사건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1,000건 내외의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과 언론사닷컴, IPTV 등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2009년부터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

연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1,087	1,043	954	1,573	2,205
	전년대비 증감	204	-44	-89	619	632

2. 중재부별 현황

중재부별 현황으로는 1,62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한 서울중재부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고, 경기중재부 120건(5.4%), 경남중재부 89건(4.0%), 광주중재부 77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경우 신문사와 방송사가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한 포털 등의 인터넷뉴스 서비스사 및 인터넷신문사의 소재지도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서울	607	63.6	1,173	74.6	1,627	73.8
부산	24	2.5	15	1.0	59	2.7
대구	30	3.1	35	2.2	31	1.4
광주	46	4.8	72	4.6	77	3.5
대전	32	3.4	42	2.7	42	1.9
경기	108	11.3	103	6.5	120	5.4
강원	15	1.6	26	1.6	28	1.3
충북	19	2.0	36	2.3	35	1.6
전북	39	4.1	33	2.1	49	2.2
경남	27	2.8	26	1.6	89	4.0
제주	7	0.7	12	0.8	48	2.2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3. 청구권별 현황

2010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2,205건의 청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211건(54.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손해배상청구 773건(35.1%), 반론보도청구 171건(7.8%), 추후보도청구 50건(2.3%) 순이었다.

전체 조정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3년간 평균비율이 50.4%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는 작년에 비해 9.3% 낮아진 것임은 여전히 차순위의 높은 청구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청구와 더불어 위원회 전체 조정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청구 현황

연도 청구명	2008		2009		2010		합계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정정	481	50.4	691	43.9	1,211	54.9	2,383	50.4
반론	127	13.3	142	9.0	171	7.8	440	9.3
추후	22	2.3	41	2.6	50	2.3	113	2.4
손배	324	34.0	699	44.4	773	35.1	1,796	38.0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4,732	100.0

4.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0년도에는 전체 조정사건 중 개인에 의한 청구가 1,284건(5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회사가 416건(18.9%)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어서 일반단체 293건(13.3%), 지지체 및 공공단체가 124건(5.6%), 국가기관이 66건(3.0%), 교육기관 20건(0.9%), 종교단체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회사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 언론사가 각각 329건(14.9%)과 87건(3.9%)을 차지했다.

〈표 1-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연도 신청인유형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개인	523	54.8	847	53.8	1,284	58.2
국가기관	32	3.4	74	4.7	66	3.0
지지체·공공단체	52	5.5	64	4.1	124	5.6
일반단체	180	18.9	341	21.7	293	13.3
종교단체	11	1.2	4	0.3	2	0.1
회사	142	14.8	212	13.5	416	18.9
교육기관	14	1.5	31	2.0	20	0.9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5. 매체유형별 현황

매체유형별 현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사건 비율이 63.8%로서 전체 조정사건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7.5%나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인터넷매체 중 포털을 포함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만에 위원회 전체 조정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이나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언론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인 매체유형별 조정사건 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841건(38.1%), 인터넷신문 567건(25.7%), 신문 540건(24.5%), 방송 189건(8.6%), 뉴스통신 42건(1.9%), 잡지 24건(1.1%) 순이었다.

〈표 1-5〉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현황

신청인유형	연도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신문	554	58.1	632	40.2	540	24.5		
방송	189	19.8	459	29.2	189	8.6		
잡지	12	1.3	27	1.7	24	1.1		
뉴스통신	33	3.5	38	2.4	42	1.9		
인터넷신문	157	16.5	233	14.8	567	25.7		
인터넷뉴스서비스			181	11.5	841	38.1		
기타	9	0.9	3	0.2	2	0.1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매체유형별 조정사건을 세분하여 보면 신문의 경우, 지방일간지 대상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간신문과 중앙일간지가 많았다. 방송의 경우는 지상파방송이 종합유선방송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참고로,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사건 수의 경우 신문과 방송, 잡지, 뉴스통신 등 소위 올드 미디어 대상 사건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1-6〉 매체유형별 현황

매체유형 조정 사건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	인터넷 통신	인터넷뉴스 신문	기타 서비스
	중앙 일간지	지방 일간지	주간 신문	지상파		종합유선 방송					
				TV	라디오						
2,205	159	197	184	172	3	14	24	42	567	841	2
100.0(%)	7.2	8.9	8.3	7.8	0.1	0.6	1.1	1.9	25.7	38.1	0.1

6. 침해유형별 현황

조정사건을 주된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1,995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90.5%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109건(4.9%), 신용훼손 20건(0.9%), 프라이버시권 20건(0.9%), 성명권 4건(0.2%), 음성권 3건(0.1%)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 중 두 번째를 차지한 초상권의 경우, 전체 침해 유형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초상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해마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1-7〉 최근3년간 침해유형별 현황

침해유형	연도		2008		2009		2010	
	연도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명예		523	54.8	847	53.8	1,284	58.2	
신용		32	3.4	74	4.7	66	3.0	
초상권		52	5.5	64	4.1	124	5.6	
음성권		180	18.9	341	21.7	293	13.3	
성명권		11	1.2	4	0.3	2	0.1	
프라이버시		142	14.8	212	13.5	416	18.9	
기타		14	1.5	31	2.0	20	0.9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7.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 분류

침해유형 중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을 제외한 인격권 침해, 즉 초상권이나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등 기타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사건 136건을 침해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82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42건, 보도내용과 무관하게 자료화면으로 초상 등을 이용한 경우가 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8〉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 분류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 분류	조정사건 건수	비율(%)
동의 없이 무단공표	82	60.3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42	30.9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2	1.5
기타	10	7.4
계	136	100.0

8. 조정대상보도의분야

조정대상보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나 고발등을 다룬 사회분야가 1,417건(64.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연예 분야가 206건(9.3%), 정치·선거 분야가 179건(8.1%), 경제·산업 분야가 114건(5.2%), 보건·복지 분야가 67건(3.0%), 노조관련 분야가 52건(2.4%), 미디어관련 분야가 46건(2.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9〉 조정대상보도의분야별 조정사건수

조정대상기사분야	조정사건건수	비율(%)
정치·선거	179	8.1
국방·외교	8	0.4
경제·산업	114	5.2
사회(사건/사고/고발)	1,417	64.3
보건·복지	67	3.0
스포츠·연예	206	9.3
레저·생활	24	1.1
환경	26	1.2
종교	19	0.9
노조	52	2.4
교육	38	1.7
미디어	46	2.1
기타	9	0.4
계	2,205	100.0

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

신문잡지 등의 조정대상기사를 보도의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스트레이트기사가 1,702건으로 86.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외 사설이나 논단·칼럼, 비평등 소위의견 기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도 88건(4.5%)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적 주장에 대해 신청인이 정정이나 반론등을 청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진 기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도 16건을 차지했다.

〈표 1-10〉 조정대상 보도 유형별 현황

조정대상 기사 유형	조정사건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1,702	86.2
사설	27	1.4
논단 및 칼럼	46	2.3
인터뷰	22	1.1
외부필자 기고	22	1.1
비평	15	0.8
탐사·심층·기획보도	112	5.7
사진	16	0.8
기타	13	0.7
계	1,975	100.0

※ 방송 및 방송관련 포털 제외

〈표 1-11〉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현황

방송 장르	조정사건 건수	비율(%)
뉴스	172	74.8
시사고발	21	9.1
교양정보	28	12.2
연예스포츠	7	3.0
기타	2	0.9
계	230	100.0

방송의 경우 장르별로는 뉴스관련 보도가 172건으로 74.8%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다음에 교양정보 관련 프로그램이 28건(12.2%),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21건(9.1%), 연예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7건(3.0%) 순으로 나타났다.

10. 접수 유형별 현황

2010년 한해 신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접수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접수로 나타났다. 2010년 인터넷 접수 건수는 1,205건(54.6%)으로 나타나 신청인들은 우편이나 방문과 같은 다른 접수방법에 비해 편의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접수는 2009년(904건, 57.5%)과 마찬가지로 전체 접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조정신청의 주요한 접수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접수 유형	연도		2008		2009		2010	
	연도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방문		354	37.1	429	27.3	483	21.9	
우편		233	24.4	225	14.3	233	10.6	
인터넷		358	37.6	904	57.5	1,205	54.6	
구술		9	0.9	15	0.9	284	12.9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1. 연도별 처리결과

2010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 사건은 2,205건으로 전년에 비해 40.1%가 증가,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131건(51.3%), 조정성립 630건(28.6%), 조정불성립결정 157건(7.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49건(6.7%), 기각137건(6.2%), 각하1건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하의 경우 2009년 575건(36.6%)에서 2010년에는 1,131건(51.3%)으로 그수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원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조정성립 등으로 처리됨에 따라 원 보도 언론사의 기사를 전재한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포털을 상대로 한 사건이 자연스럽게 취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정불성립결정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기각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전체 조정사건의 약 6.7%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중재부의 결정에 동의한 건이 이의신청한 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건 당사자들은 중재부가 내리는 결정을 신뢰하여 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현황

구분 연도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100.0(%)	42.1	3.7	1.8	13.1	2.2	0.4	36.7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100.0(%)	34.2	4.2	2.5	5.6	16.3	0.6	36.6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100.0(%)	28.6	4.9	1.8	7.1	6.2	51.3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2 피해구제율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사건에서 기각,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그리고 불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피해구제(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등)가 된 경우를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피해구제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70%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73.9%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79.1%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피해구제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된 언론사들이 점차 조정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2-2〉 피해구제율 현황

조정사건 건수 [A]	가각 · 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 [C/(A-B)]
2,205	138	2,067	1,637	79.2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 / 조정건수

*조정건수 = 조정사건 수 - 가각 · 각하건수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건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건 중 동의건수 + 취하건 중 피해구제건수 + 불성립결정 후 피해구제건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에 대한이의신청 후 피해구제건수

3.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정정청구는 79.1%, 반론청구는 71.4%, 추후청구는 91.7%, 손해청구는 80.0%로 각각 조사되었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조정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쟁점이 명확하고, 판결문 등에 의해 그 입증의 용이하므로 언론사가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 80.0%는 예년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이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연도	청구명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정정	481	220	18	9	60 (1)	8	2	164 (104)	72.8
	반론	127	56	6	1	12	7		45 (29)	75.8
	추후	22	11			2	2		7 (3)	70.0
	손배	324	115	11	7	51 (2)	4	2	134 (101)	72.0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정정	691	286	46	21	50	15	2	271 (180)	76.0
	반론	142	67	4	5	3	10	1	52 (36)	81.7
	추후	41	13			2		1	25 (24)	92.5
	손배	699	172	16	13	33	232	6	227 (121)	67.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구분 연도	청구명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감	각하		추하
				동의	이의					
2010	정정	1,211	337	74	20 (1)	87 (4)	66	1	626 (489)	79.1
	반론	171	52	10	1	13	31		64 (38)	71.4
	추후	50	23	1	1	1	2		22 (20)	91.7
	손배	773	218	24	18 (1)	56 (1)	38		419 (344)	8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안의숫자는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신청인 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100%를 보인 종교단체(2건)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8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가기관(77.3%)과 일반단체(74.7%), 회사(73.8%)의 순서로 높았다. 이에 반해 교육기관(60.0%)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69.1%)의 경우 60%대의 피해구제율을 보여 평균적인 피해구제율(79.2%)보다 상당히 낮았다. 국가기관의 피해구제율 역시 평균 피해구제율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조정성립률은 종교단체(2건, 100%)를 제외하고는 교육기관(55.0%), 일반단체(36.9%), 국가기관(33.3%), 회사(28.6%), 지자체 및 공공단체(26.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이 높고 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낮았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연도	신청인 유형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감	각하		추하
				동의	이의					
2008	개인	523	221	20	6	69 (3)		13	194 (142)	75.7
	국가기관	32	13	3	2	2			12 (9)	78.1
	지자체 공공단체	52	28	1		10	1		12 (5)	66.7
	일반단체	180	70	5	8	19	5		73 (47)	69.7
	종교단체	11	5						6 (5)	90.9
	회사	142	60	6	1	22	2	4	47 (29)	69.9
	교육기관	14	5			3			6	35.7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구분 연도	신청인 유형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추하	
				동의	이의						
2009	개인	847	243	15	22	42	240	10	275 [152]	68.7	
	단체	국가기관	74	32	6	3	2	2		29 [16]	75.0
		지자체 공공단체	64	27	5	1	3			28 [19]	79.7
		일반단체	341	139	21	4	22	12		143 [99]	78.7
		종교단체	4	4							100.0
		회사	212	78	17	6	17	3		91 [70]	78.9
		교육기관	31	15	2	3	2			9 [5]	71.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개인	1,284	335	39	20 [2]	72 [4]	104	1	713 [605]	83.5	
	단체	국가기관	66	22	11	1	5			27 [18]	77.3
		지자체 공공단체	124	33	8	2	17	1		63 [44]	69.1
		일반단체	293	108	30	7	37	28		83 [60]	74.7
		종교단체	2	2							100.0
		회사	416	119	21	10	20 [1]	4		242 [163]	73.8
		교육기관	20	11			6			3 [1]	6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안의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5.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이 98.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학생, 회사원, 군인·경찰, 문화예술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경우 90.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반면, 피해구제율이 낮은 순서를 살펴보면, 조정사건수가 적은 시민활동가(6건)와 법조인(6건)을 제외할 경우, 공공기관장의 피해구제율이 40.0%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으로 교육자 59.0%,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60.0%, 국회의원 65.5%로 타 신청인 직업유형에 비해 피해구제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2-5〉 신청인 개인 직업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직업	구분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29	16	1	2	3		7 (2)	65.5	
법조인		6	2			1	2	1	50.0	
공무원		71	28	1	1	6 (1)		35 (29)	83.1	
군인/경찰		98	35	6	4 (2)	1	3	49 (44)	91.6	
기초광역단체장/의원		45	22	1	3	9		10 (4)	60.0	
정당정치인		33	13					20 (16)	87.9	
의료인		129	14	5			2	108 (106)	98.4	
문화예술인		78	10	2				66 (59)	91.0	
종교인		20	12			3	1	4 (4)	84.2	
회사원		84	48	1		3	21	11 (9)	92.1	
언론인		33	9			2	20	2 (2)	84.6	
교육자		91	33		3	10	8	37 (16)	59.0	
개인사업가		146	38	13	2	14 (2)	18	61 (43)	75.0	
연예인		2						2		
학생		182			2		17	163 (160)	97.0	
시민활동가		6	2			2		2	33.3	
공공기관장		10	2					8 (2)	40.0	
조합대표협회장		31	12	4		5		10 (8)	77.4	
기타		190	39	5	3	13 (1)	12	117 (101)	82.5	
계		1,284	335	39	20 (2)	72 (4)	104	713 (605)	83.5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88.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인터넷신문이 80.7%, 뉴스통신이 80.0%, 신문이 70.9%, 방송이 60.9%, 잡지가 5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기반 매체가 지면이나 시간상의 제약이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연도	매체 유형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신문	554	241	22	7	69 (3)	5	210 (145)	74.9	
	방송	189	77	2	5	35	9	61 (27)	58.9	
	잡지	12	5		1	2		4 (1)	50.0	
	뉴스통신	33	15	1	2			15 (15)	93.9	
	인터넷 신문	157	62	8	2	17	5	4	59 (49)	80.4
	기타	9	2	2		2	2		1	57.1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신문	632	253	40	24	50	11	3	251 (150)	71.7
	방송	459	89	5	7	20	230	3	105 (46)	61.9
	잡지	27	18			2			7 (7)	92.6
	뉴스통신	38	12	2			4		20 (18)	94.1
	인터넷 신문	233	118	3	5	14	6		87 (58)	78.9
	인터넷뉴스 서비스	181	47	16	3	2	6	4	103 (82)	84.8
	기타	3	1						2	33.3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신문	540	261	15	14	64 (2)	25		161 (87)	70.9
	방송	189	84	10	6	41	14	1	33 (12)	60.9
	잡지	24	8	3		10 (1)			3	50.0
	뉴스통신	42	10				7		25 (18)	80.0
	인터넷 신문	567	190	12	14	29 (2)	43		279 (219)	80.7
	인터넷뉴스 서비스	841	77	69	6 (2)	13	48		628 (555)	88.7
	기타	2							2	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프라이버시침해가 88.9%, 초상권 침해가 84.5%, 명예훼손이 79.0%로 각각 나타나 피해구제율이 80.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반면 성명권 침해의 경우 50.0%, 음성권 침해는 66.7%, 신용훼손의 경우는 68.4%로 나타나 평균 피해구제율(79.2%)에 비해 낮았다.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 유형의 피해구제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침해여부가 명예훼손등에 비해 분명하고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날로 제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연도	침해 유형	조정 사건 간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같은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추하
				동의	이의					
2008	명예	899	375	35	16	122 (3)	18	4	329 (222)	72.4
	신용	6	3						3 (1)	66.7
	초상권	29	11		1	3	1		13 (10)	75.0
	음성권	10	5						5 (4)	90.0
	성명권	4	4							100.0
	프라이버시	3	3							100.0
	기타	3	1				2			100.0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명예	1,457	498	63	35	86	249	10	516 (318)	73.4
	신용	6	4						2 (2)	100.0
	초상권	56	20	1	4	2			29 (25)	82.1
	음성권	5	4						1	80.0
	성명권	1	1							100.0
	프라이버시	18	5	1			6		6(4)	83.3
	기타	30	6	1			2		21 (12)	67.9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명예	1,995	591	107	39 (2)	144 (5)	87	1	1,026 (801)	79.0
	신용	20				2	1		17 (13)	68.4
	초상권	109	27	1		10	12		59 (54)	84.5
	음성권	3	1		1				1 (1)	66.7
	성명권	4							4 (2)	50.0
	프라이버시	20	3	1		1	11		4 (4)	88.9
	기타	54	8					26	20 (16)	85.7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같은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매체별 조정사건 건수 및 처리결과

매체별로 사건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인 네이버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종류
의 매체인 다음과 네이버가 각각 189건과 163건의 사건수를 보였다.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조선일
보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각각 23건과 15건의 건수를 나
타냈다. 방송 중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KBS-1,2TV와 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총 69건
의 건수를 보여 가장 많았고, 문화방송(MBC)의 경우 중앙이 25건, 지역이 26건의 건수를 보였다.
인터넷신문 중에는 디지털조선일보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노컷뉴스가 22건, 한
겨레닷컴이 17건, 오마이뉴스가 1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 예	신 용	초 상권	음 성권	성 명권	프 라이 버시	기 타	조정 상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상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중앙 일간 지	경향신문	15	15							6					9
	국민일보	2	1		1					1					1
	내일신문	4	4							4					
	동아일보	5	3		2					1	2				2
	문화일보	9	7		2					2	1	2	3		1
	서울신문	7	7												7
	세계일보	6	6							5					1
	조선일보	30	29					1		17	3	1	5		4
	한겨레	11	10				1			3	2	1			5
	한국일보	23	23							10	3		3		7
	소계	12	11						1	8					4
지방 일간 지	아시아일보	1	1												1
	내외일보	4	4							2			2		
	아시아투데이	1			1					1					
	선경일보	1	1												1
	현대일보	1	1												1
	신이일보	3	3												3
	국제신문	7	7							5					2
	부산일보	4	4							2		1	1		
	경상일보	2	2												2
	울산신문	2	2												2
	대구·경북	경북매일	1	1											1
경북일보	3	2						1	1		1			1	
매일신문	3	1						2	1			2			
영남일보	2	2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간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 예	신 용	초 상 권	음 성 권	성 명 권	프 라 이 비 시	기 타	조 정 성 립	자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방 일간 지	일간대경북	1	1							1						
	경도일보	3	3							3						
	광주매일	2	2								1				1	
	광주일보	1	1													1
	무등일보	3	3							2						1
	전광일보	5	5								2	3				
	전남매일	2	2							1						1
	전남일보	2	2									1				1
	호남매일	1	1							1						
	호남신문	1	1													1
	호남일보	1	1							1						
	광남일보	6	6							3	2					1
	남도일보	4	4							1						3
	일간희망보	1	1													1
	희망중앙매일	1	1													1
	대전일보	2	2							2						
	충도일보	3	2					1		2			1			
	충청신문	2	2							2						
	중앙매일	2	2							2						
	대전투데이	1	1													1
	충청시대	1	1							1						
	경기도민일보	4	4							3						1
	경기신문	1	1							1						
	경기일보	3	3									2				1
	경도신문	2	2							2						
	경인일보	4	4							2	2					
	수도권일보	4	4							1		2				1
	시대일보	2	2													2
	우리일보	4	4							1						3
	인천일보	1	1													1
	중부일보	6	6							2						4
	전국매일	5	5							1		3				1
	수도일보	2	2							2						
인천신문	1	1													1	
오늘신문	2	2							1						1	
인천경향	2	2							1						1	
경인종합일보	1	1							1							

매체이칭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 상립	직면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방 일간지	강원	강원도민일보	1	1							1				
	강원일보	2	2						2						
	충북	충북일보	1	1											1
		충청일보	2	1				1				1			1
		한빛일보	3	3						3					
		충청타임즈	7	7						5					2
		충청투데이	1	1						1					
		대전북신문	5	5						4					1
	전북	전라일보	1	1						1					
		전북도민일보	1	1											1
		전북일보	5	5						1		2			2
		전북중앙신문	2	2						2					
		전주매일	2	2						2					
		전북매일	2	2											2
		전북연합신문	2	2											2
		전주일보	1						1	1					
		새만금신문	2	2											2
		경남	경남도민일보	9	9						2	2			
	경남매일		4	4						4					
	경남신문		4	4						4					
울산매일	1		1						1						
경남연합일보	2		2						2						
매일경남	4		4						3					1	
창원일보.com	2		2						2						
제민일보	1		1								1				
제주	제주일보	2	2						2						
	한리일보	4	4						4						
	소계	197	190		1			2	4	100	8	18	7	64	
경제지	매일경제	5	5						1			2		2	
	서울경제	1	1											1	
	한국경제	9	9						1		4			4	
	헤럴드경제	3	3						2					1	
	머니투데이	6	6						2			2		2	
	소계	24	24						6		4	4		10	
스포츠지	스포츠포스트	2	2						2						
	소계	2	2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 예	신 영	초 상 권	인 상 권	성 명 권	프 라 이 비 시	기 타	조 정 상 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특수 일간 지	전자신문	2	2							1					1
	이투데이신문	2	2									2			
	소계	4	4							1		2			1
무료 일간 지	데일리노컷뉴스	4	4							4					
	데일리포커스	1			1										1
	소계	5	4		1					4					1
중 앙 방 송	KBS-1,2TV	2	2							2					
	KBS-1TV	32	27	3	1	1			9	3	5	6	1	8	
	KBS-2TV	10	9		1					5		3	2		
	MBC-TV	25	18		6			1		15	1	3	1		5
	SBS-TV	21	18			1			2	6	5	2	3		5
	EBS-R	1	1								1				
	소계	91	75	3	8	2		1	2	37	10	13	12	1	18
지 방 방 송	원주KBS-1TV	2	2									2			
	춘천KBS-1TV	1	1							1					
	대전KBS-1TV	2	2							2					
	대구KBS-1TV	5	5									5			
	울산KBS-1TV	2	2												2
	창원KBS-1TV	2	2							2					
	전주KBS-1TV	1	1							1					
	광주KBS-1TV	4	4								2	2			
	제주KBS-1TV	6	6							6					
	부산MBC-TV	3	3									3			
	강릉MBC-TV	1				1				1					
	청주MBC-TV	5	5							5					
	대전MBC-TV	1							1				1		
	포항MBC-TV	1			1					1					
	마산MBC-TV	6	6							4	2				
	울산MBC-TV	2	2									2			
	진주MBC-TV	2	2								2				
	목포MBC-TV	1	1												1
	제주MBC-TV	2	2							2					
	대전MBC-R	2	2							2					
광주BBS-R	2	2							1					1	
춘천MBC-R	1	1							1						
소계	54	51		1	1			1	29	6	14	1		4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간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 상립	직면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주간 신문	함안신문	9	9							4	3				2
	남해신문	2	2							2					
	더함안신문	6	6							6					
	창녕신문	2	2												2
	함안뉴스	2	2							2					
	경서신문	2	2							2					
	함안정통신문	4	4							3	1				
	고성미래신문	2	2							2					
	소계	102	99					3		46	7	26	1		22
특 수 주 간 신 문	수산신문	1	1							1					
	교수신문	1							1						1
	기독신문	1	1							1					
	미디어오늘	6	5						1	5	1				
	전국아파트신문	1	1								1				
	종합법률신문	2	2							2					
	도시개발신문	1	1							1					
	목양신문	2	2										1		1
	도시재생신문	2	2							2					
	한국축구신문	4	4							2		2			
	한국농정	1	1									1			
	기독교성경신문	3	3							3					
	이천타임즈	2	2									2			
	일요저널	2	2												2
	구로오늘신문	2	2							2					
	한기여총신문	2			2					2					
	진천군민신문	2	2							2					
	한국대학신문	1	1							1					
	오마이건설뉴스	4	4												4
	경남기독신문	1	1							1					
	법보신문	1							1				1		
	금산진약신문	1	1												1
	뉴코리아포스트	3	3							2					1
연합경찰	2	2							2						
건설교통환경신문	1	1												1	
한국기독교공보	2	2									2				
부천신문	3	3							3						

매체명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상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 상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뉴스엔		3	3												3
디시뉴스		2	2												2
TVDaily		3	3												3
서울e조은뉴스		2	2												2
우리안산넷		1	1							1					
스타뉴스		1	1												1
데일리경향뉴스		1	1												1
인벤		1							1						1
아크로팬		1	1												1
고성인터넷뉴스		3	3							2					1
가제인터넷신문		2	2												2
한국모바일방송		4	4												4
디지털화순뉴스		3	3							2		1			
의정부인터넷뉴스		1	1												1
경원일보		2	2												2
용인일보		1	1												1
인터넷뉴스 신문고		2	2							2					
e중앙뉴스		2	2							2					
통영타임즈		2	2												2
나눔뉴스		2	2												2
뉴스와이어		2	2							2					
아이비타임즈		2	2												2
OSEN		2	2												2
희망뉴스		2	2												2
모모뉴스		2	2												2
빅뉴스		2	2								2				
호남뉴스 일반지		2	2												2
e파이낸셜신문		2	2							2					
엠펙아트		1	1												1
뉴스토마토		1	1												1
한국대문학신문		2	2								2				
뉴스페이		2	2									2			
데일리안 강원		2	2									2			
데일리안		3	3							2		1			
브레이크뉴스		4	3						1				1		3
프런티어타임즈		1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표 의	신 영	초 상 권	애 성 권	표 명 권	표 의 권	기 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추 하
인 터 넷 신 문	e뉴조	2	2												2
	폴리뉴스	4	3						1	2			1		1
	마이데일리	7	5	1	1										7
	메디컬투데이	5	4		1					2					3
	EBN	2							2				2		
	아이뉴스24	1	1										1		
	메디케이투뉴스	1	1												1
	생각만드는신문	7	7							2					5
	에이블뉴스	2	2												2
	코메디닷컴	2	2							2					
	미디어스	2	2							1	1				
	폴리스타임즈	1	1												1
	칸슈머타임즈	3	3							2					1
	메디파나뉴스	2	2										1		1
	문화저널	3	2		1							2			1
	스포츠서울TV	2	1		1								1		1
	서울신문NTN	2	2												2
	이슈제주	2	2							2					
	제주투데이	3	3							2					1
	광주투데이	2	2												2
	제주의 소리	7	7							6					1
	시티뉴스	2	2							2					
	굿데이스포츠	4	3		1										4
	세종뉴스	1	1							1					
	동이닷컴	6	6								1		2		3
	디지털조선일보	23	21						2	7	2	1	5		8
	한겨레닷컴	17	16							1	4	2		3	8
	아이투데이닷컴	9	7		1					1			1		8
	한경닷컴	6	6									2			4
	조인스닷컴	15	12					1		2	2	2	1	1	9
	인터넷한국일보	8	7							1	6				2
	인터넷매일투데이	7	4	2	1								2		5
파이낸셜뉴스닷컴	5	5							2					3	
스포츠조선닷컴	2	2												2	
ISPLUS	1	1												1	
매경닷컴	14	11		1			1		1	2		1		10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신상 권	음성 권	성명 권	프라이 버시	기 타	조정 상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충청세종신문닷컴	2	2							2					
	인터넷국제신문	2	2												2
	인터넷인제신문	2	2									2			
	인터넷제외동포신문	1							1						1
	인터넷소통신문	1	1							1					
	사새NLive닷컴	2	2												2
	내외TV	3	3							2					1
	인터넷코레타이즈	1	1												1
	인터넷충청일보	2	2							2					
	뉴코리아포스트닷컴	2	2							2					
	인터넷내외일보	2	2							2					
	인터넷한대일보	2	2							2					
인터넷일요신문	1	1							1						
소계	567	513	3	19		2	3	27	190	26	29	43		279	
인 터 넷 뉴 스 서 비 스	네이버	203	176	3	15			3	6	24	13	3	16		147
	다음	189	172	3	12			1	1	21	10	3	10		145
	아후	80	71	2	5			1	1		10		5		65
	파란	82	71	2	9					3	8		3		68
	네이트	163	146	2	12			1	2	17	12	3	7		124
	구글	29	24	2				1	2		12		2		15
	드림 위즈	36	32		4						3				33
	코리아닷컴	1	1												1
	천리안	2	2												2
	MSN 코리아	5	5												5
	라이코스	1	1												1
	하나포스	9	9								2				7
	고	1	1							1					
	로지아닷컴	2	2												2
	iMBC	14	8		5				1	8	1		2		3
	SBSi	3	3								2				1
	KBSi	12	11		1					3	1	2	3		3
	BBS 불교방송	1	1												1
	디지털와이티엔	6	4		2							2			4
와우넷	1	1												1	
인터넷EBS	1	1								1					
소계	841	742	14	65			7	13	77	75	13	48		628	
기 타	iKNN	2	2												2
	소계	2	2												2
총계	2,205	1,995	20	109	3	4	20	54	630	149	157	137	1	1,131	

9.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를 서울과 지역으로 나누어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81.6%, 지역은 72.3%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중재부가 9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제3중재부와대전중재부가 각각 90.2%와 89.2%를 나타내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중재부의 조정성립률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북중재부가 65.7%, 경남중재부가 64.0%를 나타냈다. 서울중재부의 경우 조정성립률은 22.2%로 낮고, 취하율은 5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서울의 경우, 원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에 대한 조정성립의 결과, 후속보도가 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포털 등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함에 따라 신청인이 포털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 역시 전체 149건 가운데 약 85.9%인 128건이 서울중재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 외 지역중재부에서 내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경남중재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중재부 7건, 경기중재부 2건이었다. 기각 및 각하결정의 경우도 138건 가운데 126건이 서울중재부에서 이루어졌다.

〈표 2-9〉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연도	구분 중재부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서울	103	31	15	3	20	3	4	27 (17)	65.6
	서울2	95	47	4		20 (1)	4		20 (14)	72.5
	서울3	112	51			2	3		56 (44)	87.2
	서울4	104	46	5	3	5	4		41 (28)	79.0
	서울5	101	48		2	12 (1)	2		37 (30)	79.8
	서울6	92	45		4	9	1		33 (23)	74.7
	소계	607	268	24	12	68 (2)	17	4	214 (156)	76.8
	부산	24	5		1	10 (1)	1		7 (2)	34.8
	대구	30	18						12 (5)	76.7
	광주	46	14	1	3	12			16 (10)	54.3
	대전	32	12			2			18 (10)	68.8
	경기	108	29	1	1	23			54 (39)	63.9
	강원	15	11	2		1			1 (1)	93.3
	충북	19	10						9 (4)	73.7
	전북	39	19	3		5			12 (5)	69.2
	경남	27	9	4		4	3		7 (5)	75.0
	제주	7	7							100.0
	소계	347	134	11	5	57 (1)	4		136 (81)	66.2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연도	구분	중재부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서울1	178	47	23	9	1	49	1	48 [42]	87.5	
	서울2	173	53	5	1	11	46	4	53 [23]	65.9	
	서울3	180	72	9		3	44		52 [48]	94.9	
	서울4	177	39	17	10	14	35	1	61 [46]	72.3	
	서울5	174	55			11	39		69 [48]	76.3	
	서울6	188	78	2	3	9	7	2	87 [34]	63.7	
	서울7	103	22	7	2		36		36 [29]	86.6	
	소계	1,173	366	63	25	49	256	8	406 [270]	76.9	
	부산	15	8			2	1		4 [4]	85.7	
	대구	35	18	1	2				14 [2]	60.0	
	광주	72	36		2	16			18 [13]	68.1	
	대전	42	20						22 [16]	85.7	
	경기	103	32	2	9	4			56 [24]	56.3	
	강원	26	4						22 [19]	88.5	
	충북	36	9			10		2	15 [8]	50.0	
	전북	33	18		1	4			10 [2]	60.6	
	경남	26	15			3			8 [3]	69.2	
	제주	12	12							100.0	
	소계	400	172	3	14	39	1	2	169 [91]	67.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서울1	258	41	48	8		34		127 [109]	88.4	
	서울2	234	85			11	17		121 [104]	87.1	
	서울3	241	75	12	3 [2]	5	16	1	129 [113]	90.2	
	서울4	225	32	8	12	10 [1]	3		160 [136]	79.7	
	서울5	215	27	10	2	24	6		146 [104]	67.5	
	서울6	238	74	23	1	6	9		125 [92]	82.5	
	서울7	216	27	1		20	40		128 [101]	73.3	
	소계	1,627	361	102	26 [2]	76 [1]	125	1	936 [759]	81.6	
	부산	59	13			13	1		32 [19]	55.2	
	대구	31	16			8 [1]	2		5 [1]	62.1	
	광주	77	20	3	4	18 [2]	1		31 [14]	51.3	
	대전	42	29				5		8 [4]	89.2	
	경기	120	44		2	17			57 [48]	76.7	
	강원	28	9			15 [1]			4 [4]	50.0	
	충북	35	23			4	3		5 [3]	81.3	
	전북	49	22			5			22 [14]	73.5	
	경남	89	57	4	8				20 [14]	84.3	
	제주	48	36			1			11 [11]	97.9	
	소계	578	269	7	14	81 [4]	12		195 [132]	72.3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1)안익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같은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 손해배상청구 건수 및 처리결과

2010년 접수된 2,205건의 청구별 현황을 보면 정정보도청구 1,211건(54.9%), 손해배상청구 773건(35.1%), 반론보도청구 171건(7.8%), 추후보도청구 50건(2.3%) 순으로 나타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정정보도청구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청구별 조정신청 현황은 <표 1-3> 참조). 2010년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2009년의 699건보다 74건이 증가한 수치이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는 약 9%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서는 2009년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의 '투저 발언' 과 관련하여 261건의 손해배상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례가 2010년에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 최근3년간 손해배상청구사건수 및 비율

연도	구분	전체 조정사건수	손해배상청구사건수	비율(%)
2008		954	324	34.0
2009		1,573	699	44.4
2010		2,205	773	35.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취하 54.2%, 조정성립 28.2%, 조정불성립 결정 7.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5.4%, 기각 4.9% 순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에는 손해배상청구 기각률이 4.9%로 전년의 33.2%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담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내하여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사건 취하율이 5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정이나 반론과 함께 병합청구된 경우 정정이나 반론으로 합의되면 손해배상은 취하하는 경우가 많거나, 초상권·음성권 침해사건의 경우 그 침해여부가 비교적 명확히 가려지고 조정액 선례가 많이 있어 언론사가 신청인 측과 기일전에 접촉하여 사건을 해결하면 취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립률은 2009년에 비해 3.5% 포인트 높아진 28.2%를 기록했으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해구제율은 2009년에 비해 13% 포인트나 높아져 무려 80.0%라는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처리결과

구분 연도	조정사건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324 (100)	115 (35.5)	11 (3.4)	7 (2.2)	51[2] (15.7)	4 (1.2)	2 (0.6)	134[101] (41.4)	72.0
2009	699 (100)	172 (24.7)	16 (2.1)	13 (1.7)	33 (4.7)	232 (33.2)	6 (0.9)	227[121] (32.3)	67.0
2010	773 (100)	218 (28.2)	24 (3.1)	18[1] (2.3)	56[1] (7.2)	38 (4.9)		419[344] (54.2)	80.0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6,500만원으로 다른해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조정액은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조정액 평균은 168만원, 중앙액은 100만원으로, 평균액과 중앙액 모두 작년보다 5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액(빈도가 가장 많은 배상액)은 100만원(10 회)이었으며, 이어 50만원(4 회), 200만원 및 15만원(각 3회) 등이었다. 고액순의 빈도를 보면 1,500만원 1건, 660만원 1건, 300만원 2건 등이었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구분 연도	청구액				조정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8	110,000	10,000,000,000	185,920,574	20,000,000	300,000	10,000,000	3,331,250	2,750,000
2009	100	50,000,000,000	221,393,861	20,000,000	120,000	30,000,000	3,594,103	2,000,000
2010	100	10,000,000,000	65,993,749	20,000,000	150,000	15,000,000	1,832,759	1,000,000

손해배상 조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원에서 200만원미만이 37.9%로 가장 많았다. 200만원에서 500만원미만의 경우,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반면 100만원미만의 경우는 늘어났다. 500만원 이상의 경우도 다소 줄었다.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약간 감소하는 분포를 보였다.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연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2008	3 (9.4)	9 (28.1)	11 (34.4)	6 (18.8)	3 (9.4)	32 (100.0)
2009	6 (15.4)	9 (23.1)	16 (41.0)	4 (10.3)	4 (10.3)	39 (100.0)
2010	9 (31.0)	11 (37.9)	7 (24.1)	1 (3.4)	1 (3.4)	29 (100.0)
계	18 (18.0)	29 (29.0)	34 (34.0)	11 (11.0)	8 (8.0)	100 (100.0)

* ()안의 숫자는 %

3. 침해유형별 조정액 현황

침해유형별 조정액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660만원, 최저 100만원, 평균 220만원 정도였으며,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 최저 15만원, 평균 106만원 정도였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1,5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533만원으로, 음성권 침해는 15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표 3-5〉 손해배상사건 침해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0. 1. 1. ~ 2010. 12. 31, 단위 원)

침해유형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8	1,000,000	6,600,000	2,200,000	1,500,000	1,000,000
초상권		18	150,000	3,000,000	1,061,765	1,000,000	1,000,000
음성권		1			1,500,000		
프라이버시권		3	500,000	15,000,000	5,333,333	500,000	500,000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627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97건(12.5%), 프라이버시 침해 20건(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정이나 반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상권·음성권·성명권·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청구사건임을 알 수 있다.

침해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사건 자체가 3건에 불과한 음성권(33.3%)을 제외하면, 명예훼손(30.6%), 초상권(21.6%), 프라이버시권 침해(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프라이

버시권 침해 20건 중 55.0%에 해당하는 11건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다수포털을 상대로 신청된 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표3-6〉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유형별 처리결과현황

(2010. 1. 1. ~ 2010. 12. 31.)

침해 유형	구분 조정사건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상립	조정에 같은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627 (100)	192 (30.6)	39 (6.2)	44 (7.0)	20 (3.2)		332 (53.0)
신용훼손	8 (100)			1 (12.5)			7 (87.5)
초상권	97 (100)	21 (21.6)	1 (1.0)	10 (10.3)	6 (6.2)		59 (60.8)
음성권	3 (100)	1 (33.3)	1 (33.3)				1 (33.3)
성명권	4 (100)						4 (100.0)
프라이버시	20 (100)	3 (15.0)	1 (5.0)	1 (5.0)	11 (55.0)		4 (20.0)
기타	14 (100)	1 (7.1)			1 (7.1)		12 (85.7)
계	773 (100)	218 (28.2)	42 (5.4)	56 (7.2)	38 (4.9)		419 (54.2)

*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신청인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530건(6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기업체 121건(15.6%), 일반단체 83건(10.7%) 등의 순이었다.

국가기관의 손해배상청구가 1건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손해배상청구는 정정이나 반론청구와 달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국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3-7〉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현황

(2010. 1. 1 ~ 2010. 12. 31)

구분 침해 유형	조정사건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상립	조정에 같은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가압	각하	취하
개인	530 (100)	134 (25.3)	30 (5.7)	34 (6.4)	35 (6.6)		297 (56.0)
국가기관	1 (100)			1 (100.0)			
지자체	9 (100)	4 (44.4)		2 (22.2)			3 (33.3)
공공단체	3 (100)	1 (33.3)					2 (66.7)
일반단체	83 (100)	34 (41.0)	5 (6.0)	9 (10.8)	2 (2.4)		33 (39.8)
기업체	121 (100)	35 (28.9)	5 (4.1)	8 (6.6)	1 (0.8)		72 (59.5)
언론사	23 (100)	9 (39.1)	2 (8.7)	12 (52.2)			
교육기관	3 (100)	1 (33.3)		2 (66.7)			
계	773 (100)	218 (28.2)	42 (5.4)	56 (7.2)	38 (4.9)		419 (54.2)

* () 안의숫자는 %

인터넷신문은 2005년 하반기에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매체에 새로 포함되었다. 인터넷매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수는 시행 초기인 2005년도 45건에서 출발해 2006년 77건, 2007년 113건, 2008년 157건, 2009년 23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567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약 2.4배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인터넷신문이 전체 조정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05년도 5.4%(883건 중 48건), 2006년도 7.1%(1,087건 중 77건), 2007년도 10.8%(1,043건 중 113건)에 이르던 수치가 2008년도 16.5%(954건 중 157건), 2009년도 14.8%(1,573건 중 233건)¹⁾, 2010년도 25.7%(2,205건 중 567건)라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²⁾에 따라 그동안 조정·중재 대상매체가 아니었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인터넷신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매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조정 및 중재신청 사건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조정사건 처리결과 현황

구분 연도	조정사건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157 (100)	62 (39.5)	8 (5.1)	2 (1.3)	17 (10.8)	5 (3.2)	4 (2.5)	59 (37.6)	80.4
2009	233 (100)	118 (50.6)	3 (1.3)	5 (2.1)	14 (6.0)	6 (2.6)		87 (37.3)	78.9
2010	567 (100)	190 (33.5)	12 (2.1)	14 (2.5)	29 (5.1)	43 (7.6)		279 (49.2)	80.7
계	957 (100)	370 (38.7)	23 (2.4)	21 (2.2)	60 (6.3)	54 (5.6)	4 (0.4)	425 (44.4)	80.2

* () 안의 숫자는 %

1) 2009년 청구된 총 1,573건 중 KBS-2TV <미녀들의 수다> 루저 발언 관련한 청구 265건을 제외한 인터넷매체 비율은 17.8%(1,317건 중 233건)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명칭 변경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조정·중재대상 매체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나,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언론중재법에 따라 2009년 말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 수는 5개월이라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181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한 해에만 841건이 신청되어 전체건수의 38.1%라는 비약적 증가를 나타냈다.

〈표 5-1〉 인터넷뉴스서비스 조정사건 처리결과 현황

(2009. 8. 7. ~ 2010. 12. 31.)

구분 연도	조정사건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181 (100)	47 (26.0)	16 (8.8)	3 (1.7)	2 (1.1)	6 (3.3)	4 (2.2)	103 (56.9)	84.8
2010	841 (100)	77 (9.2)	69 (8.2)	6 (0.7)	13 (1.5)	48 (5.7)		628 (74.7)	88.7
계	1,022 (100)	124 (12.1)	85 (8.3)	9 (0.9)	15 (1.5)	54 (5.3)	4 (0.4)	729 (71.3)	87.7

* () 안의 숫자는 %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청구된 841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626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조정성립 77건(9.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75건(8.9%), 기각 48건(5.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는 대개 기사를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사를 단순히 전재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신청의 특징적 모습으로는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이 이뤄지는 동시에 해당사건도 함께 접수되며, 처리결과면에서도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의 조정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즉,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에 대한 조정이 성립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경우 역시 조정성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취하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의 조정성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5-2〉 인터넷뉴스서비스 청구권별 처리결과및 피해구제율 현황

(2009. 8. 7. ~ 2010. 12. 31.)

구분 연도	청구명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압	각하		추하
				동의	이의					
2009	정정	91	23	14	2			1	51 [42]	87.8
	반론	23	5	1			5	1	11 [11]	100.0
	추후	2	2							100.0
	손배	65	17	1	1	2	1	2	41 [29]	75.8
	계	181	47	16	3	2	6	4	103 [82]	84.8
2010	정정	474	43	53	3	5	15		355 [311]	88.9
	반론	46	2	5			20		19 [15]	84.6
	추후	11	3						8 [8]	100.0
	손배	310	29	11	3	8	13		246 [221]	88.2
	계	841	77	69	6	13	48		628 [555]	88.7

* () 안의숫자는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제6장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 현황



2005년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중재’에 관한조항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고유한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했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양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분쟁을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재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에는 새로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중재신청이 전혀 없었고, 사전에 양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해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10건 등 2005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이에 위원회는 2009년부터 중재제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09년에는 중재처리건수가 1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에도 77건을 처리했다.

1. 침해유형별 청구현황

2010년 신청된 중재사건 77건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76건으로 대부분이었다. 3년치 현황을 보면, 역시 명예훼손이 90.4%를 차지했고, 그 외 초상권이 7.6%, 음성권이 1.5%를 나타냈다.

〈표 6-1〉침해유형별 현황

연도	구분	중재 건수	명예	초상권	음성권	기타
2008		10	4	5	1	
2009		111	99	10	2	
2010		77	76			1
계 (%)		198	179	15	3	1
		100.0	90.4	7.6	1.5	0.5

2 청구권별 중재건수 및 처리결과

중재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청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반론청구 가 28건, 추후보도청구가 12건을 나타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 중재신청건수는 2건에 그쳐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중재결정이 76건, 기각결정이 1건이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 2건의 경우 중재청구액 평균은 2천만 원이었고, 중재액 평균은 2백5십만 원이다.

〈표 6-2〉청구권별 중재건수 및 처리결과 현황

연도	구분	청구명	중재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회해결정	기각
2008		정정	1	1		
		반론				
		손배	9	9		
		계	10	10		
2009		정정	61	30	31	
		반론	25	20	5	
		추후	7	3	4	
		손배	18	12	6	
		계	111	65	46	
2010		정정	35	34		1
		반론	28	28		
		추후	12	12		
		손배	2	2		
		계	77	76		1

3. 매체유형별 현황

중재청구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4건으로 7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신문, 신문, 뉴스통신, 방송순서였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중재 신청이 많은 것은 기사제공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정이 성립되는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재된 동일기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신청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중재신청에 합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3〉 중재사건 매체유형별 현황

연도	구분	중재건수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2010		77 (100.0)	54 (70.1)	12 (15.6)	7 (9.1)	3 (3.9)	1 (1.3)	0

* () 안의 숫자는 %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위원회의 조정에 같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40건이다. 그중 인용이 8건, 기각/각하가 7건, 취하가 3건, 진행중인 사건이 22건이다. 자동소제기된 주요 매체를 살펴보면, KBS-TV, 중앙일보, 구글 등이었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현황 및 1심 법원 판결과 현황

연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정정반론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2008	12	4		3	4	1			3	8	1	6	3	3	
2009	24	7	2	1	12		2		4	17	3	7	8	8	1
2010	40	20	1	18				1	7	31	2	8	3	7	22
계	76	31	3	22	16	1	2	1	14	56	6	21	14	18	23

※ 인용은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청구인낙 등을 포함함

〈표 7-2〉 2010년도매체별 자동소재기현황

매체	간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발론	손배	정정 손배	정정 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 응	취 하	각 각하	계 속
EBS-TV	1			1			1					1
KBS-1TV	2	1		1			2		1			1
KBSi	1	1					1		1			
MBC-TV	1	1					1		1			
경인일보	2	1		1		2						2
경향닷컴	2	1	1			2		2				
구글	4	2		2			4				4	
동아닷컴	1	1					1					1
동아일보	1	1					1					1
미디어오늘	3	3				3						3
빅뉴스	2	1		1				2				2
인터넷EBS	1			1			1					1
인터넷 경남여성신문	2	1		1			2					2
인터넷 환경일보	2	1		1			2		2			
전광일보	2	1		1			2					2
조인스닷컴	2	1		1			2		1		1	
중앙일보	2	1		1			2		1		1	
진주MBC-TV	2	1		1			2					2
한겨레닷컴	1	1					1				1	
함안신문	3			3			3					3
함안정통신문	1			1			1					1
함평신문	2			1	1		2		2			
계	40	20	1	18	1	7	31	2	8	3	7	22

연도별 언론조정 · 중재신청 처리현황

■ 조정

(1981.3.31 ~ 2010.12.31)

구분 연도	조정 사건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상립	조정에 길음하는 결정			조정불상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1981	44	9				12 (5)	1	2	20 (2)		39.0
1982	50	19				19 (5)		2	10 (4)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52.2
1984	54	12				29 (8)	3		10 (5)		49.0
1985	59	12				28 (5)	4		15 (7)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6.3
1987	47	10				9 (4)	1		27 (2)		34.8
1988	55	16				12 (5)		1	26 (13)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계	16,096	5,280	424	308 (29)	0	2,638 (277)	699	87	6,660 (3,894)	0	64.7
	100.0%	32.8%	2.6%	1.9%	0.0%	16.4%	4.3%	0.5%	41.4%	0.0%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건수 + 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건수 + 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수] / 조정건수(가각, 각하제외)

■ 중재

구분 연도	조정사건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회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계	219 100.0%	172 78.5%	46 21.0%	1 0.5%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총 746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284건의 법의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2009년 253건에 비해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31건(12.3%)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세묘사 등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2009년 93건에서 2010년 199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2009년 97건에서 2010년 49건으로 크게 준 것(2009년 대비 49.5% 감소)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로는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각 96건, 149건으로 2009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09년 대비 각각 68.4%, 12.9% 증가)

1.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분석

2010년에는 개인적 법익침해건수가 63건으로 2009년 119건에 비해 47.1% 감소한 반면, 사회적 법익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도 99건에 비해 123% 증가했다. 이는 2010년도에 사회적 법익침해 유형인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이 70.1%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관련 보도가 199건(70.1%),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49건(17.3%),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수법 상세묘사 등) 18건(6.3%), 사생활 침해 10건(3.5%), 마약·용량·용법 등 공개 4건(1.4%),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및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각 2건(0.7%) 순으로 나타났다.

2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분석

2010년 한 해 동안 시정권고 결정된 284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49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간지가 96건(33.8%), 뉴스통신 20건(7.0%), 주간지 14건(4.9%), 월간지 5건(1.8%) 순이었다.

2009년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갖춘 언론사닷컴도 시정권고 대상 매체에 포함되는 등 심의대상 인터넷신문의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09년에는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57건으로 2008년 121건 대비 52.9%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96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일간지 96건 가운데 지역일간지는 74건으로, 일간지 중에서는 77.1%를 차지했다.

표 1) 연도별 시정원고 현황

1981. 3. 31. ~ 2010. 12. 31.

연도	구분 권고 건수	침해유형									종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원 공개	사생활 침해	미약 용량 등 공개	자살 관련 보도	기타	국가적 침해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2008	289	4		48	8		30	27	97	75	124	19	1	31	112	2	
2009	253		1	97	6		15		93	41	57	15		20	132	29	
2010	284	2		49	2		10	4	199	18	96	14	5	20	149		
2011	66						1	23	40		19	2	1	5	39		
계	6,080	719	134	1,972	1,041	315	1,031	657	209		5,108	128	22	296	494	32	
	100%	11.8%	2.2%	32.4%	17.1%	5.2%	17.0%	10.8%	3.4%		84.0%	2.1%	0.4%	4.9%	8.1%	0.5%	

신정아 사건이 한국 언론계에 남긴 것

임도경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객원교수



한때 잘나가던 한국미술계의 신진세력이었던 신정아(39)씨의 몰락과정은 한국사회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병폐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신씨 사건의 본질은 학벌 위주의 한국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학력 위조 사건은 물론, 권력유착형 비리 문제, 그리고 취재경쟁에 빠들어선 언론의 자화상까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그래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이 남긴 의미는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앞으로 한국 언론의 취재 보도 준칙과 관련해 '신정아 사건'이라는 단어는 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단어로 남을 것 같다.

신씨 사건의 핵심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학력 위조(공무집행 방해) 문제와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등)였다. 2007년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 문제로 신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최근까지 일반인들의 관심을 더 끈 사건은 폭로저널리즘의 진상을 그대로 보여준 누드사진 보도 소송이었다.

신씨는 지난 1월, 누드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 측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기로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3년여 간에 걸친 오랜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여상훈 부장판사)에서 선고이틀 전 양측이 합의한 조정조건은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률적 청구권을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조정조건에 따라 이 문제를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양측이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 법정에서 진행된 그간의 협상내막을 알 수는 없게 됐다. 하지만 최소한 언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취재 대상에게 거액 배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한국 언론의 보도규칙과 취재윤리의 적용에 있어서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때 한국사회를 들끓게 했던 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한창 문제가 시끄럽던 2007년 9월 13일자 문화

일보는 1면에 ‘신정아씨누드사진 발견’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신씨의 얼굴을 한 알몸 여성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여성이 서재앞에서 반듯이 서있는 사진을 실으면서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이런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고 출처를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 사진의 주요 부위는 모자이크처리를 했지만 그 이상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사람들의 시각마저 잠재우지는 못했다. 타이틀 부제까지 ‘고위층에 성로비 의혹관심’이라는 도발적인 내용이 달려있었다. 기사내용은 더했다. 마치법의학자가 부검 후 검시기록을 쓴 듯 “몸에 내의자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내의를 벗은 지 한 참 후에 찍은 사진으로, 작풍용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사이’의 징표같은 느낌이난다”고 쓰여 있었다.

문화일보의 보도 이후 각 신문은 마치 특종이라도 놓친 듯 앞다퉈 신씨의 성로비 의혹을 찾아내기 위한 기사로 경쟁했다. 이런 경쟁에는 보수와 진보 언론사간의 차이도 없었다. 경향신문은 9월 13일자 기사에 ‘신정아씨의 누드사진 진위가 더 의심스럽다’는 원색적인 공격을 숨기지 않았고, ‘신정아씨누드사진 누가 왜?’라는 집요성마저 보였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신정아 스캔들’을 썼고, 매일경제는 ‘신정아 도깨비 행적... 단정함 뒤엔 누드사진’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누드사진 진짜라면 단순사생활로 치부하긴 불분명’이라며 신씨의 건전하지 못한 사생활을 정조준했다.

검찰이 흘린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의 이 메일이 외압에 필요한 단서를 찾아내는데 보다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는데 이용되면서 스캔들의 증거로 등장했던 시점이었다. 누드사진까지 드러나자 언론은 ‘꽃뱀’이라는 용어까지 버젓이 쓰고 있었다.

이렇게 확대된 신씨의 누드사진 파문에 대중들은 남의 침실을 엿보는 관음증적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만을 보내진 않았다. 이 보도로 ‘언론의 기능과 책무’라는 화두가 여론의 중심부에 등장했고, 원색적인 황색저널리

“신씨의 누드사진 보도로 인해 ‘언론의 기능과 책무’라는 화두가 여론의 중심부에 등장했고, 원색적인 황색저널리즘의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흘러나왔다.”

즘의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사건의 핵심과는 관계가 없는 누드사진을 공개해 한여자의 생을 처절하게 짓밟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한 인터넷 블로거는 이 사건에 대해 ‘인격적 살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거부반응이 거세지자 언론계 일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수감중인 신씨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는 문화일보였지만, 어느 언론도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앞다퉈 문화일보의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실으면서 선정성 경쟁을 하던 그들이 아니었는가.

2008년 12월 17일 민사합의 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사진이 신씨의 주장대로 합성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이와 무관하게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신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신씨는 합성사진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속의 포즈대로 자신의 알몸을 촬영해 전문가들에게 대조를 의뢰하는 과정까지 겪었지만 감정결과 조차 불확실하게 결론이 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알몸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를 읽은 독자는 신씨가 정·관계나 종교·문화계 고위층 및 원로 등을 상대로 문어발식 성관계를 수단으로 로비한 것으로 인

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로비 의혹을 다룬 기사로 인해 신 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정정보도의 내용은 신문1면에 “신 씨의 성 로비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했으나 실제 성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신고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7일간 게재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 씨에게 하루에 100만원씩 강제이행금을 지급하도록 덧붙였다. 이런 보상금은 국내 언론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액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문화일보는 이 소송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거론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던 신 씨의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량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알몸 사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국민의 알권리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면 사진까지 실은 것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씨가 주장하는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는 사실 명백했다. 현대는 이미지 시대라 초상권에 대한 보호가 더 강력해지고 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않으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법적 보장이다.

2000년 9월 주식시장 폭락장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한 중년 부부를 객장에서 촬영했던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게재한 일은 유명하다. 이 부부는 당시 만기 예수금을 찾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고, 더군다나 사진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명수배자가 체포되는 장면같이 초상본인이 보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지만, 그대로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면 초상권 침해도 당연히 성립된다.

“신 씨 사건처럼 취재경쟁이 뜨거운 사건 사고를 취재하면서 기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취재원의 인격권이다. 특히 신 씨처럼 특정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공중의 관심을 받는 취약한 입장이 된 취재원의 인격권은 쉽게 무시하기 쉽다. 그런 점이 늘 보도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유명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이 상당 부분 제외된다. 유명인이라 해도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와 특정 사건으로 유명해진 상대적 유명인은 개인의 익명성 이익을 따지는 기준이 다르다. 신 씨는 후자의 경우인데, 본인의 동의 없이 누드 사진을 게재하는 수준의 보도는 진위 여부를 떠나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사진이 신 씨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사진의 당사자로부터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도 밟지 않은 점을 언론사의 실책으로 간주했다. 이런 이유로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사진이 합성이라는 전제에서도 문화일보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것이다.

신 씨 사건처럼 취재경쟁이 뜨거운 사건 사고를 취재하면서 기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취재원의 인격권이다. 특히 신 씨처럼 특정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공중의 관심을 받는 취약한 입장이 된 취재원의 인격권은 쉽게 무시하기 쉽다. 그런 점이 늘 보도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취재원의 인격권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 등이 인격권

침해를 전제로한 것이라고 본다.

언론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이런 법의 적용이 신 씨의 1심 판결과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307조 1항에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2항에서는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 1항에 따르면, 신 씨 누드사진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언론사는 명예훼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규정에 묶여 언론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사를 못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 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익성과 진실성이 입증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민사소송에서도 이를 유추 적용한다. 이는 언론보도의 공익성과 피해자의 보호 사이에서 양자를 균형 잡게 하는 기능을 해왔다.

따라서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첫째, 보도내용이 원칙적으로 실제사실에 부합해야 하며(전체적으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하다면 내용상 사소한 부분의 착오나 내용을 단순화하는 과정의 기술적 수식으로 인한 변형은 용인), 둘째,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어도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확인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런 법적 근거를 두고 신 씨 누드사진 파동을 다시 분석해보면 언론 보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드러난다.

첫째, 그 사진이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사건혹은 미술관 공금 횡령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 위조 사건 하나만으로도 신 씨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 충분한 지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변양균 전 실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언론이 과

도하게 집중해 취재경쟁을 벌임으로써 실제보다 더 무게감 있게 다뤄졌어야 할 학력 위조 사건은 사건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버렸다.

기억할지 모르겠다. 신 씨와 마찬가지로 학력 위조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되었던 가수 타블로의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한 방송사에서 직접 미국 대학을 방문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 방송을 내보내는 심층 취재 과정을 밟았던 것을. 신 씨 사건도 그런 확인 과정을 밟는데 언론이 보다 취재력을 집중해 세계 일류라고 자부하는 예일 대학의 학력이 브로커를 통해 위조되는 과정을 밝혀주는 것이 훨씬 더 '공기(公器)'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

그 누드 사진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신 씨 사건은 황색 저널리즘의 전쟁터로 변했고, 사건의 불똥은 중심부를 빗겨나 외곽으로 번져나갔다. 학력을 위조한 명사들이 차례대로 사냥되는 장면이 연출됐으니까 말이다. 신 씨는 죄값을 치르고 출소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일대 박사학위 증명서가 어떤 과정으로 위조되어 미국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날아올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잘 모르고 있다. 어쩌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지금도 이땅에 디에션가 되풀이 될 수도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둘째, 문화일보를 비롯한 타 언론사들은 누드사진을 보도하려면 좀 더 그 파장을 고려해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문화일보의 배상 근거로 사진의 당사자로부터 진위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절차도 밟지 않는데 따른 실책을 지적했다. 최소한 사진을 찍은 작가와 사전에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야 했고, 또 사진 공개 이후 심각한 불명예가 예상되는 당사자인 신 씨 자신에게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조사의 정도'는 정황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누드사진이 보도된 지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8년 2월 발행된 미술 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 창간호에는 이 사진을 촬영한 작가 황규태(70) 씨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횡령 사건으로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황 씨는 문제의 사진과 관련, “사석에서 몇 차례 신 씨에게 제의해 신 씨 동의 아래 직접 찍었다”며 “사진작가로서 자연스러운 제안이었고 신 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사진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추어 여성 사진작가인 A씨가 5년 전 작업실에 몰래 들어와 사진을 뒤져 챙겨뒀던 것으로 A씨는 훗날 누드사진으로 신정아를 따로 만나 괴롭히기도 했다”면서 작가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한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아트레이드>는 황 씨 인터뷰 기사에 대해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출신인 조우석 씨가 2007년 9월부터 보도 당시까지 황 씨와 주고받은 20여 차례의 국제전화와 편지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작가 황 씨의 태도는 아리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신 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합성 사진의 증거로 미국 이민국에 수감중인 황 씨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황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필로 보낸 편지에서 “문화일보에 실린 신정아 씨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은 오래 전 전시를 위해서 합성작업 해뒀던 것입니다”라며 “나의 보관 허술로 이런 일이 생기고, 신정아 씨에게 큰 상처와 부끄러움을 준 것 사과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 자술서 제출 이후 2년여 만에 양측이 조정 에 응해 사건이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황 씨의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이런 확인 과정조차 이 사진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 문화일보에 의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또 당사자인 신 씨도 사진이 보도된 직후인 2007년 8월 <시사인> 창간호 인터뷰에서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문화일보 역시 위의 두 매체와 마찬가지로 사진의 당사자들인 신 씨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사용하지는 못한다. 바늘귀에 실을 꿰어 넣는 인내심은 특종을 완성하는 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언론은 순간적 휘발성이 강한 아이템일수록 더 차분하게 다루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나 황 씨와 직접 접촉한 후 보도여부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필자 역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단독 사진을 입수했을 경우, 그 치열한 취재 경쟁 속에서 차분한 과정을 밟아가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취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리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사용하지는 못한다. 바늘귀에 실을 꿰어 넣는 인내심은 특종을 완성하는 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언론은 순간적 휘발성이 강한 아이템일수록 더 차분하게 다루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일보가 그런 과정을 밟았다면, 일단 보도여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설사 보도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보다 정밀한 취재 과정을 통해 보도 시점을 조절하면서 다른 각도의 기사를 썼을 것이다. 그랬다면, 반향은 달랐을 것이다.

신정아 사건으로 언론계가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이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취재원에 대한 배려를 등한시 해온 취재관행에 대해 자성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 결과 또한 언론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방통위,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사적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제외”

올 3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회원 실명 인증을 받고 보안 서버에 회원들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저장, 관리해야 한다.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에 지정된 적용 대상은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146개 웹사이트이다.

올해는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던 167개 웹사이트 중 115개 웹사이트는 변경이 없고, 52개가 제외, 새롭게 31개가 선정되었는데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등 미디어 부분에서 14개가 신규 포함되었다.

52개가 제외된 것은 방통위가 선정기준을 2010년 이전에는 3개 조사기관(메트릭스, 코리안클릭, 랭키닷컴)의 평균값으로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 한 반면, 올해부터는 기준을 강화해 3개 기관의 조사결과 '모두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에서 게시판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2011년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그간 본인확인제를 따르고 있던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페이지·카페에 대해서

도 미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SNS를 통해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인 소셜댓글 서비스를 도입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 및 新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개선시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참조) 영국 축구협회, “트위터와 같은 SNS는 공적 영역이다”

영국의 축구선수 라이언 바벨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심판을 비난했다가 가액의 벌금을 물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2011년 1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의 주심이었던 하워드 웹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바벨에게 1만 파운드(원화 1천 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이제 공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이들은 어떠한 말이라도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리버풀의 공격수인 바벨은 맨유와의 경기에서 1-0으로 패한 뒤 웹 주심을 조롱하는 사진과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바벨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 경기에서 웹 주심이 맨유에게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한편, 리버풀의 스타플레이어인 스티븐 제라드를 퇴장시켰기 때문이다.

법원조정센터, 2010년 후기 성공조정사례 30선 선정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에 조정센터가 출범하였다.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에 상근하면서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데 조정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만큼,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측된다.

법원조정센터는 2010년 후기 조정사례 30건을 선정했는데, 비자 수속비반환부터 신차의 잦은 고장에 따른 손해배상, 주차장 사용방해 금지, 동시간 수용보상금 청구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분쟁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은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가 많아 피신청인에게 소음을 줄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카펫을 사서 깔아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으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하고, 이사비용중 일부인 500여만 원을 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문제가 되는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는 소음에 불과한 정도이고, 특별히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소음을 낸 일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임 조정위원은 소음의 발생원인은 윗층의 과도한 소음 발생일 수도 있지만, 건축시 층간 방음처리 불충분일 수도 있고, 신청인이 과민 반응일 수도 있어서 이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지 않게 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 소음의 이유, 발생원인 및 정도(일반적으로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인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 점을 판사가 금방 알아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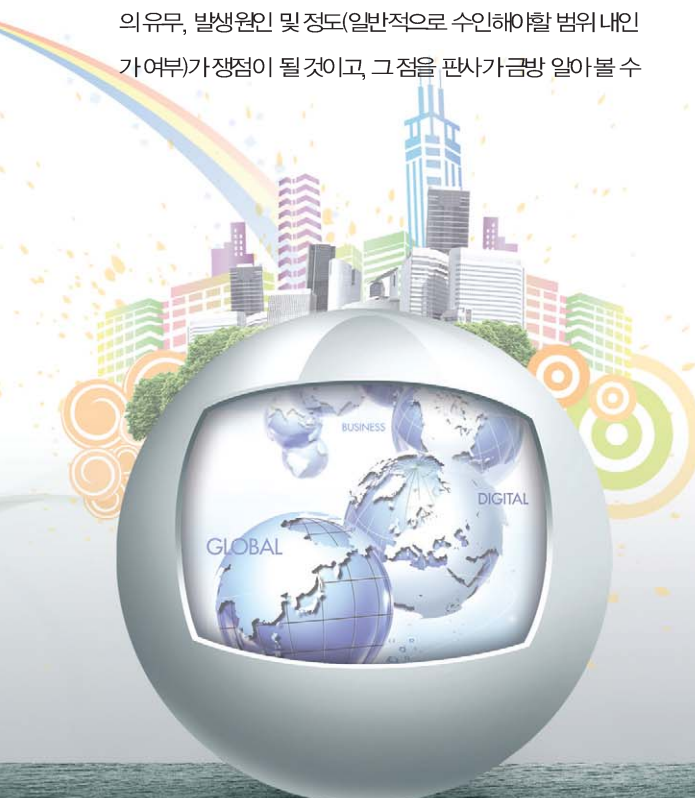
없을 터인즉, 꼭 승패의 판가름을 내려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할 것이고 그것도 낮과 밤으로 나누어 두 번,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게 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살던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사람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될 터인즉, 한때 이웃이었으니 서로 양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설득,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백화점 바닥의 참기름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백화점의 책임

피신청인은 모 백화점에서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려다가 에스칼레이터 입구 바닥에 깨어진 병에서 새어나온 참기름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입과 입전 코트가 참기름에 오염되고, 깨진 유리 때문에 들고 있던 가방, 신고 있던 신발, 착용 중이던 시계가 손괴가 되었으며, 정형외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0,000,000 원을 포함하여 도합금 15,331,980 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백화점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보험회사는 수리비 130,000 원, 의류 세탁비 45,980 원, 치료비 207,530 원, 위자료 250,000 원, 도합금 580,000 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상임 조정위원은 쌍방에 대하여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쌍방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피신청인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그 백화점의 평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화점은 신청인이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여 주지 않는데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될 것이므로 금액에 있어서 양보를 할 것을 제안, 쌍방은 최종적으로 상임조정위원이 제시하는 금 2,000,000 원에 합의하였다.





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형사상 명예훼손죄 삭제 권고

작년 5월 방한해 외교부, 인권위 등 다수의 정부기관 및 인 권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던 프랭크 라튀 유엔 의사 표 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발전권 및 모든 인권, 시민·정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올 해 초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라튀 보고관은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 원 의사표현의 자유권, 언론매체의 독립성 등 8개 분야에서 우려를 표하고 우리 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다수의 명예훼손 민·형사소송이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명예훼손 금지규정 이 만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형법에서는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 수 단의 개선을 검토하고, 신분 확인 대상자가 범위를 자지를 만 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터넷에서의 의사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전기통신 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위헌 결 정을 내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의 적정한 운영과 회원의 공공 관심사에 관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 아니다

정모씨는 2009년 5월 자신이 가입된 모 환경단체 홈페이지 지에 단체 대표 박모씨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의 내용이 담긴 '박모씨 자격정지 하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 재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올해 1월 22일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 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주된 목적 은 단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상임대표인 피해자를 제명하 기로 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제명을 위한 소집질타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사후에 다퉈야 할 문제"라며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단체 회원의 공공의 관심 사안이며, 노출대상이 회원에 국한 된 점, 인격 비하 표 현이 없다는 점, 비록 피해자의 개인적 피해가 적지 않더라도 부수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그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안기부 X파일' 관련

도청된 대화내용 보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과 관련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 집장에게 모두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사가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을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화내용을 공개했다고 볼 수 없고, 보도시점에서 8년 전 대화가 비당한공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고 도청자료 입수 과정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방법의 상당성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김 전 편집장도 자료의 취득과정이나 보도 방법 등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언론사가 불법 감청 결과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보도함으로써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보도로 얻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홍훈 등 5명의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계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에 대한 실체를 고발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사는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만나 특정 대통령 후보 진영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정치인·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석 띄움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를 인기부 X파일 테이프를 입수해 2005년 7월 보도한 혐의로, 김 전 편집장은 그 다음달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혐의로 2006년 3월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전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보도했고 그 내용 중 공익상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 보도한 책임이 있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 대화 내용을 실명 보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이 기자에게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한편, 검찰은 인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적으로 도청된 X파일인 만큼 그 내용을 가지고 처벌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즉 독이 든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 이룬(독과수이룬)을 내세워 도청된 파일에 등장하는 관련자 대부분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日 최고재판소 취소광고 게재 결정

“스모 승부조작 기사충분한 증거없어 취소한다”

일본의 고단샤(講談社)는 자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주간현대(日本씨름(스모)계의 승부조작 의혹을 보도한 4개의 기사와 관련, 2010년 11월 15일에 발매된 동지 11월 27일호에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기사를 취소한다」는 취소광고를 게재했다.

일본 신문협회보(2010년 11월 23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 취소광고의 대상은 카타노우미(北の湖) 전 이사장이 현역 시절 승부조작을 했다고 보도한 주간현대 2007년 3월 10일호와 전 요코쓰나(横綱) 아사쇼오류(朝晴龍) 등의 승부조작을 보도한 2010년 2월 3, 10, 17일호의 각 기사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스모 승부조작 기사가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지난 10월 21일 함께 4,400만엔의 손해배상과 함께 취소광고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주간현대는 고단샤 대표이사, 주간현대의 발행인, 편집장, 집필자 등의 공동명의로 취소광고를 게재하였다.

한편 주간현대는 취소광고와 함께 「취소광고는 한법위반」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을 2페이지에 걸쳐 게재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19조에 대해서도 언급, “승부조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속까지 개입하는 것은 최고재판소라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삿바로지법, NHK가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일본 삿바로시의 사진작가인 나와다 라이신(綿田頼信)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NHK의 뉴스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사용돼 저작물을 침해당했다고 NHK를 상대로 약 1,076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삿바로 지법은 지난해 11월 10일 ‘사사사건 보도의 경우 저작권은 제한된다’는 NHK의 주장을 물리치고 40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신문협회보(2010년 11월 30일자)에 의하면, NHK의 기자들은 풍력발전 투자사업을 하는 벤처기업을 취재하면서 사무실에 걸려있는 나와다씨의 풍차 사진을 촬영, 2008년 4월 2일 한 종합상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일본 최초의 대규모 풍력발전 펀드를 구축해 놓았다’는 내용의 뉴스프로에서 방송하였다.

재판부는, ‘사진의 영상은 사사 사건의 보도’라는 NHK의 주장에 대해 피사체와 펀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쪽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NHK, “뉴스영상 증거채용 안된다”

2010년 겨울호 기간지 언론중재 일본동향편에서는 ‘일본 방송사들 “뉴스영상 보도 목적 외 사용 안된다’는 제목으로 뉴스영상이 법원의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일본 방송사들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신문협회보(2010년 8월 31일자) 기사를 인용해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한 지방법원이 뉴스영상을 증거로 채용해 해당 방송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문협회보(2010년 11월 23일자)에 의하면 가코시마 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6일 가코시마시에서 고령의 부부를 살해한 강도살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무단으로 제출한 NHK의 뉴스영상을 증거로 채용했다. 증거로 채용된 영상은 한국에서의 지문위조사건을 보도한 영상이며, 변호인은 지문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NHK는뉴스영상의 보도목적이외사용은유감이라는내용의 항의문을가고사지방법원과 변호인에게 전달, "영상을사실인정의증거로하지말라"고요구했다.

도쿄지법, 인터넷에 이미 유출된 정보를 수록한 서적에 대해 프라이버시침해 인정

신문협회보(2010년 12월 7일자)에 의하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인터넷상에 유출된 경찰의 국제테러에 관한 수사자료를 수록한 서적에 대해 출판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서적에 실명과 얼굴 사진이 게재된 재일 이슬람교도들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가 된 서적은 제3서판이 11월 25일에 간행한 유출 『공안테라정보』 전 데이터이며, 이 서적에는 인터넷에 유출된 경시청 공안부 국제테러담당 수사원의 프로필, 수사에 협력한 재일 이슬람교도들의 개인정보, 청취기록 등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라 하더라도 서적을 통한 개인정보의 공개는 공익의 목적이 없으며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최고재판소, TV프로그램의 인터넷 전송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올해 1월 18일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NHK와 민간방송국 5개사가 자사의 TV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업자의 사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신문협회보(2011년 1월 25일자)에 의하면, 18일에 이어 20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상고심 공판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는데, 두 판결 모두 TV프로그램의 전송 주체는 사업자가 아니며 이용자면서 NHK 등 방송국측의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을 파기, 고법으로 환송했다.

NHK 등은 독점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TV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 및 '송신가능화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마네키」TV를 운영하는 나가노(長野)상점에게 사업금지와 1,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마네키 TV는 이용자가 소유한 소비자제품의 영상전송기와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 TV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재판부는 나가노상점이 기기를 TV 안테나에 접속시켜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전송의 주체로 인정하고 계약하면 누구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불특정 공중에 해당하므로 공중송신권, 송신가능화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국동향]

PCC, “공무원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

프레스가제트(www.pressgazette.co.uk) 2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가 트위터 메시지(이하 트윗)의 공표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PCC는 Daily Mail과 일요일판 Independent가 개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도한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작년 런던 교통국 소속 공무원인 Sarah Baskerville은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인용 보도한 두 언론사에 대해 PCC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청인의 트윗은 11월 14일자 Independent의 “Baskerville의 괴로움”, 13일자 Daily Mail의 “이 트윗 좀 누가 없애주세요” 제하의 기사로 보도되었다.

Daily Mail은 신청인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과정의 지도자를 “미쳤다”고 표현하고, “(근무 중에) 술이 깨지 않아 힘들다”, “너무 피곤해서 퇴근하고 싶다”고 올린 트윗을 공개했다. 또한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메시지 즉 정부의 예산 낭비를 비판하는 보수당 의원에 대한 불평, 노동당 의원이 정부의 SPIN에 대해 공격하는 트윗을 재전송한 메시지 또한 Sally Bercow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내는 내용의 메시지 등도 함께 보도했다.

한편 Independent는 Daily Mail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서 신청인이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Independent는 해당 보도에서 신청인의 Flic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은 700여명의 팔로어가 볼 수 있도록 쓴 것으로, 두 언론사의 보도는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 언론사는 신청인의 트위터 계정이 대중에 공개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이 올린 글은 어느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신청인의 트위터 계정을 등록(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바 없었고(신청인은 보도 이후 계정을 비공개로 변경했다), 대민 업무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메시지를 보도한 것은 자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두 언론사는 PCC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청인이 근무 중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합당한 보도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PCC는 언론사가 공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취재하여 기사화하였고, 해당 트위터 메시지가 신청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었으므로 신청인의 사생활을 “장담치 못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PCC의 Stephen Abell 국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적인 영역인지를 가려야 하는 이러한 신청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소수의 팔로어를 타겟으로 하여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전국 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동향]

누구나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대, 촬영 전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과연 합리적인가

The News Media & The Law(2010, 여름)는 미국에서 휴대폰과 같은 개인적인비디오 장비도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으로 적용해, 비평가들은 누구나주머니 속에 범죄 장비를 소지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3월 초 빨간 혼다 오토바이를 타고 주 경계의 95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Anthony Graber는(속도가 조금 빨랐다고 자신도 시인하고 있다) 회색 승용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창바지를 입은 카주알한 차림의 운전자는 총구를 아래로 내리고 Graber에게 다가와 내리라고 명령한 후 본인이 메릴랜드 주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Graber에게 과속 티켓을 발부한 후 떠났다.

Graber가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더라면 이 일은 단순한해프닝으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평소 교통체증이나 사고 순간을 찍어서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기 위해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쓰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이 Graber의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압수했고,

25살의 메릴랜드주 공군중사인 Graber는 촬영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위반으로 체포, 구속되었다. 해당 조항의 위반은 중범죄로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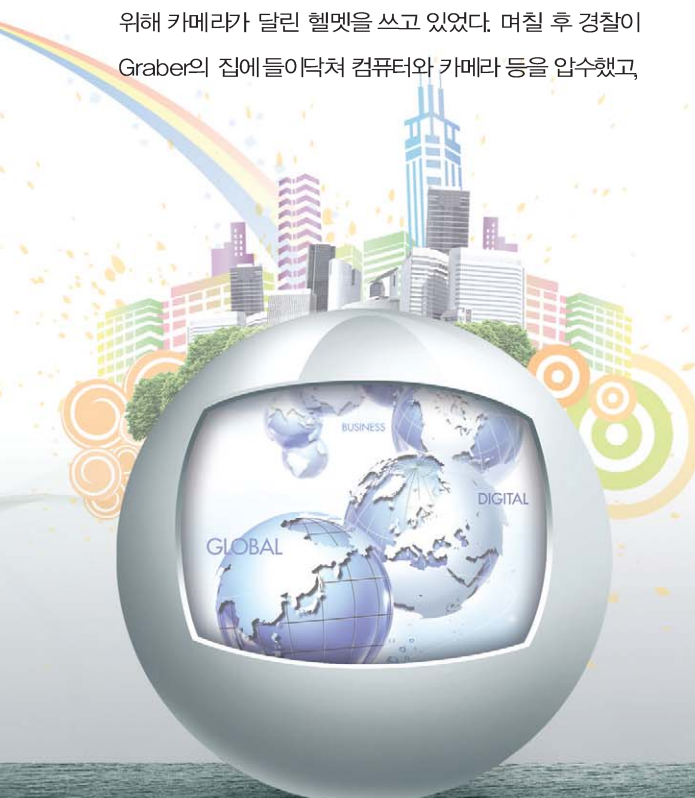
워싱턴포스트 6월호가 이번 사건을 '엔터리로, USA Today가 "사법권의남용"이라고 표현한바 있으나 메릴랜드 외에도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건,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등 11개 주에서 촬영 이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카메라 달린 휴대폰이 보급되고, 찍은 영상이 수분 안에 인터넷에 퍼지며, CNN, 지역 뉴스통신사, 신문사 웹사이트에서 시민의 영상을 제보받아 보도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된 법이다.

미디어 관련 단체 및 자유주의 진영의 시민단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 조항이 사기 또는 경찰의 작권남용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워싱턴 Cato Institute의 법률정책 분석을 맡고 있는 David Rittgers는 "누구나 주머니 속에 '범죄도구'(휴대폰을 휴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무조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주 내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형편이다. Graber는 Harford County에서 기소됐다. 그러나 근처 St. Marys County에서는 휴대폰으로 경찰을 촬영한 한 여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주 검사는





"민약 경찰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촬영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느냐 여부가 기준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대화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주 검사의 사생활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공공도로에서 차량을 세우는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Graber의 소송대리인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메릴랜드 지부 David Rocah 변호사의 입장이다.

Ritgers 검사는 Graber가 실제로 유죄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Graber의 오토바이를 세웠을 때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쉽게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심원들이 유죄를 결정할 리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999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Dateline NBC> 프로그램의 PD들이 몰래 카메라를 이용, 혼잡한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에서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촬영한 사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화 당사자들이 공공장소에 있었으며, 대화 내용이 개인적이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근무 중인 경찰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입장이 다르다. 2006년 뉴햄프셔에서는 형사가 아들에게 강도 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을 가정용 보안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의 Cumberland County에서도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고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법 조항으로 인해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이 사적인 영역을 보호받기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테네시주의 미디어 전문 변호사인 Robb Harvey는 수년 내에 경찰과의 대화를 촬영하는 바람에 체포되는 사건이 점차 늘 것이고, 기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하이오의 Richard Goehler 변호사는 공무원 집행자들이 행여 보도에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자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지만, 취재 중임을 밝히고, 가능하면 공공장소에 머물며 길을 비켜주라고 조언했다. "취재 행위가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Harvey 변호사는 취재 중 경찰이 와서 떠나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되 경찰에게 취재장비를 넘길 필요는 없다고 밝힌다. 대신 경찰과 사측에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언론, 주 의회, 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해석을 두고 각기 월가월부하는 동안 Graber 사건은 계속 중이다. 그는 자택에서 체포되어 26시간 동안 구금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Harford County의 순회법원에서 10월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Graber는 현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으나 4월경 마이애미의 Carlos Miller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으며, 오토바이를 팔고 다시는 타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을 무서워하게 됐다. 체포당해본 것이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통신원 보고]

최지선 통신원, 파리2대학 커뮤니케이션학박사과정

영국 고등법원, 살인사건 피고인의 사진 게재는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초래하므로 법정 모독에 해당

영국 고등법원은 3월 3일 The Sun과 Daily Mail이 각각 자사 신문의 온라인 판에 살인 사건 피고인의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재판과 관련하여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라이언 워드는 자동차 정비기사 크랙 워드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세필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신문은 온라인 판에 워드의 사진을 판결이 선고되기 전 각각 5시간, 19시간 동안 게재하였다가 삭제한 바 있다.

세필드 법원의 담당 판사는 어떠한 배심원도 두 언론사가 온라인 판에 게재한 사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배심원단을 해고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반면, 도미니크 그리브 법무장은 두 언론사가 워드의 사진을 게재하고, 배심원단들이 이 사진을 봄으로써 판결에 '심각한 편견과 장애'를 초래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앵거스 맥쿨러 왕실 고문 변호사 역시 두 언론사가 "판결을 방해할 실질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문 기사나 사진 게재가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며 1981년도)의 법정 모독에 관한 법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언론사의 변호사들은 "거제되었던 사진이 금방 삭제되었으며 배심원들이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하지 않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편견의 위험은 대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진의 게재는 즉시 수정된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담당 판사들은 "워드의 권총을 들고 있는 사진 게재가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언론사는 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이 있다. 사진 자체가 워드의 사진을 본 배심원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상당한 편견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언론사가 게재한 사진이 워드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벽돌로써 살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은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과거 모습인데, 이를 게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발생하게 했다는 점이 두 언론사가 법정 모독죄로 유죄를 선고 받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의 모스 판사는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들로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문제가 생기곤 한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정보가 한번 게재되면 완벽하게 제거되기는 힘들며, 설사 배심원들이 인터넷 검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믿는





다해도 법원은 판결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며 “이번 케이스는 인스턴트 뉴스2)에도 형사재판의 진실성과 완벽함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보호가 요구된다는 인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등법원은 조만간 유죄 선고를 받은 두 언론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두 언론사의 범죄 보도와 관련된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로 언론사들은 범죄 보도에 있어서 사진 게재를 포함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될 것이며, 특히 금방 수정이 가능한 온라인 판 보도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프랑스 최고시청각위원회(CSA), 지방선거와 관련해 방송이 지켜야 할 권고사항 발표

프랑스 최고시청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 CSA)는 3월 치뤄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들이 지켜야 할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는 1986년 9월 30일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 1조, 13조, 16조와 선거 기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에서의 정치 다원주의 원칙과 관련한 2011년 1월 4일자 심의에 의거하고 있다.

이 권고 사항은 1차 투표 6주 전인 2월 7일부터 투표 당일 까지 적용된다. 후보자, 정당, 후보 지지 등이 전파를 타는 시간과 정치적 발언이 방송되는 시간 측정과 관련하여 방송 시간을 CSA가 직접 측정하는 채널은 TF1, France 2, France 3

채널의 전국 프로그램, Canal +, M6 등 5개 전국 채널이며, France 3의 지역 방송 프로그램 France 5, France O의 지역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LCI, Itele, BFM TV, BFM, Europe 1, Radio France (France Inter, France Info, France Culture, France Bleu), RMC, RTL 등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채널들의 경우는 방송사들이 직접 시간을 측정하여 매주 CSA에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이밖에 다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채널들은 CSA의 요청에 따라 정치적 발언, 후보자 지지 등 방송 시간을 측정하여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방송사가 직접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 방송사들은 해당 선거 기간 중 시간을 측정하는 프로그램들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녹화 저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CSA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CSA는 선거 기간 중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들이 지켜야 할 정치적 다원주의 원칙에 대한 심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선거법, 보편적인 선거에서 공화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1962년 11월 6일 법, 유럽의회 대표 선거에 관한 1977년 7월 7일 법,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1977년 7월 7일 법 11조, 1982년 7월 29일 방송법 6조,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 1조, 13조, 14조, 16조, 장애우들의 시민성·참여·기회·권리 균등을 위한 2005년 2월 11일 법,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에서의 정치 다원주의 원칙에 관한 2009년 7월 21일 법에 의거하고 있다.

이 심의는 각각의 선거에서 특별한 권고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모든 선거에 적용된다. 방송사들은 투표일 6주 전부터 투표일까지 정치 다원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부분 선거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그 기간에 맞추어 단축된다.

정치 다원주의 원칙의 준수를 위해 방송사들은 선거 관련 뉴스 보도시, 후보자, 후보자 리스트, 정당 등을 공평하게 방송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의 경우, 발언 내용 및 맥락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정치 토론에서 특별히 후보자 및 정당 지지 등이 표현된 경우 별도로 시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또, 방송사가 보도하는 코멘트, 요약 등 진실성에 대한 일정한 배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자와 관련하여 인용하는 것들 역시 일반적인 의미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사의 경우 보도하는 사진이나 이미지 출처를 체계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 경우 원본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가 방송사에 초대되는 경우 뉴스의 필요성과 연관되어야 한다.

또한, 이심익은 연간 시청자가 25% 이상인 채널의 경우, 선거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에 대해 청각 장애우들을 위한 자막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채널들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되는 선거 관련 방송에 대해 장애우들을 위한 자막방송을 하도록 한다.

선거 광고와 관련하여 방송사들은 정치 광고 프로그램 방송이 금지되며, 선거 및 후보자에 관한 광고 메시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언론 매체 광고를 할 수 없고, 선거와 직접 관련된

작가의문학 작품에 대한 광고를 방송할 수 없다. 선거 캠페인 과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전날부터 방송이 금지되며 마지막 투표소가 닫힐 때까지 어떠한 선거 결과도 방송을 통해 발표될 수 없다.

한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들은 필요한 경우 반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예훼손, 거짓 증언 등은 방송해서는 안 된다.

이심익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선거 기간에 CSA의 특별한 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되어 권고 사항을 따르게 된다.

르몽드, 취재원 보호 침해로 검사고소

르몽드는 2월 24일 전 노동부 장관 에릭 보르트와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대주주인 릴리안 베탕쿠르 스캔들 사건과 관련하여 취재원 보호 침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르몽드는 베탕쿠르의 가택수사 후, 제라르 다베 기자와 자크 플로루 기자가 쓴 “경찰이 베탕쿠르 여사의 ‘작은 서류’를 수색 중” 제하의 기사를 2010년 9월 2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베탕쿠르의 변호사는 ‘비밀 수사에 대한 침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인 필립 쿠로에는 기자들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크 플로루 기자와 가택수사 담당 판사였던 이자벨 프레보스트-데스프레즈 사이에 30여건의 휴대 전화 문자가 오간 것이 드러났다.





현대전화 문자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르 몽드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추재원 보호 침해이며, 이에 따라 공권력에 의해 개인적 자료가 비검한 방식으로 수집되는 추재원 보호 침해 및 직업상의 비밀 침해를 근거로 르 몽드는 파리 검찰에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슬로바키아 정부, 미디어 법안화 계획

슬로바키아 정부는 국내외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는 미디어 법을 개정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월 23일 개정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베타 라디코바 총리의 중도우파 연립 내각은 미디어의 자유를 보다 향상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3년 전 좌파 내각인 로버트 피코 정부가 강화한 반론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피코 정부의 미디어 법은 언론이 뉴스 기사에 언급된 사람들의 반론을 모두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기자들이 정치인들의 부패를 조사하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OSCE)와 같은 국제 인권 감시 기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였고, 유력 일

간지들은 반론권을 규탄하기 위해 1면을 공란으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안은 강화된 반론권을 제한한 것으로 불안전하고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뉴스 기사("only to cases when the published information is false, incorrect or incomplete")가 보도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기자협회(The Slovak Syndicate of Journalists - SSN)도 이 개정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 편집지주 - 1981년은 해당 법률의 제정연도임 통상적으로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법령 앞에 제정연도를 표기함

2) The Sun과 Daily Mail이 보도한 뉴스가 인터넷 온라인 판에 게재된 것으로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뉴스를 지칭한 것임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들은 사건개요를 게재한 것이므로 보도내용 원문, 피해구제보도문 등은 해당 사건이 수록된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 · 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980년 12월 ‘언론기본법’ 제정시 도입된 반론권 제도(당시 법률상의 명칭은 ‘정정보도청구권’ 인)의 충격과 혼란을 원충하는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실질은 ‘조정’에 해당)가 도입되었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언론중재제도는 도입 초창기에는 언론계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1987년 11월 언론기본법의 폐지 등에 따라 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존립 근간에 대한 위협과 언론중재제도의 주요 청구권에 대한 위헌 시비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언론학자와 법률가,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언론피해구제 제도로 발전해왔다.

특히 2005년 1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언론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확고해졌다. 그간 정간물법, 방송법, 민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 제도가 하나의 법으로 단일화되었고, 종전에 사용하던 ‘중재’라는 용어를 본연의 의미에 맞게 ‘조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별도로 ‘중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고유한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조정 · 중재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는 등 언론조정 ·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09년 8월에는 개정 언론중재법

의 시행으로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및 언론사 닷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에 대해서도 언론조정 · 중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올해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느덧 언론중재제도 시행 및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이 된 해이다. 이에 언론조정 · 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그간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금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주요 사건들을 회고해보려 한다.

그러나 창립 30주년 특집호인 이번 2011년 봄호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위원회 30년 역사에서 언론조정 · 중재제도가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 시기였던 2000년대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과 관련한 조정 · 중재 사례 10개로 제한하여 수록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1981년부터 2009년까지 100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언론조정중재영문사례집을 올해 중 발행할 예정이므로, 위원회가 처리한 주요 사례는 향후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1. 제2연평해전(2차 서해교전)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179 180
청구명 : 조정 · 반론청구
신청인 : (주)문화방송
피신청인 : 월간조선사
중재부 : 서울재중재부
접수일 : 2002.8.2
처리결과 : 각불성립결정

신청인 방송사가 제2연평해전(2차 서해교전)의 발생원인을 북한 의 도발이 아니라 연평도 어민들의 월선조업과 이를 통제하지 못한 해군의 잘못을 추궁하는 인상의 보도를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 전날인 6월 29일에 북측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해군 고속정(잠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화염에 휩싸였고,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 교전으로 운영하소령(당시대위, 1계급추서) 등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1999년 6월 15일 최초의 서해교전에 이어 '제2차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었다. 2007년 6월 28일에는 당시 침몰한 고속정을 대체한 차기고속함 1번함이 운영하함으로 명명되어 진수되었으며, 2009년 6월 2일 실전배치되었다.

■ **조정개요** : 월간조선은 2002년 8월호 추적 버림받은 MBC 뉴스-서해도발에 대한 오보, 왜곡 계속... 여론과 사실로부터 고립되다. 여론과 사실로부터 버림받은 MBC 뉴스' 제목의 기사에서 월간조선이 MBC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MBC가 서해교전 사태가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우리 꽃게잡이 어선들의 월선조업과 이에 대한 해군의 통제 부재에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으로써 흥분한 여론은 MBC에 반역적 보도행태라는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뉴스시청률은 KBS를 크게 밀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MBC는 북한군의 선제공격은 명백한 잘못이고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일부 어선들의 무리한 꽃게잡이 월선조업이 한 원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자성론이 일고 있으며 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된 사실 등이 보도의 골간이라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2002 서울중재179)와 반론보도청구(2002 서울중재180)를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월간조선은 일부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해당보도가 사실이므로 피신청인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을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월간조선은 2002년 12월호에 '반론보도문' 제목으로 "(전략) MBC 뉴스데스크는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 전투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개전의 한 원인을 제공한 우리 어선

의 꽃게잡이 월선 조업에 대하여도 행정·군사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한 것임에 반해 월간조선은 월선조업이 이번 서해교전의 한 원인을 이루고 있다는 군관계자 및 연평도 주민들의 객관적인 증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중략) 월간조선이 인용한 2002. 7. 4자 시청률만을 보더라도 다른 시청률 조사기관인 NIELSEN MIDEA RESEARCH에서는 MBC 뉴스데스크 18%, KBS 9시 뉴스 18.7%로 대등하게 시청률을 집계하고 있어 MBC의 서해교전 관련 보도 논조가 뉴스시청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월간조선이 인용하고 있는 2002. 7. 4자분당 시청률 변화표를 보면 연평도 관련 보도를 할 당시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상승하거나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게재하였다.

2.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55
 청구명 : 반론청구
 신청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3. 2. 21.
 처리결과 : 기각(개별적 연관성 없음)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이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라고 보도해 전체 정신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 **사건개요** :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형 지하철 화재 참사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화재의 원인은 지적장에 2급 판정을 받은 50대 남자의 방화로 인한 것이었다. 제1079호 열차에 탑승한 방화범이 열차가 대구 중앙로역에 진입한 순간,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개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그러나 1079호 열차는 정차중이어서 승객들 대부분이 대피한 반면, 불길이 반대편 선로로 진입하던 제1080호 열차로 옮겨 붙어 이 열차의 승객들 중 대부분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조정개요** : KBS는 사건 당일 6차례의 뉴스속보를 통

해 경찰은 방화용의자 김모씨가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50대 정신질환자로 평소 신병을 비판해 스스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용의자 김씨는 정신지체나 정신질환과는 다른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을 뿐임에도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장애자’ 라고 보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편견을 심화시켰으므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재부는 보도내용에 신청인 단체가 직접 언급된 바 없고, 용의자 김씨를 ‘정신질환자’, ‘지체장애자’ 등으로 표현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들 개개인 또는 신청인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한편,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부상자 이모씨를 사망자로 잘못 분류해 영안실로 옮기려 했다가 이씨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계속하자 살아났다는 동아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03서울중재58), 대구지하철 참사 수사본부 간부인 신청인들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유가족과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가운데 초저녁부터 ‘폭탄주’를 마시며 큰 웃음소리마저 내는 술판을 벌였다는 뉴시스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2003서울중재67)이 있었다.

3. 쓰레기만두 파동 관련 사례

사건번호: 2004서울중재313

청구명: 정정청구

신청인: 이○○ 외 6인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2004. 7. 6.

처리결과: 조정성립(PR보도)

신청인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로 만두 재료를 만들어 납품해 온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사건개요**: 2004년 6월 4일 경찰청에서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수거, 폐 우물로 탈염·세척하여 전국 25개 유명 식품회사 등에 만두, 야채

빵의 재료로 납품해 온 약 6명 업체를 입건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토대로 방송에서는 6월 6일 저녁부터, 신문은 6월 7일부터 ‘쓰레기 만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고, 만두업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25개 만두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 6월 10일 13개 불량만두 제조업체와 상품명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만두업계에서는 경찰 발표가 과장됐음을 주장, 식약청에서 6월 15일 만두업체에 대한 줄속 조사를 시인하고 일부 업체에 대한 무혐의 발표함으로써 만두파동은 일단락되었다.

■ **조정개요**: KBS는 2004년 6월 6일자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로 만두 재료를 만들어 온 식품업자들이 붙잡혔다고 보도하면서 이들이 납품한 재료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다량 검출됐으며, 시중에서 팔리는 완제품 만두속 재료로 인근 단무지 공장에서 쓰레기로 버린 썩거나 상한 무그리고 무찌꺼기가 사용됐고, 쓰레기 단무지를 씻는 물도 오염된 지하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6월 7일자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4월까지 불량만두속 재료가 납품된 걸 감안하면 유통기한이 9개월인 만두 재료와 냉동만두가 아직 팔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고, 6월 11일 및 13일자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불량단무지 제조업체에 대한 미약한 행정처분 등 만두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6개월마다 공인기관에서 자투리 단무지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았고, 1차 탈염에서 사용한 물은 식약청 46개 검사항목 중 ‘탁도’에서만 부적합했고 2차 탈염과정에서는 식수로 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였으며, 만두 제조공정에 살균·멸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제품에서는 세균이 나오지 않고, 방송에서 만두소 제조과정으로 잘못 보도한 화면은 상품 가치가 없는 단무지를 폐기처리하는 과정이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KBS는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인해 관련 업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음을 이해하고, 양당사자는

당초 만두소로 쓰였던 단무지 자투리는 정상적인 식품이었다는 단무지업계의주장을 포함해 정상적인 단무지 생산과정을 보도하면서 해당 업체가 종업원 위생교육과 제조공정 청결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등 단무지가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취지의 PR.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번 쓰레기 만두파동과 관련해 단무지업체 및 만두업체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9개 매체를 상대로 23건의 청구를 제기하였다(2004 서울중재313~318, 2004서울중재320~328, 2004서울중재336~343). 이들 사건 대부분은 「단무지 업체 정상화 “한심하고 드세요”」, 「만두제품 99.6% 안전성 검증」 등의 제목으로 단무지와 만두가 위생상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거나 심리전에 보도문을 게재하여 취하되었다.

4. 승례문 화재사건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53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8. 2.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

신청인이 승례문 화재 발생 사실을 타 방송사에 비해 늦게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에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승례문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5시간 만에 누각을 받치는 석축 부분만 남긴 채 승례문이 전소한 사건이다. 처음엔 전기시설의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라고 알려졌으나 방화범이 자신의 토지보상문제로 불만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직후 승례문 복원작업이 착수되었고, 2011년 2월까지 약 40% 정도 복원이 진행된 상태로 2012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 **조정개요** : 경향신문은 2008년 2월 12일자 「KBS ‘승례문 화재’ 특종 보도’ 항의 빗발」 제목의 기사에서 MBC, SBS는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중계차를 연결

해 승례문 화재 사건 뉴스 속보 방송을 풀로 내보낸 것에 반하여, 공영방송인 KBS는 1·2TV 모두 정규 편성된 설날특선 영화를 방송한 이후인 밤 12시 57분부터 풀편성이 이뤄졌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비록 풀편성에 앞서 승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속보자막, 3분 현장중계차 연결 등이 있었지만, 공영방송인 KBS가 승례문 전소 위기에도 특선 영화를 계속 방영하는 등 특종 보도로 K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국보 1호가 타고 있는데 공영방송이 영화나 틀고 있다니 실망이다’, ‘국가재난 방송사가 뒷북 보도로 일관해 무책임하다’는 등의 의견이 줄을 잇는 등 시청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KBS는 9시 메인 뉴스 말미에 승례문 화재에 대한 속보를 내보낸 이후 1시간 간격으로 3차례 현장중계차 연결 뉴스속보를 방송하였고, MBC, SBS와 마찬가지로 밤 12시 57분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인 설날특선 영화 방영을 중단하고 뉴스속보 방송을 풀로 내보냈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KBS가 3차례 현장중계차 연결 속보를 방송했다는 부분은 원보도문에 KBS측 반론으로 포함된 내용이므로 제외하고, 밤 12시 57분부터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뉴스속보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디지털타임스는 「국보 1호보다 영화가 중요하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향신문과 동일한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KBS는 정정보도를 청구(2008 서울 조정54)하였다가 심리전 디지털타임스가 정정보도를 게재하자 취하한 사건이 있었다.

5. 태안 기름유출사건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73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보건복지부
피신청인 : MBC-TV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08. 3.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

태안 기름유출피해지역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하던 주민이 원유의 휘발성에 노출되어 실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의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해상크레인이 충돌하여 총 1만 2547kl에 이르는 원유가 유출된 사건으로 한국해상의 기름유출 사고 가운데 최악의 사건이었다.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짙은 기름띠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태안과 그 인근 지역의 양식장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해안의 기름띠어를 제거하는데 동참하였고, 생계의 터전을 복구하려는 주민들의 처절한 노력 덕분에 태안지역은 현재 청정해안의 옛모습을 되찾았다.

■ **조장개요** : MBC는 2008년 2월 19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중 「신음하는 주민들, 두통·구토·실명」 제목의 보도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향후 발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태안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당장 걸로 드러나는 심각한 이상 증상에 대해 보도하였다. 특히 상당수 주민들이 기름냄새 등으로 인해 두통에 어지럼, 피부질환, 특히 눈에 이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하루 7시간씩 의매일 기름 제거 작업을 했던 70대 A 할머니는 언제부터인가 멀쩡하던 두 눈이 따끔거리더니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해 결국 얼마 전 한쪽 눈을 실명을 하였고, 기름 제거 작업장을 다닌 후부터 눈이 아주 안 보인다. 70대 B 할머니는 기름 유출 후 400시간이 넘도록 원유의 강한 휘발 성분에 눈이 그대로 노출돼 왔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A 할머니는 기름 유출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이미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으로 인해 왼쪽 눈을 실명한 것이므로 방제 작업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BC의 보도로 인해 주민들이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실명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심리 결과, MBC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수용해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 결과 태안 주민의 실명은 기름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기름 유출 사건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신청인의

부친이 태안 기름 유출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대회에서 분신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유족들이 한국일보와 뉴시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2008 서울 조정 43, 2008 서울 조정 44)하였다가 심리 전 일정액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인터넷 사진 삭제등의 조치가 이뤄진 후 취하한 사건도 있었다.

6. 광우병 논란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123
 청구명 :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 농림수산식품부
 피신청인 : MBC-TV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8. 5. 6
 처리결과 : 직권결정(정정 및 반론 - 피신청인 이의신청)

미국 여성 '이레사 빈슨' 이 인건광우병으로 사망하였으며,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6년 '30개월 미만인 살코기' 라는 조건으로 재개되었고,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소는 빼와 내장을 포함, 30개월 미만 소는 대부분의 특정위험부위(SRM)를 포함(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SRM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의 조건을 대폭적으로 낮추면서, 이른바 '광우병 논란' 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문화방송의 PD수첩 보도로 인해 논란이 크게 확대되었고, 청계천 등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린 촛불시위가 이어졌다.

■ **조장개요** : MBC는 2008년 4월 29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축산농가에서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저지른 소들에게 강한 자극을 줘 일시적으로 일으켜 세

우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② 광우병이 예방과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이고, 끓여먹거나 익혀먹어도 감염물질이 사라지지 않고,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병이라고 언급한 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의사망원인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즉 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③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으며,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적이 있는지, 보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하였다. ④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현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중 일부가 들어오게 되고, 30개월 미만이라는 수입 쇠고기의 연령 제한이 폐지됨으로 인해 개월수가 높을수록 광우병 위험이 높아지며,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총 7개의 쟁점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는데, MBC의 보도내용 ①과 ②에 대해서는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고,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미국 농업부 발표에 의하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의사망원인도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또한 보도내용 ③과 ④에 대해서는 협상체결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가 2007년 미국 현지 도축장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한 바 있고,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주장을 정정 및 반론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MBC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 법원으로 자동으로 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MBC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주장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할 것을 판결하였다.

형사적으로는 검찰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

관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PD수첩제작진에 대해 기소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1심에서는 보도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비록 일부 허위사실이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 현대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이다.

한편,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청문회 장면과 인터뷰 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청구(2008서울조정136)한 사건도 있었다. 심리 결과, 심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7. 박연차 정관계로비 사건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김무성

피신청인 : (주)일요서울신문사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9. 2. 2

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보도 및 사과)

신청인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소문에 근거해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소위 '박연차 리스트'로 불리는 사건으로 2005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종증권 매매와 2006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박연차 회장의 휴캠프 인수 과정 등을 조사하던 중 수많은 정치인들과 유력인사들이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뇌물을 수수해온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특히 2008년 12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세종캐피탈 흥기옥 사장과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청탁과 뇌물을 수수, 세종캐피탈이 농협에 세종증권을 매각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져 구속되었고,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이 박연차 회장과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은 서거하였다.

■ **조정개요** : 피신청인 일요서울은 2009년 1월 4일자 「친박측, ‘정치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 제목의 기사 및 2009년 1월 25일자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장고’ 제목의 기사에서 김무성 의원을 둘러싼 음해성 소문이 돌면서 김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 졌다고 보도하면서, 김 의원이 같은 동향인 부산 출신의 태광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부산 정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부산의 전 현직 의원 2~3명이 더 연루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 회장으로 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러한 구설수에 오른 사실도 없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 졌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요서울이 사실 확인 없이 소문에 근거해 보도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일요서울은 김 의원의 정정청구부분의 주장 전부를 수용하고 아울러 사실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독자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해,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박연차 회장이 매입한 부지에 고도제한 완화를 허가해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정정·손배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101), 최철국 의원이 박연차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았으며 검찰 소환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손배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106, 2009서울중재37), 김학송 의원이 박연차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곧 소환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손배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117), 김무성 의원이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받은 자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손배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137, 2009부산조정3), 전 경찰총장 어청수가 재직 당시 박연차 회장에게 거액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수사대상에서 제

외됐다고 보도했으나,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며 정정·손배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21), 전국정원 2차장인 신청인이 박연차 회장이 검찰조사에서 신청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박 회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정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223, 2009서울조정250), 김학송 의원이 박 회장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소환통보받은 사실조차 없었으며 정정청구한 사건(2009서울조정248) 등이 있었다.

8. 미네르바 사건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8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박대성

피신청인 : (주)동아일보사(신동아)

중재부 : 서울지법중재부

접수일 : 2009. 4. 13.

처리결과 : 중재회해결정(사과문 게재)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관련 글을 게재하여 명성을 얻은 사람이 K씨라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이 진짜미네르바이다.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7월부터 다음 아고라게시판에 ‘미네르바’ 라는 필명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리먼브라더스파산, 환율폭등 등 향후 경제에 대한 예측을 게재하였고, 이러한 예측이 사실과 맞아 떨어지면서 유명해졌다. 이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믿으면서 영향력이 커졌고, 50대 초반의 해외 거주 경험 있는 전직 증권맨 ‘K씨가 주축이 된 7인의 그룹’이라는 등 미네르바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확대되었다.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2008년 11월 절필을 선언했으나 12월 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는 내용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로 2009년 1월 구속당했다가 2009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다가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항소를 취소했다.

■ **중재개요** :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인터넷 경제대

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로 『제목』의 기사에서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 (중략) 나는 누구의 대변자도 아니고, 아고라에서 이미 밝혔듯 경제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제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 완전히 절필하겠다”는 등의 미네르바 K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박대성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방에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80편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고, 그 글 중에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환율 폭등 및 경기 침체 예측으로 크게 명성을 얻은 ‘미네르바’는 신동아가 인터뷰한 K씨가 아니라 자신이라며 2009년 3월 19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중재 합의하였고, 중재절차 진행 중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청인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힌 데 대해 심심한 위와 더불어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신동아가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는 화해함에 따라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대로 결정(중재화해결정)하였다.

한편, 나라사랑 청년회에서 ‘미네르바’ 박대성이 신청인 단체 회원인 것으로 검찰 수사 확인됐다는 중앙일보 보도(2009년 1월 10일자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 / 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 제목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중재신청(2009서울중재8)한 사건도 있었다. 중재부는 신청인 단체에서 활동한 박대성 씨는 미네르바 박대성과 이름이 같은 사람일 뿐 무관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중재 결정하였다.

9. 신종 인플루엔자 A (신종플루) 관련 사례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2, 483

청구명 : 각정정청구

신청인 : OO초등학교

피신청인 : (주) 동아일보사, (주) 동아닷컴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9. 10. 26.

처리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정)

신종플루로 사망한 학생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신청인 학교가 같은 반에 다른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처음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돼 2010년 8월까지 1만 8천여 명이 사망함으로써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동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76만여 명이 감염, 이 중 270여 명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품귀 현상을 빚기도 하였다. 사람·돼지·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인 신종플루는 아직까지 그 전파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정개요** : 동아일보는 2009년 10월 23일자 「방역 시스템 믿어도 되나」 제목의 기사에서 초등학교 1학년 A군이 신종플루 간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라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10월 16일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9월 25일 체온 상승으로 처음 병원을 찾은 A군은 단순한 감기 기운이라는 말에 귀가했다가 열이 심해져 26일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신종플루 간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28일에는 등교를 하였으나 열이 심해 있다는 학교측의 연락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입원해 정밀검사한 결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A군이 신종플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하루 전인 9월 24일에는 같은 반 친구가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이 신종플루에 걸린 것만 미리 알려주었다면 입원시킬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고 좀 더 철저한 치료를 요구했을 텐데...” 라는 A군의 부모의 인터뷰를 게재하였다(동아닷컴은 동아일보의 기사를 전재하였다).

이에 대해 OO초등학교는 9월 25일 오전 발열로 인해 A군을 귀가 조치한 이후 A군은 등교를 하지 않았고, 학교 측은 A군과 같은 반 어린이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은 9월 28일 오후에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 A군은 이미 2회의 신종플루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폐렴 치료를 받는다고 학교에 통보를 하였기에 학교 측에서는 A

군의 상태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병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군이 반에서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양 당사자는 신청인 학교가 9월 25일 A군의 발열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시켰으며 그 이후 A군은 등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정정보도와 A군의 같은 반 친구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은 정밀 검사까 아닌 간이 검사 결과였기 때문에 학교 측이 A군의 학부모에게 미리 같은 반 친구가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확진 검사 결과를 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반론 보도를 함께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일부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 권한을 악용해 신종플루 치료제의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반론 보도를 청구(2009서울조정414)하였으나, 중재부에서는 신청인이 해당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한 사례가 있다.

10.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사례

사건번호: 2010서울조정886
 청구명: 정정청구
 신청인: 해군본부
 피신청인: (주) 동아일보사
 중재부: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2010. 5. 11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반론)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해경의 현장 접근에 제동을 거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사건개요** :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북한의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해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이다. 침몰 원인에 대해 초기에는 어뢰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등 다양했으나, 외국인 전문조사팀을 포함한 민군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었고,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진행되면서 40명이 사망자로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6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다.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3월 30일에는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였고, 4월 2일에는 저인망 어선 '금양98호'가 침몰하면서 탑승선원 9명 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침몰한 천안함 함미와 함수는 각각 4월 15일, 24일에 인양되었다.

■ **조정개요** : 동아일보는 2010년 3월 31일자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제목의 기사에서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의 통보를 받은 해경이 당시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501함과 1002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으나, 501함의 경우, 승조원의 구조를 위해 침몰해 가는 천안함에 가까이 가려고 했으나 해군이 제동을 걸었고 구조대원들이 탄 고속단정(립 보트)이 501함과 1002함에 각 2척이 있어 모두 4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2척만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해경과 수차례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501함보다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군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경 501함이 침몰하던 천안함과 서로 부딪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구조 활동을 위해 직접 접근이 아닌 501함이 보유한 2척의 립 보트를 요청한 것이고, 1002함은 구조 활동이 종료된 이후 현장에 도착하여 1002함이 보유한 립 보트 2척은 사용할 수 없었으며, 해경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없고 구조 활동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해군은 해경의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등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동아일보는 보도에 앞서 해군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원 보도문에 게재한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결국 해군이 주장하는 취지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미 충분한 반론이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합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중재부는 원 보도문에 반영된 해군 측의 주장을 제외하고 해군과 해경이 긴밀한 협조로 58명의 승조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반론 보도문을 동아일보가 게재하라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

정을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한편, UDT동지회 소속대원이 고한준희 준위와 함께 제3의 지점에서 대형 구조물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수색작업을 벌인 곳은 침몰된 천안함의 함수부근이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41),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해군이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늦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84),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지 않았고 최원일 함장 및 부함장은 구조된 직후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85), 침몰 천안함 함미를 민간 어선이 발견한 것과 관련해 침몰장비를 갖춘 해군 함정이 낚은 어선보다 못하다고 보도했으나, 해군 함정은 잠수함 등 수중이 동물의 탐색에 적합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87), 천안함 생존장병의 기자회견에 대해 '생존장병들이 입을 맞추고 나왔다', '해군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는 등의 천안함 유족들의 발언을 게재해 해군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88), 천안함 함미 인양 과정에서 해군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함미를 몰래 수중 이동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보도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적절한 보고 과정 후 이동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89), 해군이 중국, 일본 등 주변 강국에 대응하는 대양해군에 집착해 대북 전력보강에는 소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90),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중요 사실들에 대해 해군의 의도적 왜곡, 은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891), 함참의장인 신청인이 천안함 침몰 당시 술에 취해 통제실을 비웠으나 정상지휘했던 것처럼 문서조작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1036), 천안함 관련 취재자 백령도를 방문한 외신기자들이 백령도의 한 부대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국정원 안보

교육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10서울조정1212, 1213) 등이 있었다.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제목이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돼
언론사 책임 없어**

기사 제목에 ‘멜라민 분유’ 등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 내지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 내용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보도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에 합치돼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한다.

파이낸셜뉴스는 2009년 1월 29일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 제목으로 남양유업이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2차, 3차로 수입한 원료로 만든 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었으나, 베트남에 수출한 분유는 1차로 수입한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정정보도 및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남양유업의 분유는 멜라민으로 인한 위험성이 없

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소송에서 이례적으로 2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 1월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차로 수입한 원료로 만든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 40일 뒤 수입된 같은 물질에서 멜라민이 나왔고, 남양유업이 식약청 검사 하루 전에 1차 수입분을 모두 소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유가 멜라민 함유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기사 제목에 ‘멜라민 분유’ 등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 내지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 내용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보도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에 합치돼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11. 1. 19. 선고

사 건: 2009나98623 손해배상(기)

2009나98630(병합) 정정보도등

원고, 피항소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파이낸셜뉴스신문주식회사외 2인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가합2126, 2009가합2133(병합) 판결

변론종결 : 2010. 9. 1.

판결선고 : 2011. 1.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피고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패소부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들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각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파이낸셜뉴스 제1면의 위치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와 동시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신문에 게시하라.

나. 위 기간안에 위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뉴질랜드의 타투아(Tatua)사(社)로부터 분유의 원료인 아포락토펜린을 수입하였다.

나. 원고는 1차 수입분 90kg 중 38.4kg을 2008. 9.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분유 108,309캔(이하 이 사건 분유 라고 한다)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그 나머자인 51.6kg은 2008. 9. 5. 및 2008. 9. 29. 입자화 실험 등 실험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13. 이 사건 분유 중 52,920 캔을 베트남에 수출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2009. 1. 29. 피고 윤OO이 작성하고, 피고 노OO이 편집한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파문」 및 「남양유업 폐기제품 수출도덕성 도마에」 제목의 기사를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다음 날 파이낸셜뉴스 신문에 기사로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베트남에 수출한 분유는 멜라민 함유(또는 검출) 제품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수출한 분유가 ‘멜라민 분유’ 또는 ‘폐기제품 또는 멜라민 함유(또는 검출) 의심분유’ 처럼 보도를 한 것은 허위 보도이므로 피고회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또한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과 본문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의 요지는 원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어 국내에서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분유에 사용된 원료인 아포락토페린 1차 수입분 생산일로부터 약 40일 후 생산된 2차 수입분에서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된 사실, 관계 당국에서는 2008. 9. 17. 경 멜라민 관련 수입식품 전수 검사 조치를 시행하고, 같은 달 24. 경부터 분유 등 함유 중국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분유를 제조한 원고로서는 당시 남아 있던 원료인 아포락토페린 11.6kg 중 일부라도 보관하여 식약청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검사에 대비하거나 멜라민 함유 여부를 공인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기 하루 전(원고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대기업으로 이러한 검사가 행해지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이례적으로 고가의 아포락토페린을 11.6kg(1일 동안 실험용으로 전부 사용하기에는 과다한 분량으로 보인다) 전량을 하나도 남김없이 미생물 필터링 실험(10kg)과 용해도 실험(1.6kg)에 모두 사용하여 소진시켜 버린 사실, 1차 수입

분 아포락토페린 생산자인 타투아사에서 자사의 락토페린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1차 수입분 수입일로부터 불과 4개월 경과한 시점인 사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2차 수입분은 물론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3차 수입분에 대하여도 압류 조치 후 폐기를 명한 사실(이는 2차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이상 3차 수입분에도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사 중에는, ‘다행스럽게 완제품인 아이엠마터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거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와 같은 이 사건 분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이 자체 조사나 식약청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출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식약청이 수출을 승인했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1회, 외부기관에서 2회 검사를 거쳐 조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베트남 수입업체는 물론 베트남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수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원고측의 반론도 함께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이 사건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식약청이 2008. 10. 2. 이 사건 분유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멜라민 불검출로 나온 사실 및 원고가 2008. 12. 4.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분유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모두 멜라민 불검출로 나온 사실 등이 이 사건 분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원료인 아포락토페린 1차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분유는 멜라민 함유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목 가운데 ‘멜라민 분유’ 내지 ‘폐기 제품’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 내지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 내용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원고의 대표이사 박건호가 국정감사에서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건 분유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실제 이 사건 분유는 전량 베트남, 홍콩 등 외국에 수출되었고, 국내에서는 단 1캔도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멜라민 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내용으로, 이는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어 국내 유통이 중단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비도덕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완제품인 이 사건 분유에 관한 원고의 자체 검사나 식약청 등의 외부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유 원료인 아포락토페린 1차수입분에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 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거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기사는 멜라민 함유가의 의심되어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기업의 도덕성 내지 차별적인 이중기준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기사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2]

대법원, 명예훼손적 내용의 외부칼럼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상당성 인정되면 언론사의 위법성은 조각

외부칼럼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칼럼 기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칼럼 내용에 공적 기능이 있고, 일부 사실과 부합한 점, 칼럼 투고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비취볼 때 언론사로서는 칼럼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언론사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1월 13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칼럼 기고자 신모씨와 이를 게재한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전 공동대표 김모씨가 낸 손

해배상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조선일보사 패소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일보는 '경실련에서 연구 결과물을 출판하는데 이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김씨가 자기 이름으로 출간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일이 있었다'며 경실련이 오히려 개혁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리더들의 도덕적 타락 등에 있다는 내용의 신씨의 기고문을 조선일보 2006년 7월 10일자 '시민운동, 개혁대상으로 전락하는가'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출판에 상당한 기여를 해 공동 편자로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씨의 기고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신씨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은 모두 "신씨와 조선일보는 연대해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고문 내용이 경실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타개책을 제시하는 공적 기능이 있고, 책자 출간 과정에서 경실련 내부에서 조차 출간 명의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점, 신씨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기고문 투고 당시 대학교수였던 신씨의 지위 등의 사정을 비취보면 조선일보로서는 기고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심이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

2011. 1. 13. 선고

사 건 : 2008다60971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 김○○

피고, 상고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신○○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나66769 판결

판결 선고 : 2011. 1. 13.

주 문:

1. 원심판결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주식회사조선일보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신OO의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신OO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 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적시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6. 2. 2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조선일보는 자신이 발행하는 조선일보의 시론란에 피고 신OO가 투고한 이 사건 기고문을 실은 사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기고문 중 “연구조사의 결과물을 출판하려는데 그 작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내겠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된 일도 있다. 밖으로는 금융실명제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원고실명제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교수는 현재 모 대학 총장으로 경실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표현’ 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책자의 출간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원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책을 내겠다고 주장하여 결국 그대로 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그와 같은 원고의 태도를 ‘도덕적 타락’이라고 논평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기고문은 시민단체의 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로서 공익적 성격이 있고, 시민단체의 대표이자 대학의 총장인 원고가 이 사건 책자의 출간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 저자로 표기되었는지 여부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면서도 피고 조선일보가 이 사건 쟁점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

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기고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불 태 원고 및 피고 신OO가 속해 있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이라고 한다)가 오히려 개혁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리더들의 도덕적 타락, 정치적 시민운동화 등에 있다고 보고 그 타 개혁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리더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그 주된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경실련에서 이 사건 책자의 출간을 기획하고, 섭외하여 예산을 획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책자의 주요 부분의 원고(原稿)는 원고 등 3인의 공동 편자가 아니라 피고 신OO 등이 중국, 일본 등의 현지를 답사하여 집필한 것임에도 이 사건 책자에는 그들을 단지 '현지조사자'라고만 표기하고 원고 등 3인을 공동 편자로 하여 출간되었다. 그 때문에 당시 경실련 내부에서조차 이 사건 책자를 경실련 명의로 출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피고 신OO는 이 사건 책자의 출간에 시종 관여하고 일본 부분을 직접 조사하여 집필하였으며, 이 사건 기고문을 투고할 당시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책자는 1995년경 출간이 기획되어 1996. 5.경 발행되었는데, 원고는 1995. 4. 22. 민주당에 입당하여 전남지사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1995. 8. 18. 캐나다로 출국한 후 1996. 2. 9. 입국하였다가 1996. 3. 23. 다시 출국하였다.

이와같은 이 사건 책자의 출간과정에서 그 출간명의를 둘러싼 논란, 피고 신OO가 수행한 역할과 관련 정도, 이 사건 기고문 투고 당시 대학교수였던 위 피고의 지위, 이 사건 책자의 출간작업이 진행될 무렵 원고의 출입국 내역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조선일보로서는 이 사건 쟁점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조선일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조선일보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 조선일보의 나머지 상고와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 신OO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신OO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외국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일본판례]

일방적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싸움을 하다 사망했다는 수사기판의 잘못된 발표에 근거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뤄진 경우, 법원이 피해자 유족의 사자(死者)에 대한 경애(敬愛)와 추모(追慕)의 정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여 수사기판을 상대로 한 피해자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원 고: 고오노 나츠코(甲野夏子) 외 2명
- 피 고: 에히메 현(愛媛縣)
동대표자 지사가도모리유키(加戸守行)
- 대상사건: 마츠야마지법 2009(7)제656호
- 사건명: 사죄광고등 청구사건
- 연월일등: 2010. 4. 14 민사제1부 판결
- 재판내용: 일부 인용 · 확정
- 참조조문: 민법709조 · 710조 · 723조, 국가배상법 1조1항 · 4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1만엔 및 이에 대한 2007년 8월 25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원고들의 다른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1.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죄광고를, 에히메신문, 아사히신문(에히메판), 마이니치신문(에히메판), 요미우리신문(에히메판)의 각 조간사회면에 제목, 기명(記名) 및 수신인명은 각 14포인트 활자로, 다른 나머지 부분은 각 8포인트 활자로, 각 1회씩 게재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 위자료 200만엔 및 변호사비용 30만엔을 지급하라.

2. 사실의 개요

본건은, 사망한 오토야마 하루오(乙山春男)의 유족인 원고들이, 하루오가 소외 헤이가와타로(三川太郎)의 일방적인 폭행에 의해 부상당한 후 사망했음에도 에히메현 C경찰서(이하「C경찰서」로 한다)가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잘못된 발표를 했으며, 이러한 잘못된 경찰발표에 근거하여 신문 각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함으로써 하루오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원고들의 고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정이라는 인격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 피고를 상대로 국가

배상법 1조 1항에 근거하여 각자위자료 200만원 및 변호사비용 30만원의 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불과 함께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사안이다.

1. 전제사실 (특히 증거로 제시된 사실이와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1) 원고 고오노 나츠코(甲野夏子)는 하루오의 모친, 원고 오토야마 아키오(乙山秋男)와 오토야마 후유코(乙山冬子)는 하루오의 조부, 조모이다.

(2) 하루오(1988년생)는 2006년 8월 11일 마츠야마(松山) 시내의 가라오케에서 나와 점포 앞(이하 「제1현장」으로 한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마침 친구들과 함께 가라오케에서 나온 헤이가와타로부터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가 붙어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헤이가와타로가 하루오의 머리칼을 잡는가 하면 하루오는 헤이가와타로의 턱 근처를 구타했다.

헤이가와타로는 도망가려는 하루오를 붙잡아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라오케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하천부지의 제방둑(이하 「제2현장」으로 한다)으로 끌고 가, 오후 6시 50분경부터 앉은 상태의 하루오의 안면을 발로 차 콘크리트 위에 넘어뜨려 실신케 하고 이어 복부를 발뒤꿈치로 가격한 후 제방둑 위에서 약 1~2m 아래수로(水路)로 밀어 떨어뜨렸다.

하루오는 헤이가와타로에 의한 제2현장에서의 폭행으로 12지장천공(指腸穿孔) 등의 상해를 입고 8월 22일 오전 10시 19분 호흡부전(不遂)에 의해 사망했다(이하 「본건상해치사사건」으로 한다).

(3) C경찰서는 8월 11일 원고인 하루오의 조부 아키오의 통보에 따라 상해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했는데, 하루오가 동월 22일에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23일 보도기관(현경찰서 기자클럽 12개사)에 보도자료(이하 「본건 보도자료」로 한다)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2006년 8월 11일 피의자와 사자(死者)

는 각각 친구들과 함께 마츠야마 시내의 가라오케에서 놀던 중 눈이 마주치자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발전했으며, 그 결과 사자가 부상을 입고 입원 가료중 전기 일시 장소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의 사건 개요가 기재되어 있었다.

(4) 본건 보도자료 배포 후 C경찰서의 부서장은 보도 기자들의 개별적인 전화취재와 방문취재 과정에서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 다이만(たいまん·1대1의 싸움을 뜻하는 속어)과 같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이하 본건 보도자료의 배포 및 부서장에 의한 본건상해치사사건에 관한 취재대응을 합쳐 「본건홍보대응」으로 한다).

(5) 8월 24일자 에히메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및 요미우리신문에는 본건상해치사사건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게재되었다(이하 「본건보도」로 한다).

(가) 에히메신문

싸움으로 2 사망, 33을 상해치사 혐의 수사

11일 저녁 마츠야마시의 오노가와(小野川) 하천부지에서 고교생끼리 싸워 P군(郡) 현립고(縣立高) 2년 A소년(16)이 22일 복막염과 호흡부전(不遂)으로 사망했다. C경찰서는 23일 이미 상해 혐의로 체포된 마츠야마시의 사립고 3년 B소년(18)을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 수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두 소년은 11일 오후 6시 30분경 각각 3~4명의 친구들과 가라오케에서 유희중 눈이 마주치면서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가 붙어 근처의 오노가와에서 1대1의 싸움으로 발전, B소년은 A소년의 복부를 발로 차서 상해를 입힌 혐의(이하 생략).

(나) 아사히신문

남자고교생이 싸움으로 사망, 타교생에게 복부 견어치여

마츠야마시에 거주하는 사립고교 3년의 남자학생(18)과의 싸움에서 복부를 차여 치료를 받던 Q정(町) 거

주 현립고 2년의 남자학생(16)이 22일 마츠야마시내의 병원에서 사망했다. C경찰서는 상해치사사건으로 상해를 입힌 남자학생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할 방침.

조사결과 두 사람은 11일 오후 6시 30분경 각각 수명의 친구들과 시내의 가라오케에서 놀다가 점포앞에서 시비가 붙은 후 수백m 떨어진 가와하라(河原)에서 싸움을 했다고 한다.

(다) 마이니치신문

고교생끼리 싸움 1명 사망

에히메현경찰 C경찰서는 23일 마츠야마시내의 가라오케앞에서 다른 고교생과 시비 끝에 싸움까지 벌여 복부등을 구타당한 에히메현 Q정(町)의 현립고 2년생(16)이 22일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C경찰서는 마츠야마시내의 사립고 3년생인 소년(18)을 상해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한 후 석방했으나, 혐의를 상해치사혐의로 바꿔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사망한 2년생과 소년은 11일 오후 6시 30분경 각각 3~4명의 고교생 그룹으로 가라오케에 갔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두 학생은 수백m 떨어진 가와하라(河原)로 이동하여 치고받는 싸움을 했다. (이하 생략)

(라) 요미우리신문

가와하라에서 싸움 고2 사망, 상대방인 고3년생 임의 청구키로

마츠야마시내의 하천부지에서 11일 Q정(町)의 현립고 2년의 남자학생(16)과 마츠야마시의 사립고 3년의 남자학생(18)이 싸움을 벌여, 2학년 학생이 복부에 상해를 입고 시내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2일 복막염 등으로 사망. C경찰서는 상해치사사건으로 3학년 학생으로부터 임의로 사정을 청취할 방침.

조사결과 두 사람은 11일 오후 6시 30분경 시내의 가라오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언쟁이 붙어 근처의 하천부지에서 치고받는 싸움을 벌렸다. 3학년 학생

이 2학년 학생의 복부등을 걷어찼다고 한다. (이하 생략)

2 쟁점 및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본건 홍보대응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쟁점1)

1) 원고들의 주장

(가) 하루오는 제2현장에서 헤이가와타로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C경찰서는 보도기관에 대해 본건 상해치사사건 발표를 한 2006년 8월 23일 시점에서 이미 동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오가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본건 보도자료를 보도기관에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부서장은 보도기자들에게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 ‘다이만(たいまん)’ 이라고 설명, 사실과 다른 경찰발표를 했다.

(나) C경찰서의 잘못된 본건 홍보대응에 의해 신문가는 사실과 다르게 제2현장에서 치고받는 싸움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게 했으며, 그 결과 사자의 명예훼손과 함께 유족인 원고들의 고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정을 현저하게 침해했으므로 C경찰서는 과실에 의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C경찰서는 수사결과로서 제1, 제2현장에서의 사실관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사실관계를 일련의 사상(事象)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 일련의 과정속에서 쌍방이 유형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 본건 상해치사사건을 두 소년의 싸움에 기인한 상해치사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며, 싸움을 한 결과 부상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의 기재는 수사에 의해 얻어진 객관적 사실에 틀림이 없다.

(나) 부서장이 다이만(たいまん)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본건 상해치사사건이 집단폭행 또는 린치와 같은 구도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대1’ 상황이었다고 이해

를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 ‘치고받는 싸움’으로 보도되도록 할 의도는 없었으며 또한 그와 같은 표현으로 보도될 것이라는 예견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다) 따라서 본건 보도에 의해 하루오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본건 홍보대응에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

(2) 사죄광고의 필요성 (쟁점2)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현재까지도 본건 보도자료의 기재내용은 올바른 것이며, 하루오는 싸움 끝에 사망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므로 본건 보도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죄광고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법 외에는 하루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

(나) C경찰서에 의한 본건 홍보대응은 원고 하루오의 조부 아키오가 수사담당자에게 난폭한 항의를 한 데 대해 반감을 갖게 되어 유래된 것으로, 수사가 중립·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탈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높고,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싸움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하루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사죄문의 게재가 필요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본건 홍보대응의 과오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근거하여 에히메현 경찰본부의 홍보담당자들이 2007년 2월 7일 원고인 아키오와 대리인 변호사 외 1명에게, 부서장이 홍보대응의 일부에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도기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수사결과와 보도의 내용에 착오를 가져오게 한 데 대해 사죄했다.

또한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상기 조사에 근거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도관계자들에게 공표하는 동시에 부서장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죄하였음을 설명했는데 각 언론사들은 그 내용을 신문에 게재

했다.

이와 같은 경위를 감안할 때 하루오 및 유족에 대한 일정한 명예회복조치는 취해졌다고 생각되며, 새삼스럽게 사죄광고 게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

(나) 또한 C경찰서 담당자가 원고乙山秋男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실은 없다.

3. 당법원의 판단

1. 증거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경찰서는, 본건 홍보대응까지의 사이에 목격자인 소년 2명, 하루오, 헤이가와타로 등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수사를 진행,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가) 2006년 8월 11일 헤이가와타로는 제1현장에서, 친구와 함께 가라오케에서 나왔을 때 다른 그룹의 하루오에 대해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고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으나 갑자기 하루오의 주먹이 날아들어 턱을 구타당했다.

(나) 헤이가와타로는 턱을 구타당하자 이에 분격하여 하루오를 부근의 제2현장에 유인한 후 1대1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2) C경찰서에 의한 본건 보도자료의 배포 후, C경찰서 부서장이 기자들의 개별적인 전화취재와 방문취재에 대응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장과 기자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오고 갔다(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가) 기자가 제1현장을 포함한 사건의 전체에 관해, 본건이 일관되게 1대1의 싸움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부서장은 이를 긍정하면서 ‘이른바 다이만(たいまん)의 형태였다’는 등의 설명을 덧붙였다.

(나) 기자가 제2현장에서 싸움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한 데 대해 부서장은 피해소년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다) 기자가 제2현장 상황에 관해, 집단적인 린치였는지를 질문하자 부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1대1의 싸움이였다. 다시 말하면 다이만(たいまん)과 같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3)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에히메현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본건홍보 대응에서 과오가 있었는지의 유무에 대해 조사하여 2007년 2월 7일자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본건조사결과보고서」로 한다)를 작성했다.

본건조사결과보고서에는, C경찰서가 본건홍보 대응까지의 사이에 헤이가와타로가 제2현장에서 하루오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파악했고, 부서장이 기자들로부터의 개별적인 전화취재 및 방문취재 대응과정에서 집단폭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맨투맨’ 이었다는 것을 강조할 의도로, 다이만(たいまん)이라는 속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C경찰서가 파악한 사실관계의 내용과 일부의 보도내용이 어긋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인정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본건조사결과보고서는, C경찰서의 수사결과가 제1, 제2현장에서의 사실관계를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촉시켜 두개의 사실관계를 일련의 현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쌍방이 유형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체적으로 본건사건을 두 소년에 의한 싸움에 기인한 상해치사사건으로 판단, 두 소년에 의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일관하여 싸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경찰서의 홍보 대응에는 특별한 과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

또한 부서장이 ‘마주잡고 싸웠다’는 표현의 사용이나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되었다’는 등의 설명을 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총괄적으로 C경찰서는 객관적인 수사결과에 근거하여 홍보 대응을 실시했고,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는 피해소년 유족의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으나, 부서장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기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수사결과와 본건에 관련한 일부 보도의 내용간에 착오를 초래한 점

은 진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를 기재했다.

(4) 에히메현 경찰본부 홍보담당자들은 2007년 2월 7일 원고 아이키오와 대리인 변호사 외 1명에 대해, 부서장이 홍보 대응을 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수사결과와 보도내용 사이에 착오를 일으키게 된 데 대한 설명을 했다(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5)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본건조사결과보고서를 보도관계자들에게 공표하는 동시에 부서장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해 유족에게 사죄하였음을 설명했다(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 결과 동월 8일자 에히메신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및 동월 9일자 마이니치신문에 상기 조사결과보고서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각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재되어 있었다(일부 생략).

(가) 에히메신문

“보고서에 의하면 가해소년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고받는 싸움』이라고 보도된 것은 C경찰서의 홍보책임자가 『1대1의 싸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다이만(たいまん)이라는 속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냥 피해소년이 현장에 끌려가기 전에 가라오케에서 가해소년을 구타했다는 것 때문에 사건이 싸움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현 경찰서 홍보과장이 유족에게 불친절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대해 사죄했다.”

(나) 아사히신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C경찰서는 당시 수사결과 고교생이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파악했다. 한편 일부 보도기관에서는 고교생이 마츠야마시내의 현장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 장소에 두 사람만 있었다는 의미로 다이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다이만이라는 부적절한 용어

의 사용으로 수사내용과 일부보도에 착오가 생기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다) 마이니치신문

“동위원회는 7일 조사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했다. 싸움이라는 발표에는 과오가 없었으나 일부 부적절한 설명내용이 있었고,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은 경찰서에 대한 에히메현 경찰본부의 지도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고 현경찰은 유족에게 사죄했다.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교생은 마츠야마 시내의 현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그 전에 근처의 가라오케 앞에서 소년그룹의 한사람으로부터 머리를 쥐어 박혔을 때 턱을 때렸기 때문에 일련의 행위를 『싸움』이라고 설명한 것은 과오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대의 싸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다이만이라는 용어로 설명했기 때문에 보도에 사실과 엇갈리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고 한다.”

(라) 요미우리신문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7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유족에게 전했다. 발표에 의하면 하천부지에서의 폭행에 대해 기자들에 대한 C경찰서의 설명은 1대의 싸움을 의미하며, 다이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되어 있다. 현경찰은 같은날 유족에게 지도가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마) 산케이신문

“에히메현 경찰은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이 있었으며, 부서장에 대한 지도와 교양이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현경찰에 의하면, 사건 당시 보도대응을 한 경찰서 부서장은 집단폭행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도기자들에게 1대의 싸움이라는 의미의 다이만이라는 속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동 경찰서가 파악한 사건의 내용과 보도의 내용이 달랐다고 했다.”

여부에 대하여

(1) (가) 원고들은, C경찰서에 의한 본건홍보대응을 받고 본건보도가 이루어진 결과, 하루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본건보도가 하루오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민법723조에 규정된 ‘명예란 사람이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이며, 명예훼손이란 상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특정신문의 기사 게재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기사에 대한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석한 의미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만 할 것이다 (최고재판소 1954년(가) 제634호, 동1956년 7월 20일 제2소법정 판결).

(나) 이를 본건보도에 비추어 보면, 본건보도는 모두가 제목에서 ‘싸움으로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도 고교생끼리 싸움을 하여 고교2년생이 사망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바 (전기전제사실(5)), ‘싸움’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서로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하루오가 사망한 이상 유형의 힘이 행사되었음은 명백하며, 일반 독자가 고교생끼리 싸움을 하여 한쪽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경우, 실제적으로는 하루오가 제2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그 결과 부상을 입고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오와 헤이가와타로 쌍방이 서로 폭행하는 상황에서 하루오가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며, 하루오 자신에게도 그 사망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본건보도의 일부는, 고교생끼리 ‘치고 받는 싸움’ 또는 ‘1대의 싸움’을 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제사실(5)(가), (다) 및 (라)), 이러한 표현은 일반 독자가 상기와 같은 해석을 하게끔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일반 독자가 고교생끼리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것 등을 이유로 오후 6시 30분경 제2현장에서 ‘싸움’ ‘치고 받는 싸움’ 또는 ‘1대의 싸움’을 했

2 쟁점 1 (본건홍보대응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다는 기사를 읽었을 경우(전기전제사실(5)), '싸움' '치고받는싸움' 또는 '1대1의 싸움'이라는 행위자체의 의미까지 더해져, 두소년이 고교생이라는 점, 싸움이 있었던 시간, 장소 및 싸움의 단서가 '눈이 마주쳤다'는 사소한 것이었다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일반독자는 하루오가 싸움질을 하는 인물이며 불량소년이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본건보도는, 하루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더욱이 본건보도는 한결같이 하루오의 이름을 익명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나, 모든 기사들이 P군(郡) 또는 Q정(町)의 현립고교 2년생(16세)이라는 점까지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오가 사망했다는 사실 때문에 인근주민들이나 하루오가 재적하고 있던 학교의 관계자 등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소년이 하루오라는 것이 용이하게 특정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익명보도는 본건보도가 하루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상기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2) 이와 같이 본건보도에 의해 하루오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의 사자(死畜)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정이 침해되었음이 인정된다.

(3)(가) 다음에는 본건보도와 관련하여 본건홍보대응을 한 C경찰서의 홍보담당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나) 본건보도자료에 대하여

본건보도자료에는 "피의자와 사자는, (중략) 싸움을 한 결과 사자가 부상하여"라는 기재가 있는데(전기전제사실(3)), 전기와 같이 '싸움'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유형의 힘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의 보도기자가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으로 상기 기재를 읽는다면 사실과 다를 것이며, 하루오와 헤이가와타로 쌍방이 유형의 힘을 행사한 싸움이 되어 그 과정에서 하루오가 부상을 당해 사망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싸움'의 일반적 의미 및 본건보도자료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본건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C경찰서의 홍보담당자로서도 본건보도자료를 보도기관에 배포하면, 보도기관이 '싸움으로 사망'이라는 식으로 하루오와 헤이가와타로 쌍방이 서로 폭행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하루오가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는 오해를 일반독자들에게 주어 하루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도하게 된다는 데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본건보도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C경찰서 부서장의 취재대응에 대하여

전기인정사실(2)(가), (다) 기재와 같이, 부서장은 본건이 일관되게 1대1 싸움의 구도였는지를 묻는 보도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를 긍정하고는 '말하자면 다이만(たいまん)과 같은 형태'라고 설명했으며,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 집단적인 런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1대1의 싸움이며 다이만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제1현장과 제2현장을 구별하지 않고 일관되게 '1대1의 싸움'이며 다이만이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바, '싸움'이라는 용어는 전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쌍방의 유형의 힘이 행사되는 싸움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이만이란 불량소년들 간에 통용되어 온 1대1의 싸움이나 결투를 의미하는 속어로 1대1로 치고 받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의 보도기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용어의 이해력을 가지고 부서장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의자와 사자는, (중략) 싸움을 하여 그 결과 사자가 부상하였다"는 본건보도자료의 내용을 읽으면, 제2현장에서 상해에 대해, 하루오와 헤이가와타로가 1대1의 싸움을 하여 그 과정에서 하루오가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다이만의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부서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보도기관이 제2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해 "치고받는 싸움" 및 "1대1의 싸움"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할 것이라는 데 대해 충분히 예견

할수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은 제2현장에서 치고받는 싸움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보도기자들에 대해서만, 피해소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회답을 하는데 그쳤으며, 다이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보도기자들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보도가 나가게 된 데 대해서는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가) 이상과 같이 부서장을 포함한 C경찰서의 홍보 담당자는, 보도기관에 대해 본건 보도자료의 배포 및 다이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기인정사실(2) 기재의 설명을 할 경우, 보도기관이 전체에 대해 '싸움(으로) 사망'이라는 표현으로, 또한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 '싸움', '치고받는 싸움' 등의 표현으로 보도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보도자료의 배포 및 상기와 같은 설명을 하여, 그로 인해 하루오의 명예를 훼손하는 본건 보도가 나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들의 사자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정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홍보대응은 전체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건 보도자료의 보도기관에의 배포 및 부서장의 취재대응은, 에히메현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인 경찰담당자가 홍보대응이라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실에 의해 위법하게 원고들에게 손해를 주었으므로, 피고는 본건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1조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손해액

(A) 위자료 각 10만엔

본건 홍보대응에 의해 경애와 추모의 정이 침해되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본건 조사결과보고서의 공표 및 그에 관한 일련의 보도와 본건 상해치사사건의 형사판결에 의해 하루오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상당한 정도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본건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자 10만엔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B) 변호사비용 각 1만엔

변호사비용은, 각 원고에게 위자료 액수의 10% 상당액인 1만엔으로 하는 것이 본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

(C) 계(計) 각 11만엔

3. 쟁점 2 (사죄광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1) 에히메현 경찰본부는, 제2현장에서 하루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보도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이만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보도기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제2현장의 상황에 대해 쌍방이 유형의 힘을 행사한 싸움이라고 한 일부 보도에 유감을 표하는 본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하루오의 조부인 원고 아키오 등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4개 신문사 중 3개의 신문(에히메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에서는, 에히메현 경찰이 하루오가 제2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C경찰서가 다이만이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인정, 사죄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고, 다른 1개의 신문(요미우리신문)에서도 에히메현 경찰이 제2현장에서의 폭행과 관련하여 다이만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유족에게 사죄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본건 상해치사사건의 형사소송(마츠야마지법 2007년(㉔) 제146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제2현장에서의 하루오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싸움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공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건 홍보대응에 의해 훼손된 하루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죄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이 점에서 원고들은, 피고가현재도 본건보도자료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며, 하루오는 싸움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므로 본건보도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죄광고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는 하루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현장에서는 하루오도 헤이가와타로의 턱을 구타했으며, 그 후 헤이가와타로와 마주잡고 엉키는 등 쌍방이 유형의 힘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하루오의 행위는 헤이가와타로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제1현장의 상황에 대해 싸움이라고 평가하여 본건상해치사사건이 싸움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을 반드시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2현장의 상황에서 하루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치고 받는 싸움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하루오의 명예회복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원고들은, 본건보도대응이 C경찰서 수사담당자의 원고 아키오에 대한 반감에서 유래되었음을 근거로 사죄광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중상을 입은 피해소년의 유족이 수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러 올 틈이 있으면 하루 빨리 범인이나 잡으라”는 식의 난폭한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으며, C경찰서의 홍보담당자까지도 구태여 파악하고 있던 사실관계와 다른 기자회견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기 주장은 결국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도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11만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8월 25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의 지불을 청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다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더욱이 가 집행선언의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 이를 기각한다.

■ 출처: 『판례타임즈』 No.1334호, 83~90.

■ 번역: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영국 사례]

언론사가 미성년자의 발언을 인용할 때는 충분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신청인: Mr. Ravin Soobadoo

인용된조항: 1, 6조

언론사: Wanstead and Woodford Guardian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0년 7월 13일자 Wanstead and Woodford Guardian이 “포르노 배우 출신 교사, 사퇴” 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뷰를 실으면서 신청인 딸의 발언이라고 잘못 인용하였고, 게다가 딸이 12학년(16세 이상)이라고 틀린 정보를 기재하는 등 PCC의 윤리강령제1조(정확성)와 제6조(미성년)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보도는 전직 포르노 배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교사가 교직을 물러나게 되었다는 취지였으며, 실제 14살인 신청인의 딸을 12학년이라고 표기하면서 “선생님이 성(性)에 대해 적나라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곤 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신청인은 딸이 언론사에 그런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으며, 또한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12학년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언론사는 신청인의 항의 이후 온라인 기사에서 해당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신청인의 딸이 언론사에 보낸 보도에 언급된 인터뷰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딸이 그러한 메일을 언론사에 보낸 바 없고 딸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언론사가 보도 이전에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신청인의 딸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언론사 주장

기자는 문제의 교사가 12학년만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인의 딸이 12학년(16세 이상) 학생일 것이라 생각하고, 신청인의 딸이 보낸 메일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또한 언론사는 신청인의 항의 이후 즉시 기사를 수정했고, 학교와 관련하여 취재할 때 인터뷰 방식에 대한 정책을 바꾸기까지 했다. 그러나 언론사는 해당 메일을 보낸 것이 신청인의 딸이 아니라는 증거 또한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언론사가 신청인의 딸을 직접 인터뷰한 것이 아니므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정

불만제기내용을 인용한다.

결정이유

신청인의 딸이 실제 메일을 보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언론사는 취재당시 딸이 보낸 것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CC는 기사의 전체 취지를 감안할 때 언론사가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우려를 감출수 없다. 보도 이전에 학생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CC의 윤리강령제6조는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미성년자를 인터뷰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PCC는 이 건의 경우 언론사가 해당 학생을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교사에 대한 매우 민감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결국은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코멘트는 결국 신청인 딸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며, PCC는 언론사가 보도 이전에 학생의 나이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랬더라면 메일을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기가 더 용이했을 것이며, 부모의 동의 없이 보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위원회는 언론사가 학생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 게재하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언론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학교에 대한 기사에서) 코멘트를 인용할 때의 취재방침을 새로 정했다는 점은 높이 산다.

[호주 사례]

범죄 의혹 보도 후 무죄로 밝혀져 후속보도가 이뤄진 경우라도, 최초 기사에 무죄로 드러났다고 주석을 달고, 후속 기사를 링크시켜야 한다

평결번호: No.1486

신청인: Michael Corkill

언론사: The Courier-Mail

AFC(Australian Press Council)는 퀸즈랜드의 범죄부정 척결 위원회(CMC)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한 The Courier-Mail의 보도에 대한 신청사건을 처리했다.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0년 3월 26일자 CMC, 시장의 고문에 대한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언론사는 신청인이 「채널 7」의 Michael McKinnon을 만나 신청인의 이메일 일부에 대해 정보통제권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한 McKinnon이 브리스번 의회의 감사실에 '이런 일은 시의 RTI 담당자가 해야 하는 일 이었다며 제보했고 해당 건은 CMC로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공인이 아닌 이상 CMC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도해야 한다면, 고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만이 제기되면 규정상 원래 CMC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는 조항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과 McKinnon이 The Courier-Mail의 직원으로 함께 일했었다는 점을 보도했어야 하며, McKinnon이 The Courier-Mail에 글을 쓰고 있고 편집국장인 David Fagan 부부와 친분이 있으므로 언론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항의했다.

신청인은 또한 2010년 8월 '시장의 고문, 혐의 벗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혐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CMC의 결정을 인용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RTI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주려 한 것 뿐이었다"는 더명백한 취지의 문장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는 또한 신청인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견책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단순히 업무를 잘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일 뿐인데 시의회가 부당한 비난을 받게 하는 상황까지 갔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시장의 발언을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주장

언론사는 CMC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신청인

이 공인이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신청인과 McKinnon이 어떤 사이인지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으며 McKinnon이 편집국장과 친한 사이도 아닐뿐더러 설사국장의 부인과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이 제기한 '시장의 고문, 혐의 벗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의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첫 번째 기사와 달리 두 번째 기사는 신청인의 항의 이후에야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언론사는 온라인 기사 게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 때문이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결정내용

APC는 신청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CMC가 조사하게 되었다는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고문인 신청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규정에 따라 CMC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보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청인과 Michael McKinnon의 개인적 관계는 명백한 사실도 아니며 위원회 윤리강령 중 공정성이나 이해관계 조항의 위반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APC는 두 번째 기사('시장의 고문 혐의 벗다')가 공정성과 균형에 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언론사는 신청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CMC 결정내용을 더 상세히 언급했어야 하며 또한 견책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장의 발언도 함께 적시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되었다. 언론사는 첫 번째 기사에 신청인이 무죄로 드러났다는 점을 주석으로 달고, 두 번째 기사를 링크시켜야 한다.

추가사항

신청인은 첫 번째 기사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이 실제보다 늙어 보이고, 자신의 성앞에 "Mr"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 등 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는 어떤 차별도 없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부정했다. APC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질랜드 사례]

부정확한 단어로 인용했으나, 실제 맥락을 볼 때 유사한 의미라면 언론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No.2160

신청인: Robin Grieve

언론사: New Zealand Herald

개요

신청인은 2010년 10월 9일 토요일자 New Zealand Herald에 실린 칼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Weekend Herald지의 논설위원 Paul Thomas는 Paul Henry가 자신이 진행하는 TV쇼에서 했던 우스갯소리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Paul Henry가 이전에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는 발언을 여러 개인용하고, TVNZ가 Henry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고, 불공정하며 현저히 균형을 잃은 기사라고 주장했다.

결정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다.

신청내용

신청인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Paul Henry의 이미지가 매우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청인은 "Paul Henry가 한 스코틀랜드 여성(Susan Boyle)에 대해 저능아(retard)라고 표현했다"는 기사 내용을 문제삼았다.

신청인에 따르면 Henry는 '저능아(retard)'가 아니라 '지능이 떨어진다(retarded)'고 표현했으며, 지능이 약간 뒤쳐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정확한 용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누군가를 저능아(retard)라고 일컫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며 상대방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표현이라고덧붙였다.

신청인은 언론사에 정정보도할 것을 요구했으나 언론사가 ‘retard’ 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없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정정보도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언론인이라면누구나 두단어의차이를 알아야 한다. retard는부적절한표현이고, 반면retarded는 지적인장애가 있는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가아니다.” 라고주장했다.

언론사주장

언론사는 “신청인은 두단어 중retard는 모욕적인 어감을 갖고 있고, retarded는 그렇지 않다면서 두 단어의 차이점을 주장한다” 면서 해당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둘다 비판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라고 주장했다. 두 단어간 식별 가능한 차이점이 없으므로, ‘retarded’ 가 더 모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Henry가그 단어를 사용한것은 그가수를 비웃기 위함이었다” 고 지적했다.

또한뉴질랜드 인권위원회(HRC)와방송윤리위원회(BSA)에서Henry의 발언이 강령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방송윤리위원회에서는 시청자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조롱하는게 별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결론

신청인은 언론사가 부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여 Mr. Henry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는 해당 보도는 “retarded”보다는 “retard”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두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살펴보면, 해당기사가의견 기사로서는설위원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은 기사를 접하는 독자 누구나 쉽게알 수 있다. 또한Mr. Henry는 실제 “retard”

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해당기사는 “retard”라고 인용했지만 두개 단어 모두Mr. Henry가 실제 단어를 사용했던 맥락을 살펴볼 때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뉘앙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이건 신청은 기각되었다.

[아일랜드 사례]

슬픔에 잠긴시간에 대해 보도할 때는 신중함과 연민이 필요하다, 보도의 시의성도 간과할 수 없다

사건번호: Nb.2160

신청인: A Woman (한 여성)

언론사: Irish Daily Star

개요

한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한 보도에 대해 유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으며 윤리강령 5조(프라이버시)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가족을 대표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옴부즈맨(Press Ombudsman)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공인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며,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중에 결국 자살했다. 신청인은 언론사가 유족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건과 관련하여 취재 요청을 한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주장

언론사는 기사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정정과 함께 유족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였고, 이 사건이 한 인간의 극도로 어려운 상황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여실히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도 이전에 신청인을 취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언론사는 신청인이 몇 년 전에 아버지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였던 사실을 들었다.

결정내용

언론사가 이러한 비극적 사고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으나 윤리강령 5조의 3항은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유족의 감정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정신적인 문제나 자살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는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유족을 충분히 배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과 직장명을 공개한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신청인의 직장 웹사이트를 토대로 얻은 정보이므로 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기사 중 부정확한 부분을 즉시 정정, 수정함으로써 언론사가 충분히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는 옴부즈맨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은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에 상정되었다.

아일랜드 신문평의회 결정

신문평의회는 해당 보도가 강령 5·3조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언론사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신문평의회는 강령의 해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언론사의 보도가 주요 부분에 있어 진실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무성의하게 다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망 이후 게재된 보도의 시점 때문에 괴로웠을 수 있으나 언론 보도의 시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의회는 위원회 결정에 대한 언론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기로 결정했다.

언론법제관련문헌

- 강승묵(2010).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7집 4호, 187~213.
- 강학주(2011. 2. 25). 소셜미디어와 비즈니스모델 서울디지털대학교, 한국언론학회주최 ‘소셜미디어와 광고PR커뮤니케이션’ 세미나발제문.
- 권상로(2010).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7집 3호, 81~101.
- 김경환(2011. 1. 18). 정부주도의 일본-융합정책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 ‘방통융합과 세계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 심포지엄발제문.
- 김민하·신윤경(2011). 전문기자화 시민기자블로그 콘텐츠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53호, 73~99.
- 김상훈(2011. 1. 24). 미디어랩 법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 한국언론학회주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랩 도입정책 방향’ 세미나발제문.
- 김서중(2011. 1. 13). 미디어법 통과이후 언론현실의 변화와 전망. 미디어 공공성포럼 주최 ‘미디어공공성포럼2011년도워크숍’ 발제문.
- 김성해·심영섭·유용민(2011. 3. 26). 글로벌 공론장, 이상과 현실: 그리스 위기를 통해서 본 집단지성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학회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 공론장: 신화와 현실’ 세미나발제문.
- 김성환(2011. 1. 26).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시장의 확장. 한국방송학회, 여의도클럽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와 한국 방송통신정책의 발전방향’ 세미나발제문.
- 김수정·정연구(2011). 무(無)보도 현상과 언론윤리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53호, 5~28.
- 김영식·유제설(2011). 4P모델 분석을 통한 경찰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권 1호, 340~349.
- 김정현(2011).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수단. 『경원법학』, 3권 3호, 87~112.
- 김지영(2011. 2. 25). 소셜미디어와 UCC. 서울디지털대학교, 한국언론학회주최 ‘소셜미디어와 광고PR커뮤니케이션’ 세미나발제문.
- 문철수·서범석(2011. 1. 24). 미디어랩 도입과 방송광고시장의 미래. 한국언론학회주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랩 도입정책 방향’ 세미나발제문.
- 박종민·최서경(2011). 합법적 고객이익추구 VS. 공중에게 진실한 정보제공.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304~336.
- 박진우(2010).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비닉권. 『경원법학』, 3권 3호, 51~86.
- 설원태(2011. 3. 26). 정상회담과 언론: 한미 언론에

대한비교연구를 통해서 본 언론의 국적, 한국 언론학회 소속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 공론장: 신화와 현실' 세미나발제문.

- 심영섭 (2011. 1. 18). 분권화된 거버넌스하의 독일 융합정책.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주최 '방통융합 과세계 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 심포지엄 발제문.
- 양승목 (2011. 1. 28). 스마트미디어환경도래와 뉴스 미디어의 미래.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출범1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문.
- 양윤직 (2011. 2. 25). 소셜미디어와 광고. 서울디지털 대학교, 한국언론학회주최 '소셜미디어와 광고PR커뮤니케이션' 세미나발제문.
- 양재규 (2010. 12). 법을 알고 기사쓰기 57 - 기소 전 보도와 단정적 표현은 자제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480호, 100~103.
- 양재규 (2011. 1). 법을 알고 기사쓰기 58 -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허위로 보아야. 『신문과 방송』, 통권481호, 76~80.
- 양재규 (2011. 2). 법을 알고 기사쓰기 59 - 공인가족의 사생활공개, 공적 영역과 직접 관련 되는 것에 한정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482호, 78~81.
- 양재규 (2011. 3). 법을 알고 기사쓰기 60 - 사소한 왜곡이라도 의도개입되면 문제될 수 있어. 『신문과 방송』, 통권483호, 76~79.
- 오대영 (2011). 한국과 일본신문의 한일강제병합100주년 뉴스프레임 차이 비교. 『한국언론학보』, 55권1호, 140~168.
- 원용진 (2011. 3. 4). 다른 시각에서 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공적 가치. 한국방송학회주최 '공영방송과 공공성 이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발제문.
- 유승훈 (2011. 1. 26). 민영 미디어랩 도입 및 방송광고 규제완화. 한국방송학회, 여의도클럽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와 한국 방송통신정책의 발전방향' 세미나발제문.
- 윤석민 (2011. 3. 4). 다채널 디지털 시대 새로운 방송 공공성 이념의 모색. 한국방송학회주최 '공영방송과 공공성 이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발제문.
- 이규완 (2011. 1. 20). 미디어 빅뱅시대 공영미디어랩의 역할과 발전 방안. 한국방송광고공사주최 '공사창사 30주년기념 특별세미나 - 스마트시대의 광고산업 발전전략' 발제문.
- 이상훈 (2011. 1. 18). 프랑스 미디어 산업정책과 공공정책의 균형잡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최 '방통융합과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 심포지엄발제문.
- 이진로 (2011. 2. 11). 지상파, 종편시대의 미디어랩 해법. 한국광고홍보학회, 광고정책포럼주최 '2011 미디어랩 해법에 대한 특별세미나' 발제문.
- 이현주 (2011. 3. 26). 뉴미디어 혁명과 뉴스이용양상의 변화: 국가간 뉴스소비행태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회 소속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 공론장: 신화와 현실' 세미나발제문.
- 임봉수 · 이완수 (2011). 뉴스를 통합이 저널리즘수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53호, 29~52.
- 장경찬 (2011. 1. 15). 조정인의 역할. 한국조정학회주최 '제6회 학술대회 - 조정인의 역할과 성공적 조정기법' 발제문.
- 정덕현 (2010). 연예인의 프라이버시, 공적인가 사적

인가. 『서울法學』, 18권2호, 1~23.

- 정상조 (2010).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 대법원 2009.4.16. 선고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1권 2호, 229~272.
- 정용준 (2011. 3. 4). 방송 공익성 이념의 역사적 비교 분석. 한국방송학회주최 '공영방송과 공공성 이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 발제문.
- 정준희 (2011. 1. 18). 디지털 영국 구현을 위한 공공-시장의 정책적 조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최 '방통융합과 세계주요국의 미디어 지형 변화' 심포지엄 발제문.
- 조영신 (2011. 1. 18). 미국 방송 통신규제체계 및 산업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최 '방통융합과 세계주요국의 미디어 지형 변화' 심포지엄 발제문.
- 조흥준 (2011. 1. 15). 조정사례와 성공적 조정기법. 한국조정학회주최 '제6회 학술대회- 조정인의 역할과 성공적 조정기법' 발제문.
- 주정민 (2011. 1. 26). 스마트미디어 시대 미래지향적 방송통신정책의 재편방향. 한국방송학회, 여의도클럽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와 한국 방송통신정책의 발전방향' 세미나 발제문.
- 지성우 (2011. 2. 11). 헌법재판소 판결로 보는 미디어 랩 해법. 한국광고홍보학회, 광고정책포럼주최 '2011 미디어랩 해법에 대한 특별세미나' 발제문.
- 한선 · 이오현 (2010. 11). 지역신문 기자의 작업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8권4호, 2~36.
- 허만섭 (2010) 언론중재제도의 '국가기관반론권' 과 보호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권6호, 315~343.
- 황주성 (2011. 1. 18). 세계 주요국의 컨버전스 동향과 한국의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최 '방통융합과 세계주요국의 미디어 지형 변화' 심포지엄 발제문.